

연구보고서 2000-07

스위스의 경찰제도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 研 究 陣 》

연구자 : 서정범 (한세대 교수)

비

의

목 차

제1장 개 설	7
제1절 研究의 目的	7
제2절 研究의 範圍	8
제2장 스위스概觀	9
제1절 位置 및 面積	9
제2절 人口 및 言語	9
제3절 宗 教	9
제4절 歷 史	10
제5절 政治構造	11
1. 개 관	11
2. 聯邦內閣(Bundesrat)	12
3. 聯邦議會(Bundesversammlung)	13
4. 聯邦法院(Bundesgericht)	14
제6절 經 濟	14
제7절 우리나라와의 관계	14
제3장 스위스의 警察制度	16
제1절 스위스 警察制度概觀	16
1. 概 說	16
2. 스위스 警察制度의 特徵	17
3. 스위스 警察制度概觀	18
4. 칸톤警察 相互間의 協力	26
제2절 칸톤警察	29
1. 概 說	29

2. 獨逸語圈 칸톤 - 「베른」 칸톤을 중심으로	30
3. 佛語圈 칸톤 - 「제네바」 칸톤을 중심으로	34
4. 이태리語圈 칸톤 - 테신(Tessin) 칸톤	37
제3절 都市警察/게마인데警察	38
1. 概 說	38
2. 게마인데警察간의 協力 등	38
3. 「취리히」 都市警察	39
제4절 聯邦의 警察	39
1. 概 說	39
2. 1999년 9월 1일의 警察關聯組織改編	40
3. 聯邦檢察廳(Bundesanwaltschaft, BA)	42
4. 聯邦警察廳(Bundesamt für Polizeiwesen, BAP)	43
5. 聯邦警察總局(Hauptabteilung Bundespolizei, BUPO)	48
6. 聯邦外事廳(Bundesamt für Ausländerfragen, BFA)	55
7. 國境守備隊(Grenzwachtkorps, GWK)	56
8. 軍事警察(Militärische Polizei)	57
제4장 스위스의 搜查構造	59
제1절 概說 - 스위스의 刑事節次概觀	59
제2절 搜查節次(Ermittlungsverfahren)	59
1. 概念과 本質	59
2. 搜查機關	61
3. 搜查의 開始	62
제3절 強制處分과 強制搜查	67
1. 序	67
2. 人身拘束制度	70
3. 그 밖의 強制處分	80
제4절 豫審(Untersuchung)	86

1. 意 義	86
2. 豫審機關(Untersuchungsbehörde)	86
3. 搜查節次와 豫審간의 關係	88
4. 豫審의 職務	90
5. 豫審의 開始	90
6. 節次關與人(Verfahrensbeteiligten)의 權利	91
제5절 中間節次(Zwischenverfahren)	94
1. 概 說	94
2. 不起訴處分(Die Einstellungsverfügung)	95
3. 公訴의 提起(Klageerhebung)	99
4. 科刑命令(Strafbefehl, ordonnance de condamnation)	108
제5장 結 論	112
부 록	114
1. 스위스의 聯邦刑事訴訟法(보고서 관련조문 발췌)	114
2. 칸톤 베른의 경찰법(Polizeigesetz, PolG)	120
참 고 문 헌	123

표 차례

<표 1> 세계각국의 경찰밀도	17
<표 2> 스위스의 警察階級	21
<표 3> 「베른」칸톤의 警察組織	31
<표 4> 聯邦警察總局의 組織	49
<표 5> 1996년에서 1998년까지의 업무수행현황	57

제1장 개 설

제1절 研究의 目的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혹은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바, 이 같은 경찰의 위협방지의 기능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의 '必要的 根本機能'이라고 할 수 있다.¹⁾ 따라서 "경찰을 어떻게 조직하며, 경찰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국가의 근본기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자치경찰제의 도입, 경찰수사권의 독립 등이 핫이슈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찰조직의 새로운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외국의 예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간의 우리나라의 외국에 대한 연구는 대륙법계국가중 독일과 프랑스, 영미법계국가중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이웃나라인 일본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독일·프랑스·영국·미국 등과 다른 고유의 경찰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도 존재하므로, 그들 국가들의 경찰제도에 대한 연구 또한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스위스²⁾의 경찰제도를 개관하고,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역할 내지 검찰과의 관계를 탐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많은 나라들 중에 스위스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1) 정부형태면에서 議會政府制³⁾라는 독특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고, 2) 같은 연방국가라고 하더라도

1) Hans J. Wolff, Die Gestaltung des Polizei- und Ordnungsrechts in der britischen Besatzungszone, VVDStRL 9, 134 ff.(156). 한편 엘리네크(W. Jellinek)는 이같은 사정을 「그것 없이는 국가를 생각할 수조차 없는 권한이 존재하는 바, 경찰이 이에 속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Jellinek, Verwaltungsrecht, 3. Aufl., 1931; Neudruck, 1966, S.427).

2) 스위스의 정식명칭은 스위스聯邦(Swiss Confederation)이며, 라틴어로는 'Confoederatio Helvetica'로 표기한다(약칭 CH).

3) 議會政府制(Conventional Government: 會議制라고도 함)란 일반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절대적 우위로 특징지어지는 정부형태, 즉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은 전적으로 의회에 의존하지만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으므로 행정부가 전적으로 의회에 종속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프랑스혁명 당시의 國民公會政府制가 그 대표적 예로 들어지고 있으며, 스위스의 정부형태도 넓은 의미에서 의회정부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의회정부제에 관하여 보다 자

각 支邦(스위스에서는 Kanton이라고 함)의 독립성이 다른 연방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에서 스위스가 다른 국가들과 대비되는 특색을 지니고 있으므로, 경찰조직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벤치마킹의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2절 研究의 範圍

전술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 (1) 먼저 제2장에서는 스위스의 인구, 언어, 정부형태 등 스위스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개관해 보기로 하겠다.
- (2) 이어서 제3장에서는 스위스의 경찰제도를 다루는 바, 크게 ① 스위스 경찰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와 특색, ② 연방의 경찰제도, ③ 칸톤(Kanton)의 경찰제도, ④ 게마인데(Gemeinde)의 경찰제도의 4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 (3)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스위스의 搜查構造를 전체 刑事節次의 틀 안에서 조명해 보기로 한다. 다만 형사절차 중 공소제기 후의 公判節次는 법원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搜查와는 관련성이 약하다고 생각되어 논의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결국 제4장에서는 事前節次(搜查節次와 豫審을 포함)와 中間節次(Zwischenverfahren)를 주로 다루게 된다. 특히 豫審(Untersuchung)과 中間節次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므로 比較法的 관점에서 고찰하도록 하겠으며, 人身拘束制度로서의 拘束에 대해서도 詳論하기로 하겠다.
- (5) 끝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활용방안 등을 결론적 입장에서 약술하기로 한다.

제2장 스위스 概觀⁴⁾

제1절 位置 및 面積

스위스는 유럽중앙에 위치하여 알프스산지의 한가운데에 있는 내륙국으로,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이태리 및 리히텐슈타인공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국토의 면적은 41284.6평방km로서 우리나라(남한)의 5분의 2에 불과하며, 남북의 길이는 220km, 동서의 길이는 348km, 국경의 전장은 1882km이다.

연방의 수도는 베른(Bern, 인구: 134,400명)이고, 큰 도시로는 취리히(Zürich, 인구: 343,100명), 바젤(Basel, 인구: 172,800명), 제네바(Geneva, 인구: 167,700명), 로잔느(Lausanne, 인구: 123,100명) 등을 들 수 있다.

제2절 人口 및 言語

스위스는 1997년 현재 약 708만명(인구밀도는 171.5명/km²)의 인구를 갖고 있다.⁵⁾ 이처럼 스위스는 작은 나라이지만 4개의 공식언어⁶⁾를 사용하는 복합문화를 지니고 있는 바,⁷⁾ 그 중에서 독일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63.6%), 불어(19.2%), 이태리어(7.6%), 레토로만쉬어(0.6%), 기타(8.9%) 등이 사용되고 있다.

제3절 宗 教

연방헌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바, 1990년 현재 프로테스탄트(40.0%)

4) 이하의 내용은 Switzerland(1998/99), Kümmerly+Frey, Geographical Publishers, 1998; 이원복/하호트켄퍼, 이원복교수의 진짜유럽이야기, 두산동아, 1999, 166면 이하 및 스위스대사관에서 스위스를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배포하는 유인물의 내용을 주로 참고한 것이다.

한편 스위스경찰제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 스위스대사관의 Fr. Astrid Bischof에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를 드린다(참고로 Fr. Astrid Bischof의 E-mail주소는 다음과 같다: Astrid.Bischof@seo.rep.admin.ch).

5) 1997년 현재 각 칸톤의 인구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와 로마카톨릭(46.2%)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프로테스탄트(改新敎)의 교세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 특징적이다.⁸⁾

제4절 歷 史

스위스는 중부지역의 칸톤들에 의해 구성된 스위스연방을 기초로 성립하고 그 후 협력과 자결의 정신을 통하여 발전되어 왔는 바, 스위스의 역사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① 1291년: 우리(Uri), 슈비츠(Schwyz), 운터발덴(Unterwalden)의 3지역 연방수립

칸 톤	면적(km ²)	인구(명)	칸 톤	면적(km ²)	인구(명)
Zürich	1728.8	178만	Aargau	1403.6	53만
Bern	5960.9	94만	Thurgau	991	22만
Luzern	1493.4	34만	Ticino	2812.5	30만
Uri	1076.6	3만	Vaud	3211.8	61만
Schwyz	908.3	123만	Valais	5224.6	27만
Glarus	685.1	4만	Neuchâtel	803.1	17만
Zug	238.8	9만	Geneve	282.3	39만
Fribourg	1670.8	23만	Jura	836.5	7만
Solothurn	790.7	24만	Basle-Stadt	37.1	19만
Schaffhausen	298.5	7만	Basle-country	517.5	25만
St.Gallen	2025.5	44만	Obwalden	490.5	3만
Graubünden	7105.5	19만	Nidwalden	276.1	4만
Appenzell außerrhoden	242.9	5만	Appenzell Innerrhoden	172.5	1만 5천

- 6) 스위스의 연방헌법이 이들 4개 언어를 공용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어·불어·이태리어는 연방행정의 공용어이다. 한편 칸톤 Bern, Fribourg, Valais는 독일어와 불어가, 칸톤 Graubunden은 독일어, 이태리어, 레토로만쉬어가 공용어로 인정되어 있다(이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http://www.elim.net/~swissemb/culture/varunity.htm> 참조).
- 7) 근래 스위스언론에서는 이른 바 뢰슈티경계선(Röstigraben)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 뢰슈티경계선이란 Sarine 강을 따라 동쪽의 독일어권과 서쪽의 프랑스어권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말한다.
- 8) 이러한 사정은 종교개혁기에 탄압의 대상이었던 개신교도들이 스위스에 피신하면서 개신교가 스위스에 먼저 확산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쾰빙글리와 켈빈이 각각 취리히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② 1513년: 13개 칸톤으로 확대
- ③ 1648년: 30년전쟁(1618~1648) 후 베스트팔렌(Westfalen)조약에 의해 독립
- ④ 1798년: 헬베티아(Helvetia) 공화국 수립⁹⁾
- ⑤ 1815년: 비엔(Wien)회의에서 영세중립국으로 승인
- ⑥ 1848년: 미국식의 上·下 兩院制를 채택한 연방헌법제정¹⁰⁾
- ⑦ 1979년: 베른에서 쥬라(Jura)칸톤이 분리독립, 칸톤의 수는 26개가 됨.

제5절 政治構造

1. 개 관

스위스는 聯邦, 칸톤(Kanton, 26개¹¹⁾), 게마인데(Gemeinde, 3059개)의 3가지 체제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聯邦國家이다.¹²⁾

(1) 스위스연방

연방은 최상위의 차원에 있으며, 연방의 권한은 연방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연방은 ① 국가의 존립과 국민보호, ② 우편·전신·전화, ③ 화폐제도, ④ 교통(國道

9) 헬베티아공화국은 1798년에 나폴레옹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각 칸톤의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통일적인 주권중앙정부를 핵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를 그 특색으로 한다. 이후 프랑스군의 철수이후 4년만에 와해된다.

10) 1848년의 스위스연방헌법은 연방에게는 극히 제한된 권력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권한을 칸톤에게 부여하고 있었다(<http://www.elim.net/~swissemb/culture/statpol.htm> 참조).

11) 정확히 말하면 스위스는 자치권을 갖는 20개의 칸톤과 6개의 半칸톤(Halbkanton)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즉 ① Unterwalden은 12세기 이래 Nidwalden과 Obwalden으로 구분되어 인식되어져 왔으며, ② Appenzell은 1597년의 종교개혁 이후 Appenzell Outer-Rhodes와 Appenzell Inner-Rhodes로 구분되었고, ③ Basle는 1833년의 내란이후 Basle-Town과 Basle-Country로 분할되었다. 한편 칸톤들은 대부분 다시 몇 개의 行政區域(Bezirk)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그 행정구역은 단지 행정기능만을 가질 뿐이다.

12) 스위스연방헌법 제1조 및 3조 참조.

나 철도), ⑤ 군사, ⑥ 관세, ⑦ 외국과의 외교관계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2) 칸 톤

각 칸톤은 거의 완전한 主權을 행사하며, 연방헌법에 의하여 연방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각 칸톤은 각기 독립한 헌법과 칸톤議會¹³⁾· 칸톤內閣 및 칸톤法院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일부 칸톤¹⁴⁾에서는 전형적인 직접민주제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바, 란츠 게마인데(Landsgemeinde)라고 불리우는 廣場民衆議會制度¹⁵⁾가 그것이다.

(3) 게마인데

게마인데는 기초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으며, 역시 독자의 헌법과 게마인데議會(Gemeindeversammlung)와 게마인데內閣(Gemeinderat)를 갖고 있다.

2. 聯邦內閣(Bundesrat)¹⁶⁾

연방내각은 7인 각료(Bundesminister)¹⁷⁾의 會議體로 구성되며, 각료들이 매년 돌아가며 연방대통령(Bundespräsident)¹⁸⁾직을 겸임한다. 한편 7인의 각료들이 각각 다음과 같

13) 칸톤의회는 정식명칭은 칸톤에 따라 다르며, 현재 Grosser Rat, Kantonsrat, Landesrat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14) Appenzell, Glarus, Unterwalden 칸톤을 말한다.

15) 유권자가 모두 마을의 광장에 모여 擧手방식으로 그 지역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책임자를 직접 선출하는 제도인 란츠게마인데는 스위스의 특기할만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16) '聯邦評議會'라고 번역되기도 한다(권영성, 전제서, 681면 참조).

17) 연방내각의 각료는 4년을 임기로 하며, 兩院 합동회의에서 선출된다. 한편 각료의 선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진다고 한다. 즉 ① 동일 칸톤출신이 2인 이상 선출될 수 없다, ② 소속 국회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이 그 자리를 나눈다, ③ 인구가 많은 칸톤인 취히리, 베른, 보(Vaud)에는 각 한자리가 배정된다는 것들이 그것이다.

18) 연방대통령은 매년 연방의회에서 선출되며 연방내각의 의장이 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별로

은 7개부처의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 外務部(EDA, Departement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 內務部(EDI, Departement des Innern)
- 法務警察部(EJPD, Justiz- und Polizeidepartement)
- 國防體育部(VBS, Departement für Verteidigung, Bevölkerungsschutz und Sport)
- 財務部(EFD, Finanzdepartement)
- 國民經濟部(EVD, Volkswirtschaftsdepartement)
- 環境·交通·資源·遞信部(UVEK, Departement für Umwelt, Verkehr, Energie und Kommunikation)¹⁹⁾

3. 聯邦議會(Bundesversammlung)

(1) 구 성

연방의회는 연방의 입법기관으로서 國民會議(Nationalrat, große Kammer; 下院)와 칸톤代表會議(Ständerat, kleine Kammer; 上院)²⁰⁾의 兩院으로 구성된다. 국민회의는 200명의 대표로 구성되는 바, 대표의 수는 칸톤의 인구수에 비례한다. 또한 칸톤대표회의는 (칸톤의 인구의 多寡에 상관없이) 각 칸톤에서 2명씩, 그리고 半칸톤에서 1명씩 파견된 총 4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2) 특 색

법률은 양원에서 각각 독립하여 심의하며 양원에서 다 찬성을 얻어야 성립되는 바,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의례적인 존재일 뿐이다.

19) 연방내각의 구성 등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http://www.admin.ch> 참조.

20) 參議院(권영성, 전게서, 681면 참조) 또는 洲議會(<http://www.travel21.co.kr/data/17-1.htm>)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이는 인구가 적은 칸톤의 권리도 인구가 많은 칸톤의 권리와 같이 보호해주려는 것으로, 칸톤의 권한이 연방의 권한에 선행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3) 정당별 의석분포

스위스에는 많은 群小政黨이 존재하는 바, 1998년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의석분포는 다음과 같다.

- ① 국민회의: 사회민주당(55), 급진민주당(44), 기독교민주당(34), 스위스국민당(30), 자유민주당(9), 녹색당(8), 자유당(7), 독립동맹당(3), 스위스민주당(3), 노동당(3), 북음당(2), 기타(5).
- ② 칸톤대표회의: 급진민주당(17), 기독교민주당(16), 사회민주당(5), 스위스국민당(5), 자유당(2), 독립동맹당(1).

4. 聯邦法院(Bundesgericht)

연방법원은 스위스의 최고의 司法機關으로서 로잔느에 설치되어 있으며, 스위스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그의 임무로 한다.

제6절 經 濟

1996년 기준으로 스위스의 수출은 약 760억불, 수입은 약 740억불에 이르러 약 20억 불 정도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1996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GNP)은 41,000불에 달하고 있다.

제7절 우리나라와의 관계

스위스는 중립주의의 원칙상 남북한동거리 외교정책을 내세워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를 하고 있으며, 휴전이후 오늘날까지 UN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 남북한간의 정

전협정준수여부를 지켜보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의 교역량은 1997년 기준 44억불에 이르며 스위스가 2억불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962년: 외교관계수립(3월)
- ② 1963년: 한국, 스위스 베른에 대사관설치
- ③ 1964년: 스위스, 한국 서울에 대사관설치
- ④ 1971년: 한-스위스 투자촉진 및 보장에 관한 협정체결
- ⑤ 1975년: 항공협정체결
- ⑥ 1977년: 특허상품보호에 관한 협정체결
- ⑦ 1979년: 양국 비자면제협정체결
- ⑧ 1980년: 주한 스위스상주대사 부임
- ⑨ 1980년: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제3장 스위스의 警察制度

제1절 스위스 警察制度概觀

1. 概 說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夜間警備制度(Nachtwächtertum)에 그 기원을 두고 발전한 스위스 경찰은 1933년 이래 근대적인 조직을 갖게 되었으며, 현재에는 연방경찰(Bundespolizei), 칸톤경찰(Kantonpolizei) 및 도시경찰/게마인데경찰(Stadt-/Gemeindepolizei)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취리히市가 가장 큰 게마인데경찰을(1900여명, 1994년 기준), 칸톤 취리히가 가장 큰 칸톤경찰을(약 2000명, 1994년 기준) 갖고 있다.

한편 스위스 전체의 경찰은 칸톤경찰, 도시경찰/게마인데경찰에 근무하는 약 17,000명의 경찰공무원 및 민간인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警察密度(Polizeidichte)²¹⁾는 1:416에 달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2월 1일 현재 경찰밀도는 1:519로서²²⁾ 1997년의 1:513보다 오히려 높아졌으며,²³⁾ 기타 세계각국의 경찰밀도는 <표 1>과 같다.

21) 경찰밀도란 특정지역(또는 국가)에서 주민(또는 국민)을 경찰공무원의 수로 나눈 수, 즉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를 말한다(Rupprecht(Hrsg.), Polizei Lexikon, 2. Aufl., 1995, S.408).

22) 인구수(46,991,000명)를 경찰공무원정원(90,488명)으로 나눈 것으로서, 약 5만명에 이르는 의 경과 전경의 숫자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관련자료의 제공에 협력해 준 조지호 경감(경찰청 기획과)과 장윤식 경위(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에게 지면상으로나마 감사의 뜻을 전한다.

23) 이는 현 정부의 '정부생산성 10% 제고' 추진에 따른 경찰의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경찰청, 경찰백서, 1999, 234면 참조), 선진제국들이 치안확보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수를 늘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진다. 연도별 경찰공무원정원 및 경찰서·파출소별 관할 인구 등에 관하여 자세한 통계자료는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제42호, 1998, 13면 이하 참조.

<표 1> 세계각국의 경찰밀도

독 일	1:368(1994년 현재) ²⁴⁾
일 본	1:483(1994년 현재) ²⁵⁾
미 국	LA(1:414), Houston(1:335), Phonex(1:497, 이상 1995년 현재) ²⁶⁾
기 타	영국(1:450), 벨기에(1:500), 덴마크(1:588), 프랑스(1:400), 아일랜드(1:370), 이태리(1:770), 룩셈부르크(1:500), 네덜란드(1:450) 등 ²⁷⁾

2. 스위스 警察制度의 特徵

(1) 行政警察과 司法警察의 未分化

경찰은 그 직접적 목적을 기준으로 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行政警察과 ② 범죄수사와 피의자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司法警察로 구분될 수 있는 바, 스위스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양자를 구별하지만 조직상으로는 普通警察機關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아울러 관장하고 있다.²⁸⁾

(2) 國家警察인가 自治體警察인가?

경찰조직을 그 유지권한 및 책임소재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로 나누어 볼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²⁹⁾ 한편 스위스의 경찰조직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24) 독일의 경우 1964년의 경찰밀도가 1:469였던 것에 반하여(Rupprecht(Hrsg.), Polizei Lexikon, 2. Aufl., 1995, S.408) 1994년의 경찰밀도는 1:368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치안수요의 확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수가 증대하였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 준다.

25) 유규창·남궁구, 경찰의 야간대응력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in: 치안논총 제15집, 1999, 23면 참조).

26) Crime in the Unites States, 1995(유규창·남궁구, 전개논문, 23면에서 재인용).

27) 다만 이들 국가의 경우는 1978년의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스위스 등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다고 사료된다.

28)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및 형사소송법 제196조 참조).

29) 우리나라의 경우 근래에 들어 자치체경찰에 관한 연구가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 바, 특히 주

있다고 볼 것인지(혹은 적어도 어떤 것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① 스위스의 경찰제도는 자치체경찰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의 국가경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³⁰⁾와 ② 국가경찰로서의 칸톤경찰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스위스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서의 독일과 유사하다고 설명하는 견해³¹⁾의 대립이 있다.

생각건대 스위스의 경우 칸톤이 그의 관할구역에서 모든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등 警察高權(Polizeihoheit)과 경찰제도가 전적으로 칸톤의 수중에 있으므로 스위스는 自治體警察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스위스 경찰 스스로도 “경찰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스위스의 경우 국가경찰(Nationale Polizei)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논거로 칸톤의 主權이 엄격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³²⁾ 한편 스위스의 연방국가 형태에 상응하는 이 같은 연방적 경찰시스템의 단점으로는 統一性의 결여, 中央指揮本部(zentrale Führungsstelle)의 결여, 警察豫備戰力의 결여, 지방정책에의 의존 등이 들어지고 있으며, 장점으로는 지역적 사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 및 자신의 고향에 대한 결속력강화가 들어지고 있다.³³⁾

3. 스위스 警察制度概觀

전술한 것과 같은 스위스의 연방국가적 구조 때문에 26개의 칸톤警察部隊(Polizeikorps)³⁴⁾는 그의 성립, 조직, 교육, 임금, 무장, 장비, 제복 및 언어에 있어서 각기 상이

목할만한 것으로는 경찰개혁위원회 실무연구팀, 자치경찰제의 이해 - 자치경찰제의 이념, 조직, 운영, 수사권-, 경찰개혁위원회, 1999;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결과 보고서, 1998; 김석범, 자치경찰제 도입의 타당성과 합리적 시행방안,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6; 정균환, 자치경찰, 신유영사, 1996 등.

30) Schweizerische Bundesanwaltschaft, Überblick über die Poizeiororganisation in der Schweiy, 1989, S.2.

31)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학문사, 1993, 331면 등.

32) Roth, Die Schweizer Polizei, PTV 1994, 161 ff.(162).

33) Roth, a.a.O., 162.

34) 후술하는 것처럼 스위스의 경찰은 군대식 계급을 사용하는 등 그 조직에 있어 군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바, 따라서 警察‘部隊’(Korps)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 점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그러한 점들을 개괄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³⁵⁾

(1) 경찰의 組織

전술한 것과 같이 칸톤警察 및 게마인데警察의 조직은 상이하며, 통일된 조직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의 조직은 무엇보다도 경찰부대의 규모, 지리적 사정 및 업무에 따라 결정된다.

(2) 警察公務員制度

① 경찰공무원관계의 發生: 경찰공무원관계는 일반적으로 任命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 임명이란 특정인에게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任命要件: 경찰공무원의 임명요건은 각 경찰부대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요구된다.³⁶⁾

- ㉠ 스위스市民權을 가지고 있을 것,
- ㉡ 20살 이상 30살 이하의 연령,
- ㉢ 직업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할 것,
- ㉣ 군사훈련소의 기초훈련을 수료할 것(남자),
- ㉤ 건강상태가 양호할 것,
- ㉥ 신원이 확실할 것,
- ㉦ 좋은 評判을 얻고 있을 것,
- ㉧ 일정한 신체조건을 갖출 것³⁷⁾ 등.

35) 스위스경찰제도개관에 관한 이하의 내용은 주로 Roth, a.a.O., 163 ff.를 참조한 것이다.

36)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간부후보생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연령: 만 21세 이상 30세 이하(면접시험일 기준)
- ② 학력: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③ 신체조건: 신장 - 167cm(여자 157cm) 이상, 체중 - 57kg(여자 47kg) 이상, 흉위 - 2분의 1 이상,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인 자는 안경벗고 0.2 이상)

나) 採用試驗: 전술한 요건을 갖춘자의 志願書·신원조회·의사의 검진에 기초하여 대상자를 선발한 후 해당 부대에서 面接을 포함한 채용시험을 치루며,³⁸⁾ 채용 시험에 심리검사가 보충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② 再任用 등

가) 再任用: 스위스의 경찰공무원은 평생토록, 즉 終身職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매 4년마다 직무상의 상급행정청에 의해 재임용을 받게 된다. 물론 재임용의 과정에서 책임감있는 경찰공무원은 그의 근무관계가 계속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찰공무원이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드물지는 않다고 한다.

나) 昇進: 승진을 위한 특별시험은 없으며 근무성적에 대한 評定에 의해 승진임용된다.³⁹⁾

③ 경찰공무원관계의 消滅: 停年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정년규정 역시 칸톤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나 늦어도 65세까지는 정년에 들어가며,⁴⁰⁾ 스위스에서는 55세가 정년인 경우⁴¹⁾도 있다고 한다.

(3) 階 級

소수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스위스에서는 경찰의 계급에 <표 2>와 같은 군대식의 계급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소위부터 대령까지를 幹部(Offizier), 하사부터 부관까지

37) 신체조건 역시 각 칸톤마다 상이한 바, 예컨대 「베른」칸톤의 경우에는 남자 170cm, 여자 165cm 이상의 신장이 요구된다(<http://www.police.be.ch> 참조).

38) 채용시험에서는 일반상식, 지적·신체적 적합성에 대한 테스트가 행해하여지는 바, 구체적 과목은 각 칸톤에 따라 다르다. 참고로 「베른」칸톤의 경우에는 1차인 적성검사에서는 독일어·지리·國家學을 테스트하며, 2차에서는 주의력·책임감·지능검사·인지능력·프랑스어 및 체력검사가 행해진다(<http://www.police.be.ch> 참조).

39) 스위스의 警察制度에 대해(下), 경찰고시, 1991년 6월호, 119면.

40) 근래에는 정년이 60세로 낮추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年齡停年과 階級停年の 2종류가 있으며, 연령정년의 경우 警正이상은 60세, 警監이하는 57세로 되어 있다(경찰공무원법 제24조 1항 참조).

41) 21세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이 35년간 근무한 후 연금의 전액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에 그러하다고 한다(이러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덕선·박한철, 전계논문, 222면).

를 非幹部(Unteroffizier)라고 하며, 비간부에서 간부로 승진하기 위하여서는 소정의 幹部課程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한편 병장, 하사와 중사에 “특수임무(besondere Aufgaben)”가 부가된 계급도 있는 바, 이러한 중간계급(Zwischen-Dienstgrad)에 의하여 승진이 용이해지고 특별한 기능의 수행이 보장되어진다.

<표 2>

스위스의 警察階級

- 경찰관(Polizeidoldat od. Poizeimann)
- 병장(Gefreiter)
- 하사(Korporal)
- 중사(Wachtmeister)
- 상사(Feldwebel)
- 부관(Adjutant)
- 소위(Leutnant)
- 중위(Oberleutnant)
- 대위(Hauptmann)
- 소령(Major)
- 중령(Oberstleutnant)
- 대령(Oberst)

(4) 報 酬

보수는 俸給과 手當을 합한 급여액을 말하는 바, 스위스 전역에 통일된 報酬規程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보수체계가 좋은 부대의 非幹部가 보수체계가 열악한 부대의 幹部(Offizier)와 동일한 봉급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 ① 俸給 :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職責別로 지급 되는 基本給與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階級別·號俸別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는 바(公務員報酬規程 제4조 2호 참조), 스위스의 경우 봉급은 ‘階級’에 따라서 결정되며, 관계 칸톤과 게마인데의 報

酬規程에 따라 지급된다.⁴²⁾

- ② 手當: 수당이란 「봉급 이외의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附加給與」를 말하는 바(同條 3호 참조), 스위스의 대부분의 경찰부대서는 전술한 봉급 이외에 夜勤, 機動勤務에 대한 追加手當, 주거에 대한 보상 등이 행해진다.⁴³⁾

(5) 教育⁴⁴⁾

경찰관후보생에 대한 교육은 칸톤마다 달라서 9개월 내지 15개월간 계속되는 바, 교육은 一般教育, 專門教育, 사격 및 운동을 포함한다. 한편 칸톤에 따라 교육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독립한 고유의 경찰학교를 갖고 있는 큰 警察部隊⁴⁵⁾ 자신의 경찰학교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행하는 반면, 작은 警察部隊에서는 그의 경찰관후보생을 큰 경찰부대에 있는 경찰학교⁴⁶⁾ 혹은 노이엔부르크에 있는 스위스警察研究所(SPIN,

42) 참고로 「베른」칸톤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봉급은 다음과 같으며(1998/99기준, 月 총수입; <http://www.police.be.ch>. 참조), 1999년 12월 8일 현재 스위스프랑의 원화대비 매매기준율은 100원당 72,289원이다. 한편 같은 후보생 혹은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따라 봉급에 차이가 있는 점은 특기할만 하다.

① 경찰관후보생

- 20세 이상 22세 이하	Fr.3685.50
- 23세 이상 25세 이하	Fr.3807
- 26세 이상 28세 이하	Fr.3928.50
- 29세 이상	Fr.4050

② 경찰관

- 23세까지	Fr.4753.15
- 24세 이상 26세 이하	Fr.4824.25
- 27세 이상	Fr.4895.75

43) 「베른」칸톤의 경우 봉급에 1인당 Fr.150/Fr.180의 자녀수당(Kinderzulage), 月 Fr.300의 보호수당(Betreuungszulage), 야근수당, 주말수당 및 대기수당이 덧붙여진다고 한다(<http://www.police.be.ch> 참조).

44) 한편 독일의 경찰교육에 관한 것도 참고할만 하다고 생각되는 바, 그에 관하여서는 이관회/임준태, 독일 경찰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호, 1999, 107면 이하 및 「시민을 위한 경찰발전연구회」의 홈페이지 중 이야기마당에 게재된 임준태 교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글을 참조할 것(<http://www.kopsa.org/frame1.htm>).

45) 예컨대 「베른」칸톤은 독립한 警察學校(Polizeischule)를 갖고 있다.

Schweizerisches Polizei-Institut Neuenburg)⁴⁷⁾에서 교육받게 한다.

- ① 基本教育(Grundausbildung): 경찰관으로서의 기본소양에 대한 교육으로서 교육이 끝나갈 경우에는 다양한 실습이 행해진다. 교육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졸업시험이 있고, 계속해서 선서가 행해진다. 그 후에 보안경찰/기동경찰에의 배치가 있게 되고, 다시 적성에 따라 특별업무(예 : 사법경찰, 교통경찰)에 배치된다.⁴⁸⁾
- ② 專門教育(spezifische Ausbildung): 기본교육 후에 배치된 곳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다.
- ③ 深化教育(Weiterbildungkurs): 자신의 부대에서, 다른 경찰부대와 함께 혹은 SPIN에서 받는다.
- ④ 幹部課程(Kaderkurs): 큰 부대나 SPIN에서, 혹은 심지어 외국에서도(뮌헨 등) 행해진다.

(6) 制服

스위스의 경찰은 우리나라와 같이 통일된 제복을 갖고 있지 않으며, 칸톤에 따라서 제복이 녹색, 청색,⁴⁹⁾ 갈색⁵⁰⁾ 혹은 흑색으로 다르다. 심지어는 하나의 칸톤안에서도 칸톤警察과 게마인데警察의 제복이 다르다. 制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冬節期의 제복과 夏服(통상적으로 반팔 폴로셔츠, 경찰모, 우비)간에도 차이점이

46) 예컨대 東部스위스의 작은 칸톤들은 그의 경찰관후보생을 취리히나 「쌍트 갈렌」칸톤에서 교육받게 한다(이덕선·박한철, 전계논문, 225면).

47) 스위스警察研究所는 1946년에 재단의 형태로 설립되었고, 그 이후 행정청의 지원하에 경찰교육의 중심지로 발전되었다. SPIN은 대·소 경찰부대의 경찰관후보생에 대한 기본교육외에도 매년 全 스위스적 의미를 갖는 수많은 교육과정을 조직하는바, 이는 경찰교육에 있어서의 일정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SPIN의 교수진은 연방, 칸톤, 게마인데의 경찰간부 및 국내외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48) 한편 취리히칸톤에서는 현직 경찰관으로 복무한 후 새로운 의무를 기다리는 경찰관에게도 「기본교육」이란 이름 하에 전문 과정에 대한 교육이 행해지는 바, 동 교육은 수사 및 교통경찰 분야에 중점을 두고 5개월간 행해진다고 한다(이덕선·박한철, 전계논문, 225면).

49) 「취리히」칸톤, 취리히칸톤의 홈페이지(<http://www.ktzh.ch/kapo/index.idc>) 참조.

50) 「테센」칸톤, 「테센」칸톤의 홈페이지(<http://www.ti.ch/DI/POL/p1-frame.html>) 참조.

있으며, 담당업무에 따라서도 차이점을 보인다. 즉, 保安警察의 제복이 일반적으로 기본 유니폼이 되고, 交通警察은 흰색 가죽장화와 붉은색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水上警察의 제복도 보안경찰의 그것과 다르다.

계급표시는 특수임무가 부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대의 그것과 유사하다. 계급표시는 어깨에 부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드물게는 상박(上膊, Oberarm) 혹은 칼라에 부착되기도 한다. 모양, 소재 및 색상도 칸톤에 따라 상이하다.

(7) 警察裝備 등

- ① 業務用 車輛 : 경찰업무용차량은 칸톤과 게마인데가 스스로 조달한다. 한편 오늘날 순찰차의 외관은 적어도 색상에 있어서는 상당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흰색의 車體에 발광도료(붉은 빛)로 부분적으로 채색된 것.
- ② 武裝 : 경찰은 출동에 있어 기관총과 같은 중화기를 소지할 수는 없으며, 경찰공무원은 대부분 권총(SIG-Sauer 225/226)으로 무장한다. 또한 자동권총이 배치될 수도 있다.
- ③ 通信制度 : 스위스의 경찰부대에는 모든 종류의 통신수단, 즉 전화·텔레क्स·팩스·무선통신이 구비되어 있으며, 전화·텔레क्स·팩스는 公共通信網에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경찰부대에는 PTT⁵¹⁾를 통하여 사용가능한 각각의 무선주파수가 할당되어 있다. 그러나 대규모로 경찰이 투입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부대간의 연락을 위하여 이른 바 公用周波數(Gemeinschaftsfrequenz)를 사용할 수 있다.
武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신영역에 있어서는 스위스警察技術委員會(Schweizerische Polizeitechnische Kommission, SPTK)는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 ④ 電子手配시스템(Elektronische Fahndungssystem) : 전자수배시스템으로 각 경찰부대와 국경검문소에는 RIPOL(사람과 물건에 대한 자동수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51) PTT는 Post, Telex, Telegraf의 약어이다.

- ⑤ 警察航空隊 : 스위스는 고유의 경찰항공대를 갖고 있지 않다. 필요한 경우에 私企業으로부터 헬기를 임대하거나, 飛行라이센스를 가진 경찰공무원이 직접 조종하거나 혹은 군대의 헬기를 투입하기도 한다.⁵²⁾

(8) 特殊警察機關

- ① 對테러部隊(Antiterrogruppe): 對테러부대와 같은 특수부대는 규모가 큰 경찰부대만이 갖고 있는 바, 「베른」 都市警察의 특수부대인 “Stern” 등이 그 예이다.⁵³⁾
- ② 公安部隊(Ordnungsdienstleistungen): 특별교육을 받은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다.
- ③ 科學研究所(wissenschaftlicher Forschungsdienst, WFD): 「취리히」 도시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바, WFD는 무기, 폭발물, 화재·비행기사고 및 공문서위조의 규명 등과 관련하여 학문적 연구를 행하고 있다.

(9) 그 밖의 경찰활동

- ① 警察樂隊: 큰 경찰부대는 상이한 규모의 악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악대는 다양한 직무영역과 계급을 가진 경찰공무원과 고용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非警察的 活動: 많은 경찰부대, 특히 都市警察部隊는 본래 경찰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바(예: 구급차의 운행), 그 원인은 경찰은 언제든지 출동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 ③ 鐵道警察의 문제: 스위스에는 철도경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취리히의 경우 역과 기차안에서의 안전업무는 비무장의 개인 用役業體에 의해 행해 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철도 자체의 안전팀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한다.

52) 우리나라는 1954년 10월에 경찰항공대가 설치된 이래(경찰청 홈페이지 중 경찰역사부분, <http://www.npa.go.kr/index153.html> 참조), 현재 경찰청과 11개 지방경찰청에서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항공기의 관리·운영에 대한 업무는 警察廳 警備交通局 산하 警備2課에서 담당하고 있다(경찰청 홈페이지 중 경찰의 조직과 업무부분, <http://www.npa.go.kr/index121.html> 참조).

53) “Stern”은 스위스주재 폴란드대사관의 점거에 당하여 그 威名을 떨친 적이 있다.

(10) 勞動組合 등

스위스에서 경찰은 고유의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점에서 독일경찰이 警察勞動組合(Gewerkschaft der Polizei)을 조직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스위스경찰공무원의 대부분은 스위스警察公務員聯合(Verband schweizerischer Polizeibeamter, VSPB)에 가입해 있으며, 동 연합은 루체른에 중앙사무국을 두고 있다. 그밖에도 스위스警察幹部協會(Schweizerische Gesellschaft der Poizeioffiziere, SGPO) 등 수많은 연합 및 동맹기구가 있다.

4. 칸톤警察 相互間的 協力

스위스의 연방국가구조로 인하여 경찰조직 역시 칸톤간의 相異性과 多樣性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스위스警察制度의 단점으로는 경찰기구가 통일되어 있지 못하며 복잡하다는 것과 中央指揮本部가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찰의 교육·장비 및 전략을 가능한한 통일시키기 위하여 칸톤 차원에서 협력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⁵⁴⁾

(1) 委員會, 研究所 등의 設置

경찰부대간의 통일성과 경험(내지 정보)을 교환하기 위하여 후술하는 것과 같은 각종의 위원회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는 바, 경찰의 중요관심사 및 문제가 이들 조직들의 공동회의에서 다루어지고 논의된다.

- ① 스위스警察研究所: 경찰의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의 경찰통합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경찰의 교육 혹은 재교육을 위한 공통의 중심지이다.⁵⁵⁾
- ② 스위스警察技術委員會: 기술영역에 있어서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54) 이하의 내용은 주로 Roth, a.a.O., 164 f.; Rupprecht(Hrsg.), a.a.O., S.473; 이덕선·박한철, 전 계논문, 218면 이하; Europol, West in Europas, S.169 ff.를 참고한 것이다.

55) 스위스警察研究所에 관하여는 前述參照.

수사경험이나 기술, 국내외의 흥미있는 활동에 대하여 규칙적으로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③ 칸톤 차원의 협력을 위한 그 밖의 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스위스칸톤警察廳長協議會(Konferenz der kantonalen Polizei- kommanden der Schweiz)

나) 스위스都市警察局長聯合會(Schweizerische Vereinigung städtischer Polizeichefs)

다) 高速道路警察隊長聯合會(Vereinigung der Autopolizeichfs)

(2) 칸톤間 移動警察隊(Interkantonale Mobile Polizei)의 설치시도

1971년에는 칸톤의 관할영역을 넘어서는 경찰임무수행을 가능케하는 “칸톤間 移動警察”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연방정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3) 「重大犯罪에 있어서의 緊急手配를 위한 組織 및 그 시행에 관한 협정」

칸톤間的 공동협력방법의 모색에 있어 커다란 진전을 가져온 것이 1974년에 체결된 「重大犯罪에 있어서의 緊急手配를 위한 組織 및 그 시행에 관한 협정」(Vereinbarung über Organisation und Durchführung des alarmmäßigen Fahndung bei schweren Straftaten)인 바, 실제로 모든 칸톤이 이에 가입하였다. 이 협정은 살인·무장강도·유괴 등 중대한 범죄의 逃走者에 대한 광범위한 긴급수배의 시행을 위한 조직적 전제조건을 제공하였다.

(4) 칸톤間的 協約

대부분의 칸톤 경찰부대는 그들의 공동협력을 칸톤 상호간의 協約으로 규율하여 왔다. 이들 협약에 따르면 사회공공의 安寧⁵⁶⁾·秩序⁵⁷⁾의 유지라는 경찰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

요한 병력이 관계 칸톤의 그것보다 더 많거나(대규모행사 등) 自然災害가 발생한 경우 혹은 중대한 犯法行爲가 있는 경우 協約當事者인 칸톤의 경찰부대는 상호협력을 행한다.⁵⁸⁾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원조를 요청한 칸톤은 협약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경찰병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칸톤內의 안녕이 침해받고 있거나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에 원조요청을 받은 칸톤은 聯邦憲法에 따라 원조를 행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지원은 할당된 경찰병력의 파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⁵⁹⁾

한편 이러한 경찰부대간의 협력은 단지 스위스에 특유한 현상이 아니라 세계각국의 공통된 현상이다.⁶⁰⁾ 또한 오늘날 각종의 테러·인신매매·마약밀매·문화재밀매 등의 범죄는 국제적 조직망을 갖추고 확산되는 등 범행장소와 대상 및 逃走와 관련하여 이른바 ‘범죄의 無國境化’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서로 다른 刑事司法節次, 搜查構造, 언어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범죄정보교환, 신원확인, 搜查共助, 범죄인인도 등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요망되는 바, 이 같은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 바로 인터폴(Intropol)⁶¹⁾이다. 특히 1999년 11월 8일에서 11월 12일에 걸

56) 여기서 公共의 安寧이란 「개인의 생명·건강·명예·자유·재산, 국가와 그 제도의 존속과 기능, 객관적 법질서가 아무런 장애도 받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공공의 안녕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vgl.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in: Steiner(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5. Aufl., Rn.(Schenke 교수의 경찰법교과서는 연구자에 의해 번역·출간되어 있다. 서정범 譯, 독일경찰법론, 세창출판사, 1998); Knemeyer, Polizei- und Ordnungsrecht, 7. Aufl., 1998, Rn.73; Württenberger/Heckmann/Riggeret, Polizeirecht in Baden-württemberg, 3 Aufl., 1997, Rn.272.

57) 여기서 公共의 秩序란 「그때 그때의 지배적인 사회적 윤리관에 따를 때 그를 준수하는 것이 경찰영역내에 살고 있는 인간의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불가결의 전제조건이라고 간주되는 不文規律(Regelung)의 總體」를 의미한다. 공공의 질서개념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註) 55에 열거한 문헌들의 관련부분 참조.

58) 즉, 하나의 칸톤의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경찰의 투입은 한 칸톤의 경찰력으로는 특정한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거나, 범죄혐의자 등을 신속하게 뒤쫓을 수 없는 경우에만, “隣接칸톤에 대한 援助”(Nachbarschaftshilfe)의 방식으로 행해진다.

59) 公共의 安寧에 대한 특히 중대한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군대가 투입될 수도 있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60)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搜查에 있어서 廣域·共助搜查가 문제시되고 있는 바, 공조수사의 중요성 및 우리나라의 구체적 사례에 관하여는 경찰청, 경찰백서, 1999, 47면 이하 참조.

61) 인터폴(Intropol)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CPO)의 약칭이다. 인터폴은 1923년 열린 국제형사경찰회의(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ngress)가

처 서울에서 개최된 제68차 인터폴총회의 議題가 “兩者間 警察協力에 관한 協約모델”(Model Agreement on Bilateral Cooperation)이라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 크다고 생각한다.

제2절 칸톤警察

1. 概 說

헌법과 기타 법률에서 연방경찰의 권한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모두 칸톤경찰의 권한으로 되어있다. 즉 모든 칸톤은 그의 관할구역안에서 모든 경찰업무를 수행하며,⁶²⁾ 이 점에서 스위스는 칸톤경찰이 경찰조직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각기 상이한 역사적·지리적 배경과 언어를 갖고 있는 칸톤들은 경찰조직과 관련하여서도 각기 그 특이성을 갖고 있으며, 경찰밀도 역시 상이하하다.⁶³⁾ 따라서 칸톤경찰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는 바, 이하에서는 公用語를 기준으로 獨逸語圈 칸톤, 佛語圈 칸톤, 이태리語圈 칸톤의 3유형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⁶⁴⁾

모체가 된 것으로 2차대전 직후인 1946년 재출범한 뒤 1971년 유엔으로부터 政府間機構로 공식인정되어 오늘날 177개 회원국을 가진 범세계적 기구로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4년에 인터폴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제68차 인터폴 서울총회개회식 대통령연설문(1쪽) 및 김광식 경찰청장의 환영사 중에서). 인터폴을 통한 國際共助體制의 구축의 문제에 관하여는 경찰청, 경찰백서, 1997, 337면 이하 참조. 인터폴의 조직, 업무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인터폴 홈페이지(<http://193.123.144.14/interpol.com>)를 참조할 것.

62) 물론 칸톤의 경찰기관이 당해 칸톤의 관할구역을 넘어서서 활동하게 될 때도 있는 바, 그 경우는 칸톤간의 협약에 의해 칸톤간의 권리나 의무가 규율된다. 또한 형법의 특별규정에 근거하여 경찰공무원은 급박한 경우에는 다른 칸톤의 영역에 있는 용의자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수사를 행할 수 있고, 그곳에서 그를 체포할 수도 있다(Roth, a.a.O., 161).

63) 예컨대, Schaffhausen 칸톤은 1:458, St.Gallen 칸톤은 1:871의 경찰밀도를 보이고 있다. vgl. Rupprecht(Hrsg.), a.a.O., S.473.

64) 이 같은 분류방식을 택하게 된 이유는 동일 언어권에 속하는 칸톤의 경우 그 조직 등에 있어 상호 유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해당 칸톤의 공용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그 칸톤의 경찰제도의 특징을 추단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2. 獨逸語圈 칸톤 - 「베른」 칸톤을 중심으로⁶⁵⁾

취리히나 베른 등 독일어권 칸톤에서는 경찰을 사범경찰(Kriminalpolizei), 보안경찰(Sicherheitspolizei) 및 교통경찰 (Verkehrspolizei)로 나누어 각기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베른」칸톤의 경찰의 조직과 임무를 개관해보기로 하겠다.⁶⁶⁾

(1) 概 觀

「베른」칸톤의 경찰은 “24시간 내내 안녕을 보장한다”라는 것을 주제로 근래 새로이 제작한 브로슈어에서 칸톤警察의 목적, 그의 수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바,⁶⁷⁾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目的 : 「베른」칸톤의 경찰은 高度의 安寧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성취동기를 가진 1300명의 경찰관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住民을 위한 업무수행을 강조하면서 “경찰은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企業으로 고객 중심으로 목적이 설정되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⁶⁸⁾
- ② 手段 :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베른」칸톤의 경찰은 주민과의 협력을 행하고, 추구하며 지원한다.
- ③ 活動 : 「베른」칸톤의 경찰은 명백한 우선순위⁶⁹⁾에 따라 활동을 행하는 바, 경찰의

65) 한편 독일어권 칸톤에 속하는 Basel--Stadt의 경찰조직에 관하여는 이덕선·박한철, 전계논문, 229면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으니 해당 부분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66) 이하의 내용은 칸톤 베른 경찰의 홈페이지(주소: <http://www.police.be.ch>)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67) 새로운 브로슈어는 무료로 제공되며, 다음의 주소(E-mail: ploizei.kommando@police.be.ch)에서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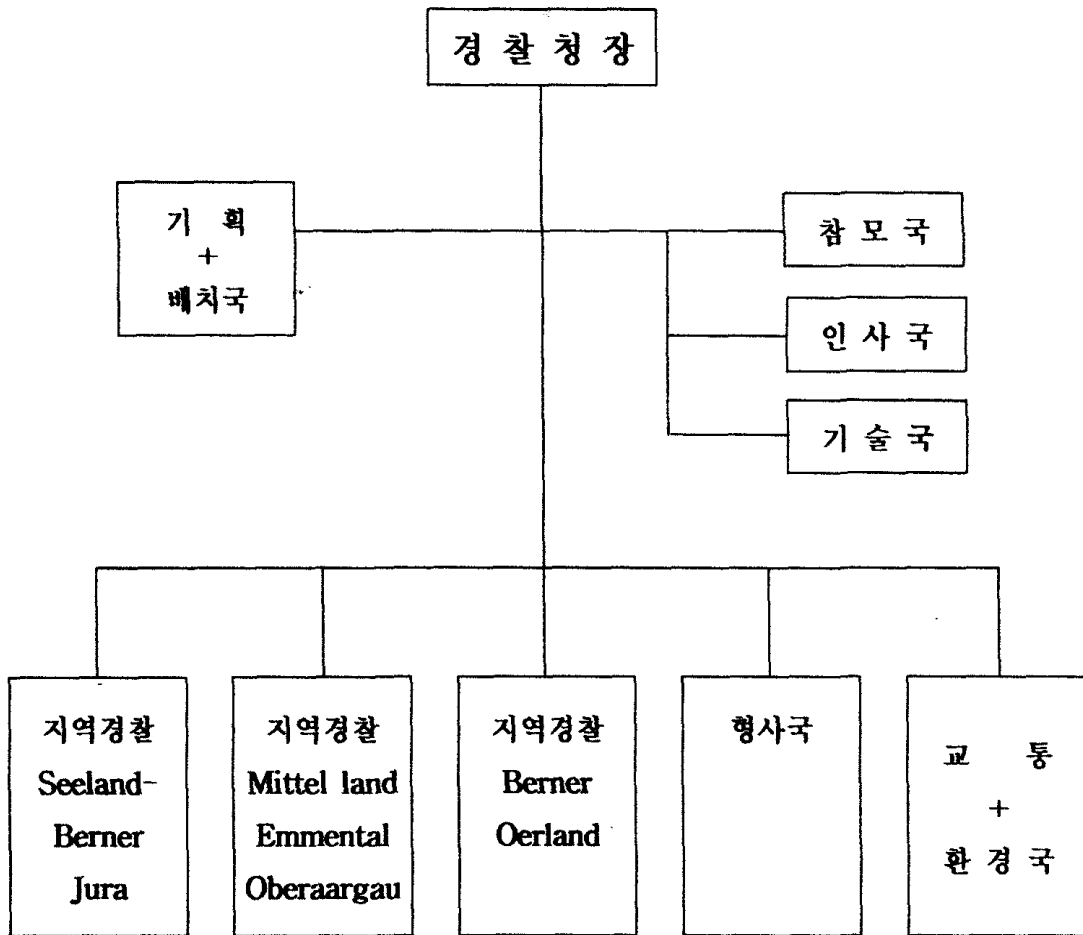
68) 이 같은 표현은 住民을 단순히 규제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治安公共財의 消費主體로 파악하는 새로운 발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바, 이처럼 모든 경찰업무물서비스상품의 생산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할 때 국민(고객)만족 위주의 고품질 봉사치안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근래 여론선도층을 대상으로 행해진 경찰서비스개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81.7%가 바람직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음은 주목할 만 하다(현대리서치연구소, 경찰개혁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보고서 -여론선도층 대상-, 1999, 18면).

활동은 1998년 1월 1일에 발효한 경찰법⁷⁰⁾에 근거한다.

(2) 組 織

「베른」칸톤의 경찰은 다음과 같이 조직되어 있다.

<표 3> 「베른」칸톤의 警察組織



69)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는 법률상의 근거, 현재의 필요성과 주민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70) 「베른」칸톤의 경찰법 중 경찰의 직무에 관한 부분은 참고자료로 말미에 번역·게재하기로 하겠다.

(3) 任 務

- ① 企劃+配置局(Der Organisationsbereich Planung+Einsatz): 베른경찰청장의 기획 및 지휘기구로서 공공의 안녕유지를 위한 연결망구축을 행한다.
- ② 人事局(Der Organisationsbereich Personal): 경찰학교에서의 기본교육 이외에 1년에 200여개 과정의 深化教育을 행하는 바, 교육의 내용은 심리적인 것에 중점이 들어진다고 한다.
- ③ 技術局(Der Organisationsbereich Technik): 칸톤경찰에 대한 보급과 실질적인 인프라구축을 확보한다.
- ④ 參謀局(Der Organisationsbereich Stab): 칸톤경찰 내부의 많은 업무의 횡적분배를 담당한다.
- ⑤ 刑事局(Kriminalabteilung)
 - 가) 業務: 형사국은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즉, 형사국은 중대범죄, 超地域的 의의를 갖는 사건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특별지식을 요하는 범죄를 처리한다. 또한 형사국은 칸톤경찰의 모든 사법경찰적 직무에 대한 중점교육을 담당하며, 다른 칸톤이나 연방과의 접촉도 보장한다.
 - 나) 組織: 200여명의 직원이 다음과 같은 3個課에서 일하고 있다.
 - ㉠ 特別搜查課(Spezialfahndung Dienst): 특별수사과는 다시 9個係로 나누어져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 마약거래, 경제범죄에서 조직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요한 범죄영역을 다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엔치안'(Enzian)⁷¹⁾인 바, Enzian은 최정예부대로서 통상의 경찰력에 비해 한층 고도의 위험이 존재하는 곳, 특히 인질 사건이나 銃器亂射사건 등의 경우에 출동한다. 한편 犯罪分析係(Kriminalanalysestelle)는 칸톤경찰을 위하여 중요사항에 대한 교육근거로서 상황보고서를 만들어낸다.
 - ㉡ 犯罪技術課(Kriminaltechnischen Dienst)
 - ㉢ 搜查-情報課(Fahndungs-Informationsdienst)

71) Enzian은 '용담'을 뜻하는 독일어로, 여기서는 특수부대의 명칭으로 쓰였다.

⑥ 交通+環境局(Abteilung Verkehr+Umwelt)

가) 業務: 100여명의 交通+환경국 직원이 交通安全·交通기술 및 경찰과 관련있는 環境보호영역에서 활동하며,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 약 350대의 차량을 갖고 있다.

나) 組織

- ① 事故處理課(Unfalldienst): 대형교통사고와 사고경위가 불분명한 사고의 경우에 출동한다.
- ② 環境犯罪課((Der Fachbereich Umweltkriminalität): 環境 파괴자를 색출해 내는 것을 그의 과제로 한다.
- ③ 動物保護課(Der Fachbereich Tierschutz): 동물의 사육·운송 및 동물거래와 관련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사를 행한다.
- ④ 騒音對策課(Der Fachbereich Lärmbekämpfung): 소송의 제기 혹은 행정청의 요구에 응하여 모든 가능한 騒音發生源을 판단하고, 騒音數值를 측정한다.
- ⑤ 기타: 그밖에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交通교육을 담당하는 交通指導官도 이에 속하며, 레이타콘트롤 및 차량통제와 운전자의 근무시간(휴식시간)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도 交通+환경국에서 행한다.

⑦ 地域警察(Regionalpolizei): 중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에 있어서도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3개 地域警察이 설치되어 있는 바,⁷²⁾ 절도죄·주거침입죄·사기죄·마약범죄 및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을 해하는 범죄의 수사가 3개지역의 司法警察의 주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가) 派出所(Polizeistelle): 주민들의 주된 파트너로서 파출소에 배치된 경찰을 들 수 있는데, 베른의 경우 약 100개소의 파출소가 운영되고 있다. 파출소에서는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등 다양한 경찰과제를 수행한다.

72) 지역경찰은 베른, 빌(Biel), 투운(Thun)과 무티에르(Moutier)에 있는 主事務所와 부르크도르프(Bürgdorf), 인터라켄(Interlaken), 랑엔탈(Langenthal)과 세인트 이미어(St. Imier)에 있는 出張所를 통해 당해 지역을 완전히 커버한다.

나) 이동경찰(die Mobile Polizei): 경찰의 출동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동경찰이 투입되는 바, 이들은 24시간 내내 3개 투입 본부(상황실)와 계속 연락하면서 칸톤의 전 관할구역을 순찰한다.

3. 佛語圈 칸톤 - 「제네바」 칸톤을 중심으로

제네바나 보(Vaud) 등 불어권 칸톤에서는 경찰은 크게 다음의 2가지 유형, 즉 司法警察(La Police de Sûreté)⁷³⁾과 行政警察(La gendarmerie)⁷⁴⁾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경우 La Police de Sûreté는 독일어권 칸톤의 사법경찰(Kriminalpolizei)에 해당하며, La gendarmerie는 독일어권 칸톤의 保安警察(Sicherheitspolizei)과 交通警察(Verkehrspolizei)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독일어권의 칸톤에서는 별도의 조직을 갖고 있는 교통경찰이 프랑스어권 칸톤에서는 보안경찰에 부속되어 있거나 그 하부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⁷⁵⁾

이하에서는 「제네바」칸톤의 경찰조직 및 임무를 개관해 보기로 한다.

(1) 概 觀

전술한 바와 같이 제네바의 경우 경찰은 크게 司法警察과 行政警察로 구분되는 바, 양자는 모두 제네바경찰청장 밑에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독립된 존재라고 한다.⁷⁶⁾

73) La Police de Sûreté를 프랑스어의 의미에만 착안하여 '保安警察'이라고 번역하거나(이덕선·박한철, 전계논문, 185면 이하), 그들이 제복을 입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私服隊'라고 번역하는 경우(정진환, 전계서, 337면)도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 보듯 La Police de Sûreté는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을 주 임무로 하므로 '司法警察'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74) La gendarmerie를 프랑스어의 의미에만 착안하여 '憲兵'이라고 번역하거나(이덕선·박한철, 전계논문, 185면 이하), 그들이 제복을 입는 점에 착안하여 '制服隊'라고 번역하는 경우(정진환, 전계서, 337면)가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La gendarmerie는 공공의 안녕의 유지를 그 임무로 하며 교통경찰적 기능까지 담당하고 정복을 착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行政警察'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의미전달에 더 적확하다고 여겨진다.

75) 이덕선·박한철, 전계논문, 186면.

76) 정진환, 전계서, 337면.

(2) 司法警察⁷⁷⁾

사법경찰은 주로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을 그 임무로 하며, 업무는 사복 차림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사법경찰은 다음과 같은 課들로 구성되어 있다.

- ① 未成年課: 1959년에 창설된 것으로 소년범죄의 예방과 사후대책을 주된 임무로 한다. 미성년자 범죄와 실종에 대한 수사, 그들이 모이는 공간(영화관, 디스코장 등)에 대한 단속을 행한다.
- ② 風紀團束課: 아동과의 性的 行爲, 노출증과 같은 성풍속과 관련된 수사를 전담한다 (예: 매춘부나 안마시술소에 대한 감독, 윤락행위를 행하는 호텔에 대한 단속, 음란간행물들의 단속).
- ③ 強力課: 流血犯罪, 疑問死, 심각한 육체적 권리침해에 관한 수사를 전담 한다.
- ④ 麻藥課: 마약밀매에 대처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들은 마약과 어떤 형태로든 접하는 사람들(즉, 단순소비자, 중개자, 제공자)이 출입하는 모든 장소에 개입한다. 1991년 9월 9일 이후, 제네바 국제공항에 마약문제를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설치된 것은 주목을 요한다.
- ⑤ 強盜課: 행정경찰들만이 다루게 되어 있는 지하저장고, 곡식광, 술창고 에 관계된 강도행위를 제외한 모든 강도행위를 다룬다.
- ⑥ 竊盜課: 불법침입을 하지 않고 저지른 절도에 관련된 모든 수사를 맡는다. 특히 소매치기 예방업무도 수행한다.
- ⑦ 金融課: 제네바의 금융시장에서 흘러 나오는 경제범죄를 주로 담당한다. 아울러 화폐위조 등도 다룬다.
- ⑧ 組織犯罪課: CORUS단과 FALCONE단을 주축으로 1997년 9월에 창설된 것으로, 각종 마피아들(특히 동유럽에서 발원한 마피아들)에 관한 수사를 맡고 있다. 수사 범위는 비자발급, 범죄조직의 가입, 이른바 돈세탁에까지 이른다.
- ⑨ 一般搜查課: 전술한 것과 같은 특수부서에 배당되지 않은 모든 수사를 담당한다.
- ⑩ 기타: 그 밖에 가) 인사들에 대한 경호를 행하는 安全課,⁷⁸⁾ 나) 공항안에서의 범

77) 이하의 내용은 칸톤 제네바경찰의 홈페이지 중 <http://www.geneve.ch/police/surete.html>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죄사건을 다루는 空港課 등도 이에 속한다.

(3) 行政警察⁷⁹⁾

행정경찰은 공공의 安寧의 유지를 맡고 있으며, 그 업무는 正服 차림으로 수행된다. 행정경찰은 다음과 같은 몇 개의 경찰서와 課(혹은 팀)로 구성되어 있다.

- ① 警察署: 경찰서는 제네바시내⁸⁰⁾와 교외⁸¹⁾에 설치되어 있다.
- ② 海洋警察: 1929년에 창설된 것으로, 제네바에 등록된 선박(6611척)에 대한 조사와 기술적 鑑定, 動力船과 帆船의 운항에 대한 실제조사, 항구의 감시, 인명구조, 잠수 수색을 담당한다.
- ③ 教育/豫防課(BRIGADE D'EDUCATION ET DE PREVENTION, BEP): 1968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유아반과 초등학생반에 대한 교육,⁸²⁾ 학내 여자순찰대원에 대한 교육 및 오토바이 운전면허획득을 위한 강의 등을 그 임무로 한다.
- ④ 道路安全課(BRIGADE DE SECURITE ROUTIERE, BSR): 1999년 10월 1일 종전의 고속도로과와 차량과의 통합을 통해 설치되었다. 도로안전과는 인사호위, 예방순찰, (다양한 정보게시판을 통한) 교통량안내, 과속·음주 및 차량의 중량단속 등을 통해 교통의 원활과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고속도에 대한 감시와 출동은 CASTOR(고속도로 교통감시와 국도관제센터)에서

78) 이는 제네바가 국제회의가 많이 개최되어 외국방문의 방문, 체재가 빈번하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79) 이하의 내용은 칸톤 제네바경찰의 홈페이지 중 <http://www.geneve.ch/police/gendarme.html>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80) 1853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블랑도네(Blandonnet), 부르-드-푸르(Bourg-de-Four), 페콜라(Pécolat), 플렝팔레(Plainpalais), 리브(Rive), 세르베뜨(Servette)에 있다.

81) 1850년부터 창설된 것으로, 현재 카루즈(Carouge), 센느(Chêne), 오네(Onex), 팔랑트리(Pallanterie), 베르수아(Versoix)에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경찰들은 칸톤당국과 연계하여 시위와 지역축제의 원만한 진행과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을 그의 임무로 한다.

82) 현재 연간 1500여개 반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담당한다.

- ⑤ 輸送/環境課(BRIGADE TRANSPORTS ET ENVIRONNEMENT, BTE): 차량 소음, 차량장비에 대한 규제 등 환경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활동을 담당한다.⁸³⁾ 이러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소음치수의 측정 및 기록을 위한 장비와 오토바이과 속도속을 위한 휴대용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 ⑥ 交通課(BRIGADE DE CIRCULATION, BC): 1964년에 설치된 과로서, 시내 도로교통의 안전과 流動性保障, 교통안전캠페인에의 참여, 교통량 연구에의 협조 및 레이더를 통한 단속을 그 임무로 한다.
- ⑦ 特殊機動課(BRIGADE D'INTERVENTION, BI): 1976년에 창설된 과로서 대형 범죄와 테러사건에의 출동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한다. 課員들은 자일강하, 사격, 신속한 차량운전, 폭발물탐지 등과 관련하여 강도높은 특수훈련을 받는다. 마약이나 폭발물탐지를 위한 探知犬이 있는 것도 특색이다.
- ⑧ 衛生팀(CROUPE SANITARE): 도로사고의 피해자 등을 구급차로 수송 하는 것을 담당하는 바, 출동의 탁월함을 이유로 1997년 ISO9002 인증을 받았다.
- ⑨ 外交安全팀(GROUPE DE SECURITE DIPLOMATIQUE, GSD): 상황(위급정도, 리스크 등)에 따라 외교관련 시설물, 사람과 사건을 감시함을 그 임무로 한다. 이를 위해 외교상 안전을 요하는 지역주변에서 이용자, 외부인 및 차량을 단속하고, 외교관을 보호하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순찰 활동을 행한다.
- ⑩ 헬리콥터의 使用: 제네바 국제공항에 있는 대민보호 헬리콥터는 긴급한 임무에 항상 동원되며, 부상자들의 후송, 주요 인사 호위시 도로감시 등도 행한다.

4. 이태리語圈 칸톤 - 테신(Tessin) 칸톤⁸⁴⁾

이태리어권 칸톤인 「테신」 칸톤의 경우 고유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바, 즉 경찰을 지리적인 점에 착안하여 4개의 區域(Sektor)으로 구분하여 경찰업무를 담당케

83) 따라서 생태계에 대한 위해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수사도 행한다.

84) 이태리어를 공용어로 하는 유일한 칸톤이다. 다만 래토로만쉬어를 공용어로 하는 그라우빈덴(Graubünden) 칸톤의 일부에서도 이태리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하고 있다.⁸⁵⁾

제3절 都市警察/게마인데警察

1. 概 說

都市警察/게마인데警察이라고 불리우는 警察部隊는 역사적으로 인정된 도시/게마인데의 독립에 따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의 조직 내지 임무는 칸톤마다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즉,

- (1) 게마인데警察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칸톤⁸⁶⁾
- (2) 게마인데警察을 설치하되 특정한 업무⁸⁷⁾만을 위임하고 있는 칸톤
- (3) 게마인데警察이 일차적으로(originär) 경찰임무를 수행하고, 그것에 전통적인 경찰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칸톤⁸⁸⁾

2. 게마인데警察간의 協力 등

칸톤警察간의 협력과 마찬가지로 게마인데警察간의 협력 또한 요청된다고 할 것인 바, 그 결과 인접한 게마인데警察部隊간에 경찰의 투입·인력·장비와 관련된 공동작업을 위한 협정이 존재한다.

또한 Schaffhausen 都市警察과 Schaffhausen·칸톤警察은 얼마전부터 공동의 경찰부대를 갖고 있는 바, 그것이 경찰부대를 위해서도 또한 시민에 대해서도 유익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⁸⁹⁾

85) 「테신」칸톤의 경찰의 조직 및 임무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테신」칸톤경찰의 홈페이지(<http://www.ti.ch/DI/POL>)를 참조할 것.

86) 우리(Uri), 슈비츠(Schwyz), 옵발덴(Obwalden) 및 니드발덴(Nidwalden) 칸톤 등이 그러하다.

87) 통상적으로 주차차량의 단속이나 法定閉店時間의 圖東과 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임무만이 게마인데警察에게 부여된다.

88) 「베른」칸톤이 대표적이며, 그 결과 「베른」의 도시경찰은 모든 직무영역을 담당하는 완전한 경찰조직을 갖고 있다.

3. 「취리히」 都市警察

게마인데警察部隊나 都市警察部隊의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약 1650명의 경찰공무원과 약 250명의 민간인직원을 갖고 있는 「취리히」도시경찰이 가장 크다.

「취리히」도시경찰은 크게 行政警察(Verwaltungspolizei), 保安警察(Sicherheitspolizei) 및 司法警察(Kriminalpolizei)로 나누어져 있으며, 交通局(Abteilung für Verkehr)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⁹⁰⁾

제4절 聯邦의 警察

1. 概 說

전술한 바와 같이 스위스의 연방정부는 7개의 部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중에서 연방의 경찰업무는 주로 聯邦法務警察部(Das Eidgenössische Justizund Polizeidepartement)가 관장한다. 한편 연방법무경찰부 산하에는 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8개의 廳이 있다.⁹¹⁾

- 聯邦法務廳(Bundesamt für Justiz)
- 聯邦警察廳(Bundesamt für Polizeiwesen)
- 聯邦外事廳(Bundesamt für Ausländerfragen)
- 聯邦檢察廳(Bundesanwaltschaft)
- 聯邦私保險廳(Bundesamt für Privatversicherungswesen)
- 聯邦空間企劃廳(Bundesamt für Raumplanung)
- 聯邦測量廳(Eidg. Amt für Messwesen)

89) 이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vgl. Roth, a.a.O., 163.

90) 「취리히」도시경찰의 조직 및 구체적 업무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vgl. 「취리히」도시경찰의 홈페이지(<http://www.stadt-zuerich.ch/kap05/stadtpolizei>).

91) 연방법무경찰청 산하의 이들 관청의 조직, 담당업무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http://www.ejpd.admin.ch/Deutsch/Portrait/Aemter/aemter.htm>을 참조.

- 聯邦難民廳(Bundesamt für Flüchtlinge)

이들 8개의廳중에서 경찰업무와 관련된 것으로는 聯邦警察廳, 聯邦檢察廳 및 聯邦外事廳을 들 수 있다. 한편 이 밖에도 연방의 경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는 聯邦財務部(Das Eidgenössische Finanzdepartement) 소속하의 國境守備隊(Grenzwachtkorps)와 軍事警察(Militärische Polizei)이 있는 바, 이하에서 이들 연방의 경찰기관의 조직·기능 등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2. 1999년 9월 1일의 警察關聯組織改編⁹²⁾

1999년 9월 1일을 기하여 스위스의 경찰조직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 바, 이하에서 그러한 변화의 과정·내용 및 향후 기대효과 등에 관하여 약술하기로 한다.⁹³⁾

(1) 1999년 5월 31일의 결정이 있기까지의 과정

- ① 이미 1989년에 聯邦法務警察部 國會調查委員會(Parlamentarische Untersuchungskommission, PUK)는 연방내각에 豫防的 警察을, 경우에 따라서는 司法警察도 공적인 공소제기권자인 연방검찰로부터 분리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② 전술한 요구에 응하여 연방내각은 1993년 8월 18일에 의회에 국가검찰의 기능을

92) 이하의 내용은 스위스 聯邦法務警察部和 聯邦警察廳의 보도자료가 실린 각종 웹사이트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대표적인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http://www.ejpd.admin.ch/Deutsch/Themen/them.htm>
- ② <http://www.ejpd.admin.ch/Docks/PM/990818-d.htm>,
- ③ <http://www.ejpd.admin.ch/Docks/PM/990601-d.htm>,
- ④ <http://www.admin.ch/bap/medien/aktuell/d/08311.htm>
- ⑤ <http://www.admin.ch/bap/medien/aktuell/d/06012.htm>

93) 연구자가 이하의 내용에 관하여 알게 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스위스 연방검찰청의 공보담당관(Mediensprecher)인 Dominique Reymond씨와의 E-mail교환을 통해서이다. 연구자의 질문에 성실하고 신속하게 답변을 해 준 Dominique Reymond씨에게 지면을 통하여서나마 감사를 드린다. 참고로 Dominique Reymond씨의 E-mail 주소는 다음과 같다: dominique.reymond@ba.admin.ch.

연방의 행정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 바 「聯邦檢察解體草案」(sog. Entflechtungsvorlage)을 제시하였다.⁹⁴⁾

- ③ 그러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칸톤代表會議의 法司委員會」(Die Kommission für Rechtsfragen des Ständerates)는 포괄적인 경찰조직의 재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초안이 제시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초안을 却下하였다.

(2) 1999년 5월 31일의 聯邦內閣의 決定

정부조직법(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RVOG)의 시행과 더불어 행해진 정부개혁의 큰 테두리 안에서 연방내각은 1999년 5월 31일 경찰의 새로운 조직에 관한 근본적 결정을 내렸는 바, 동 결정에 의하여 1999년 9월 1일부터 종래 聯邦檢察廳에 속해있던 연방경찰국(BUPO)과 연방안전국(SID)이 연방검찰청으로부터 분리되어 연방경찰청(BAP)에 통합되었다.⁹⁵⁾ 모든 경찰력을 하나의 연방관청(연방경찰청)에 통합하려는 이러한 결정은 연방차원에서의 유일한 대화파트너를 요구하는 칸톤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연방행정관청이 간결하고 투명하게 조직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聯邦議會의 요청에도 부응하는 것이다.⁹⁶⁾

동 결정에 의하여 연방차원에 있어서의 ‘警察의 二元化’(Polizei-Dualismus)가 사라지고 앞으로는 하나의 기관(즉, 연방경찰청)이 그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정보의 수집·분석/평가·처리에 있어서의 시너지효과, 업무의 통합, 정보처리의 협조와 투입물자의 절약 등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의 연방내각의 결정에 의하여 聯邦檢察의 司法警察로부터의 분리가 행해진

94) 同 草案은 그밖에도 연방검사를 연방의회에서 선출할 것, 효율성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95) 다만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 1999년 9월 1일부터 종전의 연방경찰국 등의 업무의 연방경찰청에의 이전으로 새로이 연방경찰청이 수행하게 될 직무와 그와 관련된 업무의 집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연방경찰청의 조직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96) 실례로 연방의회는 「治安維持를위한措置에 관한法律」(Bundesgesetz über Maßnahmen zur Wahrung der Inneren Sicherheit, BWIS)에 관한 소견에서 조직적인 범죄에의 대응이 두 개의 연방관청에 나누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따라서 연방검찰의 지휘하에 있는 사법경찰의 수사절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연방검찰청이 정보제공의 권한을 가진다.⁹⁷⁾

3. 聯邦檢察廳(Bundesanwaltshaft, BA)⁹⁸⁾

연방검찰청은 스위스연방형법 제340조에 따라 연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행위⁹⁹⁾에 있어서 搜查 및 公訴를 담당하는 기관¹⁰⁰⁾이며, 그 자체로서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특히 연방경찰(연방경찰총국), 연방경찰청과 칸톤의 경찰기관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처음부터 혹은 수사절차의 종결이후 그에 대한 판단은 칸톤의 刑事司法機關에 맡겨져 있으며,¹⁰¹⁾ 연방차원에서의 정식형사사법절차는 그 사안이 특별한 사실적, 정치적 중요성

97) 또한 의회가 현재 연방검찰이 조직범죄(예: 대규모의 경제범죄)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때, 아마도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연방검찰이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이러한 사정은 Dominique Reymond가 연구자에게 보내온 E-mail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98) 이하의 내용은 聯邦法務警察部の 홈페이지(<http://www.ejpd.admin.ch>) 중에서 연방검찰청 부분(<http://www.ejpd.admin.ch/Deutsch/Portrait/Aemter/ba.htm>)을 요약한 것이다.

99) 스위스 연방형법 제34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범죄가 연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즉,

- ① 국제법상으로 보호받는 자의 생명, 신체 및 자유에 대한 범죄
- ② 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문서 등에 대한 절도, 횡령, 장물취득 등
- ③ 연방 혹은 외국을 협박하기 위한 人質犯罪
- ④ 폭발물 및 유독가스의 제조, 은닉, 授受 등
- ⑤ 서류나 증명서의 위조, 위조문서의 취득, 경계표시무효, 수위표시 등의 제거
- ⑥ 국가·정보에 대한 범죄, 합헌적 질서에 대한 위해, 군사적 안녕에 대한 장애의 豫備
- ⑦ 외국과의 관계를 해하는 범죄
- ⑧ 연방공무원에 의한 직무상의 범죄
- ⑨ 군사적 비밀의 침해, 군용품의 거래, 권한없이 군제복의 착용
- ⑩ 무장을 갖춘 병력의 투입을 가져오는 騷擾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

100) 스위스 연방형사소송법 제17조가 「사법경찰은 연방검사의 지휘와 연방법무경찰부의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방검찰청은 수사에 있어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제4장 스위스의 搜查構造 참조.

101) 단지 연방검찰청은 칸톤의 형사결정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있는 경우에만 행해진다.

전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방경찰청에 法務局(Rechtsdienst)이 설치되어 있는 바, 법무국은 그러한 업무 이외에도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즉,

- (1) (그 행위가 스위스에서 행하여진 경우) 연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국제적 사범공조에 대한 외국의 요청의 이행
- (2) 형벌규정을 갖고 있는 연방의 모든 法律案 및 命令案에 대한 견해표명
- (3)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연방공무원에 대한 소송의 수행
- (4) 연방법무경찰부 혹은 연방내각의 정치적 범죄에 대한 刑事訴追의 여부에 대한 결정의 준비
- (5) 聯邦刑事法院의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연방에 유보된 결정의 준비
- (6) 연방의회에 대한 연방내각의 赦免報告書의 준비

4. 聯邦警察廳(Bundesamt für Polizeiwesen, BAP)

(1) 概 觀¹⁰²⁾

聯邦警察廳은 범죄진압에 있어서 연방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스위스 경찰을 지원한다. 또한 연방경찰청은 각 칸톤에 현대적 장비를 제공하며, 조직범죄에 대한 대처를 행함에 있어서는 분석·조정 중심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나아가서 연방경찰청은 테러와 폭력적인 급진주의에 대한 대처 그리고 防諜에 대해서도 권한을 가진다. 또한 司法共助와 범죄인인도에 있어서 국내외의 형사소추기관과 협력하며, 신원증명서 및 여권발급에도 책임을 지며, 도박과 관련된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연방경찰청은 약 46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경찰청은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¹⁰³⁾

102) 이하의 내용은 스위스 연방경찰청의 홈페이지(<http://www.admin.ch/bap>) 중에서 <http://www.admin.ch/bap/d/portrait/kurz.htm>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103) 이하의 내용은 스위스 연방경찰청의 홈페이지 중 <http://www.admin.ch/bap/d/portrait/>

- 聯邦警察廳 警務局(Direktion BAP)
- 法務, 特別總局(Hauptabteilung Recht und Besondere Dienste)
- 特別局(Abteilung Besonder Dienste)
- 法務局(Abteilung Recht)
- 國際局(Abteilung Internatioales)
- 中央司法警察局(Abteilung Kriminalpolizeiliche Zentralstellen)
- 支援局(Abteilung Support)
- 聯邦安全局(Abteilung Sicherheitsdienst des Bundesverwaltung)
- 聯邦警察總局(Hauptabteilung Bundespolizei)

(2) 聯邦警察廳 警務局/法務, 特別總局

(3) 特別局

특별국에는 다음과 같은 3個課가 있다.

- ① 鑑識課(Sektion Erkennungsdienst): 감식과는 (행정상 연방경찰법무부의 電算센터에 속하는) 自動指紋檢索시스템(Automatisiertes Fingerabdruck Identifikationssystem, AFIS)-Services과 함께 鑑識에 필요한 자료(지문, 사진, 인상착의 등)를 기록하고, 그를 판단하여 국내외의 경찰기관에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신원미상의 사람, 시체와 범인들의 신원을 밝힐 수 있게 된다.
- ② 前科者名簿管理課(Sektion Strafregister): 전과자명부관리과에서는 스위스 法廷에서 자유형선고를 받거나 특정한 경우에(重罪나 輕罪)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관한 모든 판결을 기록한다. 이 전과자명부의 副本은 법원이나 다른 행정청에게 교부되기도 하며, 특히 -단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인 한- 本人에게 교부되기도 한다.
- ③ 手配/Ripol課(Sektion Fahndungen/Ripol): 수배/Ripol과는 지명수배, 차량수배,

未濟事件, 물건수배 등을 위한 데이터뱅크를 포괄하는 자동수배 시스템인 Ripol의 운영과 구축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시스템은 신속하고, 간결하며 스위스에 통일적인 수배를 보장한다.

특별국은 나아가서 경찰과 관련하여 중부유럽국가와 동부유럽국가들과의 共助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특별국이 칸톤들과 함께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조직범죄에의 대처에 대한 교육과 효율적 경찰조직구축에 대한 자문의 형식으로 “Know-how의 移轉”에 기여한다. 더욱이 특별국은 중앙유럽경찰아카데미(Mitteuropäische Polizeiakademie, MEPA)에 대한 스위스의 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4) 法務局

법무국에는 다음과 같은 3個課가 있다.

- ① 法制/情報保護課(Sektion Rechtssetzung/Datenschutz): 법제/정보보호과는 법제의 정비를 담당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
- ② 證明/賭博課(Sektion Ausweisschrift/Glücksspiele): 증명/도박과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스위스여권과 신분증명서의 교부
 - 나) 휴양지에서의 카지노영업에 대한 감독
 - 다) 슬롯머신 심사
 - 라) 福券制度에 대한 감독¹⁰⁴⁾
- ③ 在外國民保護課(Sektion Auslandschweizer-Fürsorge): 재외국민보호과는 외국에 있는 빈곤한 국민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스위스국민을 도와준다. 이를 위하여 재외국민보호과는 외국에서의 지원신청을 받고 전달하며, 프랑스나 독일과 보호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104) 이들 업무 이외에 증명/도박과는 스위스국적을 가진 자로서 실종된 자를 전 세계에서 찾거나, 가족 혹은 행정청의 위임하에 국내외에서 사람을 찾는 업무도 담당한다.

(5) 國際局

국제국에는 다음과 같은 3個課가 있다.

- ① 犯罪人引渡課(Sektion Auslieferung): 범죄인인도과는 국내외의 수배요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고, 범죄인인도를 위한 구속영장(Haftbefehle)을 발한다. 또한 범죄인인도과는 외국의 범죄인인도요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며, 스위스 형사소추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외국에 범죄인인도를 요구 한다. 더욱이 범죄인인도과는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자를 그의 본국으로 송환할 것인지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를 다룬다.
- ② 國際司法共助課(Sektion Internationale Rechtshilfe): 국제사법공조과는 외국의 혹은 스위스내의 사법공조의뢰가 법률의 요구에 합치하는지 여부와 사법공조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심사한다.¹⁰⁵⁾ 그러한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국제사법공조과는 권한있는 칸톤 및 연방의 행정청 혹은 외국의 행정청에게 집행해 줄 것을 전달한다. 한편 복잡하고 중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제사법공조과 스스로 사법공조를 행하기도 한다.
- ③ 國際協約課(Sektion Internationale Verträge): 국제협약과는 超國境的 범죄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의 국제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스위스의 협력망을 구축한다. 국제협약과는 범죄인인도, 사법공조와 국가간의 경찰협력에 관한 국가간 협약을 행한다.

(6) 中央司法警察局(Abteilung Kriminalpolizeiliche Zentralstellen)

중앙사법경찰국에는 다음과 같은 3個課가 있다.

- ① 作戰課(Sektion Operation): 작전과는 마약류의 거래 및 그를 위한 자금 조달과 위조화폐에 대한 수사를 행한다. 작전과는 여러 칸톤간의, 혹은 스위스와 외국간의 수사절차에 협력한다. 특히 외국과의 수사협력을 위하여 외국에 자신의 경찰연락관을 두고 있으며, 스위스주재 외국경찰연락관에 대한 배려도 행한다.

105)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법공조를 전담하는 특별기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 ② 犯罪分析課(Sektion Kriminalanalyse): 범죄분석과는 중앙사법경찰국의 정보Pool의 역할을 하는 바, 범죄분석과는 다음과 같은 2個班으로 편성 되어 있다.
- 가) 一般分析班(Gruppe Allgemeine Analyse): 범죄조직(그의 구성원, 행동양식)을 알아내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평가하고, 보고서를 刑事訴追機關에게 제공 하는 역할을 한다.
- 나) 作戰分析班(Gruppe Operative Analyse): 체계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수사절차에 투입되는 팀이다.
- 다) 돈洗濯申告센터(Meldestelle Geldwascherei): 범죄분석과는 돈세탁 신고센터가 부설되어 있는 바, 돈세탁신고센터는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 - 돈세탁의 충분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 칸톤의 형사소추기관에 그 정보를 제공한다.
- ③ 中央事務課(Sektion Zentrale Dienste): 스위스 인터폴 中央事務局¹⁰⁶⁾의 일반적 업무의 해결을 위한 행정 및 지원을 행한다.

(7) 支援局(Abteilung Support)

지원국은 人事, 재무, 정보, 보급과 문서보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한편 전 연방경찰청을 위한 연락기구로서 지원국에 中央申告通報센터(Melde-und Übermittlungszentrale, MUZ)가 설치되어 있는 바, 동 센터는 외국의 인터폴 사무국 및 스위스의 칸톤경찰 및 도시경찰을 위한 24시간 비상연락을 담당한다.

(8) 聯邦警察總局(Hauptabteilung Bundespolizei)¹⁰⁷⁾

106) 인터폴에 가입한 국가는 당해국의 경찰을 대표하여 인터폴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事務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64년에 인터폴가입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Korean National Central Bureau, KNCB)을 설치하였는 바, KNCB는 현재 경찰청에 위치하고 있다(경찰청, 경찰백서, 1997, 338면).

107) 연방경찰총국에 대하여는 별도의 題下에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9) 聯邦安全局

연방안전국은 국제범상으로 보호받는 외국인사(국가원수, 수상 등)의 스위스체재중 그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준비·명령 및 감독을 행한다. 또한 연방안전국은 연방의회와 연방내각 및 스위스 주재외교관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도 책임이 있다. 나아가서 연방안전국은 국내의 연방건축물과 해외출장소를 위하여 포괄적인 건축/기술적, 조직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실현한다.

또한 연방안전국은 베른에 있는 일반 聯邦機關의 廳舍에 대한 경비 및 감시활동도 행한다. 그 직무에는 개개 건물에 대한 출입통제, 야간에의 감시 및 연방의회의 회기 중 의사당감시가 포함된다.

5. 聯邦警察總局(Hauptabteilung Bundespolizei, BUPO)¹⁰⁸⁾

연방경찰총국(이하 연방경찰이라고 한다)은 ① 연방검사의 지휘하에 연방사법절차에서 司法警察로서의 직무와 ② 豫防警察的 活動하는 國家守護官廳(Staatschutzbehörde)으로서의 직무를 가지는 것 이외에 ③ 保安警察的 조치를 위한 調整的(koordinierende) 활동을 행한다(이들 직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후술참조). 한편 스위스의 연방제적 국가구조로 인해 연방경찰은 그의 활동에 있어서 칸톤의 경찰부대와 취리히와 베른시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보호를 위한 특별관청을 설치하고 있다.¹⁰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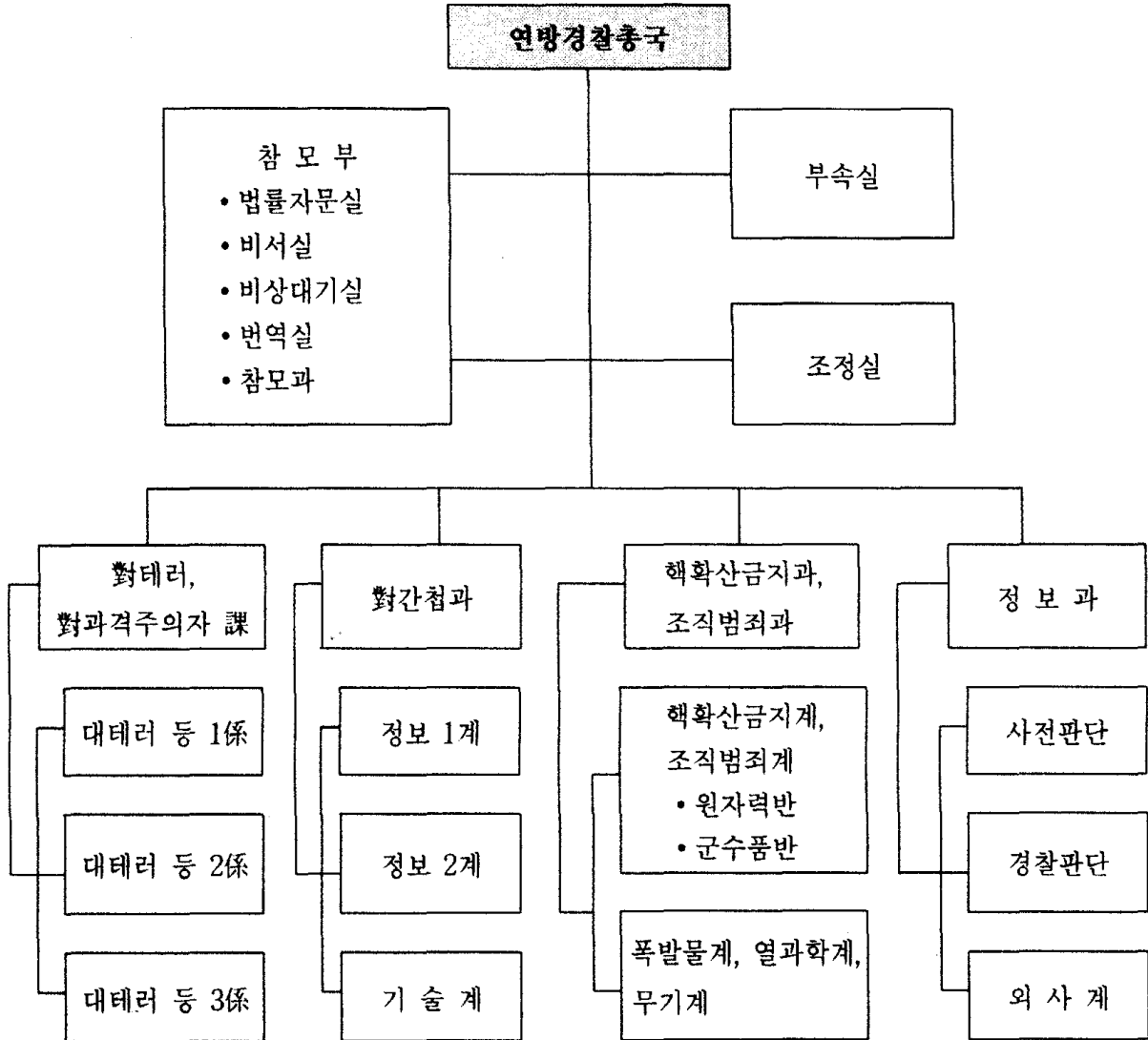
연방경찰은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은 조직을 갖고 있다.

108) 이하의 내용은 스위스 연방경찰총국의 홈페이지(<http://www.bupo.admin.ch>)를 요약한 것이다.

109) 이들 특별관청은 예방경찰적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은 연방으로부터 받는 반면, 사법경찰의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음이 없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표 4>

聯邦警察總局의 組織



(1) 司法警察로서의 職務

연방경찰은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범죄행위(110)를 연방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연방의 사법경찰에 의한 수사절차는 범죄에 대한 충분한 혐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연방검사에 의해 개시된다.

110) 註 99) 참조.

(2) 豫防警察로서의 職務

연방경찰은 연방의 國家守護官廳(Staatsschutzbehörde)이다. 여기서 국가수호는 - 군대, 외교정책 혹은 民防衛(Zivilschutz)와 마찬가지로 - 스위스 공동체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의 하나이다. 한편 국가수호와 관련하여 '예방'이란 스위스의 내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¹¹¹⁾

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연방경찰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행한다.

- ① 테러防止: 본래적 모습으로서의 테러는 스위스에서 찾아보기 힘들지만 스위스(영토)가 국제적 테러의 환경을 제공할 수는 있다.¹¹²⁾ 한편 스위스 刑法典에는 테러 그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테러적인 폭력행위에 대한 刑事訴追는 살인·상해·유괴·인질·損壞 및 범적단체조직죄 등의 구성요건에 근거하여 행해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의 형사소추는 일반적으로 칸톤의 권한이며, 연방 경찰은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개입할 수 있다.¹¹³⁾

111) 이러한 조치를 위하여 스위스의 안전을 위협할 염려가 있는 테러리스트, 極端主義者나 정보 수집조직에 대한 관찰이 요구되며, 이들은 연방내각에 의해 매년 승인을 받는 이른바 監視리스트(Beobachtungsliste)에 등재된다. 연방경찰은 이들 조직에 대하여 '모든' 중요한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바, 이 점에서 그 밖의 조직에 대하여는 단지 국가보호에 관련된 사건과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만을 수집·처리하는 것과 구별된다.

112) 즉, 스위스가 ① 武器·器機의 조달공간으로서, ② 테러企圖의 前哨로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범죄(증명서의 위조 등)의 행위지로서, ③ 테러리스트와 과격분자들의 체재공간으로서 혹은 ④ 테러리스트들의 경유지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예: 알제리의 테러集團이 탄약, 무기 등이 엔진에 숨겨진 중고차의 수출을 통하여 무기를 조달한 경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테러防止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적 협력이 무엇보다도 요청된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위하여 유럽의 경우는 1977년 1월 27일에 「테러防止를위한유럽協約」이 체결되었고, 스위스는 이에 1983년에 가입하였다.

113)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연방경찰이 관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형법 제224조-226조의 폭발물범죄
- ② 군수품법위반행위
- ③ 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해지는 범죄
- ④ 연방권력 혹은 연방각료나 연방수상의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범죄
- ⑤ 연방의 행정청이나 외국의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것을 요구하기 위한 인질범죄
- ⑥ 국제법적으로 보호받는 자 및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의 구역, 문서, 기록에 대한 범죄

한편, 테러의 豫防은 다음과 같은 보안경찰적 조치에 의해 행해진다.

가) 국가내 혹은 국가간의 정보교환

나) 物理的 保護措置(예: 항공교통과 승객의 보호를 위하여 경찰이나 국경수비대원의 투입)

다) 적당한 수배조치 및 심사절차

② 暴力的인 極端主義에의 대처

가) 類型: 폭력적인 극단주의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즉,

- ① 極右主義(Rechtsexremismus): 스위스의 경우 극우진영은 여러 가지 경향으로 분열되어 있다. 즉, i) 파시스트와 나치스트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로 高齡層인 舊파시스트 혹은 舊나치스트들, ii) 1930년대의 스위스 革命戰線과 관련있는 民族革命戰線 (Nationalrevolutionäre und die Fronten) 및 iii) 1970년대 장발족에 대하여 삭발한 전투적인 보수파 청년들이 주축인 Skinheads¹¹⁴⁾로 나누어진다.

몇몇 극우그룹들에게 있어서는 폭력의 사용은 정치적 투쟁의 주요한 요소이며, 스위스의 경우 오늘날 전투적 활동은 거의 전적으로 Skinheads 및 新나치主義者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 ② 極左主義(Linksexrtremismus): 대도시(특히 취리히)에는 넓은 의미의 좌익 성향을 띤 폭력적 집단이 존재한다. 그들은 주로 無政府主義的 시위의 형태를 띠고, “Antifa”(반파시스트적 전쟁)라는 구호하에 “資本에 의한 帝國主義와 後見에 대한 투쟁”을 행한다. 국가와 그 제도, 경제 또한 “파시스트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투쟁의 대상이 된다.

- ③ 外國人의 極端主義(Ausländerextemismus): 외국에서의 이주민집단들, 특히 터어키, 쿠르드와 타밀족들은 잠재적 폭도들로 점차 배려를 요하게 만든다.

⑦ 그것이 연방 혹은 그의 행정청에 항하여지는 한, 형법 제260조(범죄단체조직죄)의 예비행위
114) 1995년 11월 4일 Hochdorf/LU에서 좌파집단의 뮤직페스티벌에 야구배트, 체인, 각목으로 무장한 Skinheads들이 난입하여, 악기와 가구를 부수고 콘서트 참가자들을 구타한 경우가 있다. 한편 Skinheads의 의미의 변질과 Skinheads의 세부적 유형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vgl. Rupprecht(hrsg.), a.a.O., S. 481.

나) 暴力的인 極端主義에 대한 대처: 개인 혹은 집단의 폭력적이고 극히 정치적인 행동을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서 국가수호관청인 연방경찰은 다음과 같은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기본정보의 수집과 그를 통한 인식¹¹⁵⁾
- ㉡ 정보의 작성
- ㉢ 위험이 발생할 혐의가 높은 경우에는 監視리스트 설정¹¹⁶⁾
- ㉣ 연방기구(Bundesstelle)와 칸톤에 치안상황의 변화에 대한 정기적 보고 및 정보의 제공

③ 스파이활동(Spionage)의 防止

가) 스파이활동의 방법: 외국의 정보수집기관들은 근본적으로 合法 또는 不法의 情報(要員)網에 기초하고 있다. 그들은 대사관이나 국제기구 혹은 偽裝會社의 직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安居나 각종 정보전달제도와 같은 지원을 받고, 종종 라디오방송을 통해 조종된다.

나) 스파이활동의 변화: 1990년 이전까지는 스위스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은 이전의 東유럽국가들에 의하여 행해졌으며, 주로 亡命·軍事 등과 관련된 정보가 그 대상이었다. 그러나 동유럽의 정치상황의 변화는 정보수집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 왔다. 즉 주로 경제·학문·기술에 관한 지식의 획득을 목적으로 모든 국가에 의해 스파이활동이 행해 지고 있는 것이다.

다) 스파이활동의 防止措置: 스파이활동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대사관직원이나 국제기구의 구성원의 합법적인 체재에 대한 통제
- ㉡ 불법적 체재를 확인하기 위한 手配프로그램과 事前審査의 실시와 司法警察에 의한 수사절차의 실시
- ㉢ 정보기관과 특정인과의 접촉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즉시

115) 물론 이러한 인식은 수사절차나 수배과정에서 얻어질 수도 있다.

116) 이 경우 監視리스트는 연방내각에 제출되어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를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防止機關의 지휘와 통제아래 접촉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른바 反對工作의 실시)¹¹⁷⁾

④ 예방과 수사를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

- ④ 武器·放射能物質 등의 거래 및 기술이전의 금지: (핵)무기와 이른 바 ABC-Technologie¹¹⁸⁾의 不法的 去來는 주로 개발도상국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찰적 문제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機關 내지 외국과의 협력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聯邦警察은 이러한 영역에서의 수사에 있어서 다른 연방기관, 즉 에너지경제청, 관세청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배후 조정자나 조직에 대한 국제적 정보교환을 위하여 외국의 관계당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회사들에 대한 각종의 조치 및 법정비를 통하여 어느 정도 沮止效果를 보았으며,¹¹⁹⁾ 특히 방사능물질의 불법적 거래는 근래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⑤ 기타 연방경찰의 활동영역

- 가) 組織犯罪: 조직범죄에의 대처는 연방경찰의 본래적 임무는 아니다. 즉, 조직범죄에 대한 刑事訴追는 원래 칸톤의 임무이며, 연방경찰총국의 組織犯罪課(Zentralstelle organisierte Kriminalität)가 전 스위스의 조정업무를 행한다. 특히 「治安維持를 위한措置에 관한法律」(BWIS)은 연방경찰이 조직범

117)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외국정보기관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118) 이른 바 'ABC-Technologie'란 「原子(atomar), 生物(biologisch), 化學的(chemisch) 技術」, 즉 化生放과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한편 ABC의 문제는 전세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것인데, 독일의 경우 ABC로 인한 사고의 경우 관계전문가가 출동하기 전까지 경찰이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이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vgl. Rupprecht(Hrsg.), a.a.O., S.2).

119) 석유화학산업프로젝트라는 명칭하에 스위스의 Von Roll주식회사가 이라크의 “슈퍼대포”(프로젝트명: Babylon)의 後暴風을 완화하는 기구(Rückstossdämpfung)로서 기능하는 油壓式 실린더개발을 마친 후, 제조 및 수출허가도 받지 않고 수출한 사건에서, 聯邦檢察官이 von Roll주식회사 책임자에 대하여 軍需品法(Kriegsmaterialgesetz, KMZ)위반혐의로 공소를 제기하고 그에 기초하여 聯邦法院은 von Roll주식회사의 前회장과 2명의 프로젝트책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이는 스위스의 무기거래 등에 대한 대처방식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죄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줌으로써 권한있는 경찰행정청과 형사소추기관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럽국가들은 조직범죄에의 대처에 있어 共助를 하고 있으며, 스위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방경찰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조직범죄과를 경유하여 권한있는 스위스의 경찰기관에 알려진다. 동시에 외국의 治安機關은 스위스영토 내에서의 그들 국민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나) 軍需品の 거래 등: 軍需品法(Kriegsmaterialgesetz, KMG) 제30조에 따르면, 연방경찰총국의 軍需品班(Zentralstelle Kriegsmaterial)이 군수품과 관련한 불법적 활동의 방지를 담당하는 바,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수출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자료의 眞僞審査
- ㉡ 국제법의 준수하에 규정된, 허가를 받은 목적지에 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 ㉢ 犯法行爲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수사에 대한 명령

다) 폭발물/화약에 대한 규제: 폭발물법(Sprengstoffgesetz, SpstG) 제33조에 따르면 연방경찰총국의 爆發物係가 폭발물범죄의 방지를 담당 하는 바,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연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폭발물범죄(칸톤이 알려진 도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리
- ㉡ 폭발물발견보고, 폭발물에 관한 판례 및 기타 지식의 정리
- ㉢ 폭발물 혹은 발화물질을 이용한 범죄¹²⁰⁾의 체계적 조사
- ㉣ 폭발물법 및 동시행령의 집행에 관한 감독
- ㉤ 구경 11.5mm까지의 수렵용 혹은 스포츠용 탄약·산업용탄약·산탄총, 폭발물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발화물질·탄약의 수입과 제조허가

라) 기타: 그밖에 武器의 매매, 소지, 운반 등에 대하여는 연방경찰총국의 武器係가 관여할 수 있다.

120) 그 범죄가 연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칸톤의 그것에 속하는 지는 불문한다.

(3) 保安警察的 措置의 調整

원칙적으로 칸톤은 그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해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자연재해, 테러企圖 혹은 대규모시위와 같은 특별한 사건은 칸톤의 경찰력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바, 그러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계 칸톤에게는 다른 칸톤의 경찰력 혹은 - 특별한 전제조건하에 -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러한 경우 연방경찰은 칸톤과 함께 필요한 판단근거와 결정근거를 찾아내고, 권한 있는 칸톤과 연방의 행정기관의 활동을 조정한다.

나아가서 연방경찰은 항공안전 및 UN의 평화유지활동에 경찰공무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조정 및 협조를 행한다.

6. 聯邦外事廳(Bundesamt für Ausländerfragen, BFA)

스위스는 정치적·경제적으로 안정된 영세중립국일 뿐 아니라 각종 國際機構의 본부가 스위스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외국인(노동자, 망명객, 국제기구의 직원 등)의 流入이 많다.¹²¹⁾ 따라서 스위스에 있어서 外事業務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방경찰법무부 밑에 독립한 1廳으로 설치되어 있다.

연방외사청은 칸톤, 외국주재 스위스代表部 및 국경수비대와 협력하여 외국인의 入國, 滯留, 就業, 歸化 및 스위스국민의 이민(상담)을 행한다.¹²²⁾

121) 실제로 1997년 12월 31일 현재 스위스에 주소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약 134만명으로, 외국인이 스위스 전체인구의 19%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Switzerland(1998/99), Kümmerly+Frey, Geographical Publishers, 1998, p. 23).

122) 연방외사청의 업무에 관하여는 vgl. 스위스 연방경찰법무부 홈페이지 중 연방외사청에 관한 부분(<http://www.ejpd.admin.ch/Deutsch/Portrait/Aemter/bfa.htm>).

7. 國境守備隊(Grenzwachtkorps, GWK)¹²³⁾

(1) 組 織

國境守備隊는 聯邦關稅廳(Die Eidgenössische Zollverwaltung) 산하에 있으며, 대원들은 제복을 착용하고 무기를 휴대한다. 국경수비대는 4개의 稅關區域(Zollkreis)¹²⁴⁾에 대응하여 각기 국경수비대장의 지휘를 받는 4개의 부대로 나누어져 있다.¹²⁵⁾ 현재 약 1900명의 대원이 1882km의 스위스국경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109개 국경검문소와 32개 이동검문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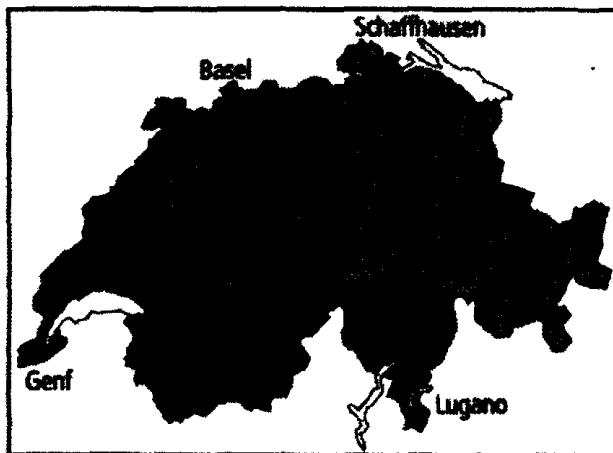
(2) 業 務

국경수비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국경 및 공항에서 關稅法規의 집행, 밀수단속, 관세징수의 확보.

123) 이하의 내용은 스위스의 연방관세청 홈페이지(<http://www.zoll.admin.ch>) 중 國境守備隊 부분(http://www.zoll.admin.ch/d/chzoll/kuerze_gwk/gwk_kurz_d.htm)을 요약한 것이다.

124) 4개의 稅關區域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http://www.zoll.admin.ch/d/chzoll/strukezv.htm> 참조), 바젤(Basel), 샤프하우젠(Schaffhausen), 제네바(Genf) 및 루가노(Lugano)에 본부가 있다.



125) 각 경비대의 사령부는 세관본부에 대응하여 바젤(Basel, 제1국경수비대사령부), 샤프하우젠(Schaffhausen, 제2국경수비대사령부), 제네바(Genf, 제3국경수비대사령부) 및 루가노(Lugano, 제4국경수비대사령부)에 둔다.

- ② 인근경찰서에 道路交通事犯의 통지
- ③ 국경통과의 규제(入國不許 등)¹²⁶⁾
- ④ 사람·차량·물건에 대한 수색과 범죄행위예의 대처

이상에서 보듯 국경수비대의 업무는 실로 다양하여 국경수비대는 關稅警察的 業務 이외에도 保安-, 外事-, 經濟-, 交通警察業務 나아가 軍事的 업무까지 담당한다. 이처럼 다양한 업무영역 때문에 국경수비대원에게는 특히 마약류의 밀수 및 증명서위조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이 요구된다.

<표 5> 1996년에서 1998년까지의 업무수행현황

업무의 종류	1998년	1997년	1996년
(入國要件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자	102196	102409	96884
경찰에 인계한 사건	29641	23148	20955
불법으로 입국한 망명신청자/근로자	12714	5005	3558
각종 증명서위조 발견	1486	1322	1469
마약밀수 적발	1779	1670	1407
도로교통법위반사범 적발	33765	40824	37122
특별비자의 발급	15344	15064	14626

8. 軍事警察(Militärische Polizei)¹²⁷⁾

여러가지 경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대에는 憲兵隊(Heerespolizei)¹²⁸⁾, 도로경찰

126) 이 같은 국경통과규정의 집행은 국경수비대가 독립하여 행하기도 하고, 경찰과 함께 행하기도 한다.

127) 이하의 내용에 관하여는 vgl. Roth, a.a.O., 166; 이덕선·박한철, 전제논문, 208면 이하.

128) 앞으로는 Militärpolizei라는 용어가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대, 保安隊(Sicherheitsdienst der Armee), 軍交通警察隊(Die militärische Polizeieinheiten, MVK)와 같은 다양한 군사경찰부대가 존재한다. 이들 군사경찰부대는 군사령부 등에 소속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경찰부대와 협력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1) 軍交通警察隊

군교통경찰대는 교육사령부(Instruktionkorps der Armee)의 구성부분을 이루며, 따라서 독립한 편제를 갖추고 있다. 군교통경찰대는 부대에서의 교통교육과 軍用道路에 대한 감시를 행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군부대내에서의 경찰적 활동을 행한다.

(2) 기 타

軍交通警察隊 이외의 다른 군사경찰부대들은 前現職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스위스에 직업군인이 없이 모든 스위스국민에게 일반적 병역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통상 매년 소집된다.

제4장 스위스의 搜查構造¹²⁹⁾

제1절 概說 - 스위스의 刑事節次概觀

전술한 것과 같이 스위스는 거의 독립한 主權을 갖고 있는 26개 칸톤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결과 搜查構造 및 그를 포함하는 刑事節次에 있어서도 각 칸톤간에 세부적인 면에서는 커다란 相異性이 존재한다.¹³⁰⁾ 다만 刑事節次가 事前節次(Vorverfahren) → 中間節次(Zwischenverfahren) → 公判節次(Hauptverfahren)의 순으로 진행되며, 事前節次가 搜查節次(Ermittlungsverfahren)와 豫審(Untersuchung)으로 이루어져 있음은 모든 칸톤이 거의 공통적이다. 이하에서 이들 내용을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개괄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겠다.¹³¹⁾

제2절 搜查節次(Das Ermittlungsverfahren)

1. 概念과 本質

搜查(Ermittlung)란 범죄의 유무와 범인의 체포 및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는데,¹³²⁾ 刑事節次는 搜查에 의하여 개시된다. 따라서 수사는 형사절차의 제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바, 수사절차는 특정인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시행할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한다.¹³³⁾ 이 같은 형사절차의 초기단

129) 스위스의 搜查構造에 관한 이하의 논의는 전적으로 Hauser/Schweri, Schweizerisches Strafprozessrecht, 4. Aufl., 1999; Aeschlimann, Strafprozessrecht, 1997을 참조로 한 것임을 밝혀 둔다.

130) 이는 각 칸톤마다 독자적인 형사소송법을 갖고 있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131) 다만 이 중에서 公判節次는 경찰의 손을 완전히 떠난 司法節次로서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132) 신동운, 전게서, 24면; 이재상, 전게서, 169면 등.

133) 이와 관련하여 베른(Bern)의 형사소송법 제200조가 “범죄행위를 밝히고, 事案을 확인하며, 범죄의 흔적과 증거를 발견·보전·판단하고, 범죄행위자에 대한 수배 및 필요한 경우에는

계에서는 신속하게 활동하여야 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절차는 간단하며, 단지 형식상의 제약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후술하는 豫審의 경우와 달리 절차규정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서, (被疑者에 대한 訊問에) 辯護人の 참여가 보장되지 않거나¹³⁴⁾ 情報提供人(Auskunfts-person)¹³⁵⁾에 대한 질문절차에 피의자의 참석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司法定型性(Justizförmigkeit)¹³⁶⁾의 요구는 사법경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¹³⁷⁾ 따라서 수사절차에서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진술확보는 금지된다. 특히 欺罔¹³⁸⁾에 의한 진술청취, 強制(예: 가혹행위), 拷問 및 그 밖의 허용되지 않는 각종 수단¹³⁹⁾들을 사용하는 것은 適法節次의 요구와 實體的 眞實의 發見이라는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체포하는 것"을 경찰수사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참고할 만 하다.

- 134) BGE 94, 1968, I 625 ff. 다만 솔로투른(Solothurn) 칸톤의 경우에는 경찰의 被疑者訊問節次에 변호인이 관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조 2항 참조). 한편 취리히(Zürich)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행해졌었는 바, 1991.12.8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고 한다(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Hauser, ZStrR 111, 1993, S.274).
- 135) Auskunftsperson란 被疑者와 證人의 중간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자, 즉 여러가지 이유에서 그를 증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피의자로 다룰 수도 없는 자를 말한다. 容疑者(Tatverdächtige), 어린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近親 등 일정한 편견을 가진 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Hauser/Schweri, a.a.O., S.262 ff.). Auskunftsperson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vgl. J. Bangert, Auskunftsperson und Wahrheitserforschung im schweizerischen Strafprozessrecht, 1997, S.65 ff.; N. Schmid, Zur Auskunftsperson insbesondere nach zürcherischem Prozessrecht, ZStrR 112, 1994, S.87 ff.
- 136) 司法定型性의 원칙은 19세기의 소송법학자인 Zachariae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vgl. Zachariae, Handbuch des deutschen Strafprozess, 1860, S.144 ff.) 이는 搜查나 審判이 시민의 부담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절차나 형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배종대/이상돈, 전거서, 14면), 행정청의 恣意에 의한 권리남용과 방어권의 침해를 저지하는 기능을 갖는다(BGE 101, 1975, I a 169; 116, 1990, I a 87).
- 137)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210조 2항 참조.
- 138) 예컨대 공범이 자백했다고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139) 구속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자백하는 경우에는 즉시 풀어주겠다고 회유하거나, 과도하게 오랫동안 지치게 하여 신문하는 것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2. 搜查機關

(1) 수사기관의 의의

搜查機關이란 법률상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기관을 말하는 바, 스위스의 경우 그 조직과 임무에 있어 매우 상이한 여러 기관이 수사기관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모두 어느 정도는 범죄에 대한 전쟁의 전단(Frontruppen)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그들 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개입하여 事案을 명백히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절차를 개시하고, 범죄혐의가 뚜렷하게 되면 범법자를 법원의 판결에 붙여야 한다.

(2) 수사기관의 종류

- ① 警察: 칸톤과 게마인데의 경찰은 -법률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司法警察로서 활동할 때에, 그 한도에서 搜查機關의 지위를 갖는다.¹⁴⁰⁾
- ② 警察業務를 수행하는 特別機關: 특별법률이 특정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경찰 업무를 狹義의 警察에 속하지 않는 제3자에게 위임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바, 그 한도에서 그들 제3자에게 수사기관의 지위가 인정 되기도 한다. 즉, 「야생동물 및 조류보호법」 제54조는 수렵장관리인과 수렵감독관을 狩獵管理機關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司法警察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업법 제29조는 漁業監督官을 어업법 위반행위를 수사함에 있어 사법경찰기관이라고 간주하고 있다.¹⁴¹⁾
- ③ 豫審機關(제4절 참조)
- ④ 檢事

140) 따라서 경찰기관이 保安警察의 업무와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14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삼림, 海事, 세무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기관이 아닌 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담당케 할 수 있는 바(형사소송법 제197조 참조), 이들을 '特別司法警察官吏'라고 한다. 그 유형에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행할者와그職務範圍에관한法律」 제5조 및 6조 참조.

(3) 檢事와 警察(司法警察官吏)과의 關係

階層的으로 또 그의 職務權限의 측면에서 볼 때, 檢事が 수사기관 중 최상급의 지위에 있다. 즉, 스위스의 경우에도 수사에 있어 司法警察은 檢事の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연방형사소송법 제15조·제17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절차에 있어서는 司法警察에게 중요한 의미 내지 역할이 부여되는 바,¹⁴²⁾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司法警察이 수사의 最一線에서(an der Front) 활동하며, 범죄발생시에 범죄현장에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형사절차의 처음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예심기관과 검사는 그 이후에야 비로소 그 사건을 다루게 되기 때문이다.¹⁴³⁾

사법경찰이 갖고 있는 機動性이나 技術的 手段(각종 기록이나 鑑識裝置) 또한 사법경찰에게 중대한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의 하나로 들어진다.

3. 搜查의 開始

수사기관, 주로 警察과 豫審機關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한편 범죄혐의를 두게 된 원인을 수사의 端緒라고 하는 바,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現行犯·告訴·告發·自首·變死者의 檢屍을 수사의 단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의 단서는 이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不審檢問(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참조)처럼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수사기관 자신의 認知(Wahrnehmung)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다만 스위스의 형사소송법 교재들은 이 중에서 告訴(Strafantrag)와 告發(Strafanzeige)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¹⁴⁴⁾ 여기서도 그에 따르기로 한다.

142) 스위스의 법률들이 수사기관을 규정함에 있어 경찰을 제1순위로 규정하고 있음은(베른 형사소송법 제26조 참조) 그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143) 실무상으로도 통상 범죄현장에는 경찰이 먼저 출동하는 것이 통례이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나 방화, 사고 등의 경우에만 豫審機關이 경찰과 동시에 현장에 출동한다고 한다.

144) 이는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의 단서는 그 특별법에 대한 설명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우리나라의 교과서들도 이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 한다),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

(1) 告 發

- ① 의의: 告發이란 告訴權者와 犯人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바, 親告罪에 있어서 형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告訴(후술참조)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 ② 告發人: 누구든지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다. 누구를 告發人으로 간주할 것인지는 형식적인 관점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바, 書面으로 고발하거나 口頭로 고발하여 調書에 서명한 자가 고발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경찰에 신고를 한 것만으로 그를 告發人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처럼 告發과 단순한 申告를 구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惡意的이거나 重大한 過失에 기한 고발의 경우 告發人에게 형사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게 하거나 칸톤이 행한 損失補償에 대하여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반면,¹⁴⁵⁾ 신고의 경우에는 申告人의 申告가 不注意하거나 혹은 옳지 않은 것으로 입증된 경우라 하여도 申告人에게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¹⁴⁶⁾
- 가) 市民의 告發權: 告發은 하나의 權限(Befugnis)이지 義務는 아니다. 따라서 범죄의 피해자 등이 자신의 권리(즉, 告發權)를 행사할 것인 지 여부는 그의 자유이다.
- 나) 刑事訴追機關 등의 告發義務: 개개의 국민과는 달리 刑事訴追機關이나 그밖의 공무원은 그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¹⁴⁷⁾ 직권으로 수사 할 행위가 있다고 사료되거나 혹은 범죄의 혐의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을 때(예컨대 세무관청이

를 認知하게 되는 것은 화재나 교통사고 등처럼 그 원인이 실로 다양하여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145) 베른(Bern) 형사소송법 제390조 1항 1문 및 제407조 2항 참조.

146) 왜냐하면 범죄사실의 申告는 범죄를 밝혀냄에 있어서 공중과 경찰간의 협조촉진과 경찰과 대중 사이의 신뢰관계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는 바, 일정한 경우 신고인에게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신고제도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ZBJV 110/1974, 224).

147) 따라서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私的인 주변 환경으로부터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고발할 의무가 없다.

탈세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고발을 할 의무가 있다.¹⁴⁸⁾ 이처럼 告發의 義務가 존재하는 경우에 고발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상 의무의 위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犯罪隱匿(연방 형법 제305조)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¹⁴⁹⁾

결국 告發義務의 전제조건은 犯罪의 嫌疑라고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犯罪嫌疑의 정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 ㉠ 법률에 의하여 그 스스로 형사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없는 행정청의 구성원이나 공무원의 告發義務가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顯著한 犯罪嫌疑'(dringender Verdacht)가 있어야 하는 반면,
- ㉡ 법률에 의하여 형사소추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나 행정청의 구성원의 고발의무는 '單純한 犯罪嫌疑'(einfacher Verdacht)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 特別規定에 의한 告發義務: 예컨대 살인행위의 혐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의사에게 고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처럼,¹⁵⁰⁾ 특별법에 의하여 고발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③ 告發의 形式 등

가) 告發의 相對方: 告發은 경찰 혹은 그 밖의 형사소추기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들은 대부분 警察에게, 변호사나 공무원들은 豫審機關에 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한편 豫審機關이나 檢事는 자신들에게 접수된 고발에 대한 상세한 원인규명을 경찰에게 지시할 수 있다.¹⁵¹⁾

148) 베른(Bern) 형사소송법 제200조; 취리히(Zürich) 형사소송법 제21조; 루체른(Luzern) 형사소송법 제51조 1항; 우리(Uri) 형사소송법 제142조; 샤펜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210조; 아르가우(Aargau) 형사소송법 제120조; 테신(Tessin) 형사소송법 제181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역시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하여(제234조 2항)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추크(Zug) 형사소송법 제6조 2항은 단지 경미한 범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고려될 수 있는 한, 공무원에게 그의 상급자의 동의하에 고발을 하지 않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는 전기한 告發義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라고 생각된다.

149) Vgl. BGE 109 IV, 49; 101 IV, 315.

150) 취리히(Zürich) 건강법 제15조; 그라우빈덴(Graubünden) 형사소송법 제69조.

151) 베른(Bern) 형사소송법 제199조 3항 참조.

나) 告發의 意思表示方法: 고발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고발은 口頭로도 혹은 書面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고발이 口頭로 행해진 경우에 경찰은 調書(Protokoll)로 작성하고, 자신과 고발인의 署名을 받아야 하며, 고발인이 서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¹⁵²⁾

- ④ 고발에 대한 處理: 警察 등 搜查機關은 고발을 접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¹⁵³⁾ 고발의 접수 여부를 證據物(예, 영수증)의 제출 등에 의존하여서는 아니된다.¹⁵⁴⁾ 이 경우 경찰은 고발된 행위에 대한 자세한 상황(예 컨대, 범죄의 종류·범행의 장소 및 시간)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진술 할 수 있도록 고발인을 도와주어야 한다.

(2) 告 訴

- ① 의의: 告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告訴權者가 搜查機關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한편, 親告罪에 있어서는 告訴가 적극적인 訴訟條件 (Prozessvoraussetzung)이 되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 등의 고소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야 비로소 형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證據方法(Beweismittel)의 멸실이 우려되는 경우(예: 부주의로 인한 신체상해를 가져온 교통사고)처럼 긴급한 경우에는 事前的으로 필요한 조사를 행 할 수 있다.¹⁵⁵⁾ 이 같은 사전적인 조사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 등이 形式的인 告訴를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다.¹⁵⁶⁾

152) 베른(Bern) 형사소송법 제199조 2항 참조.

153) 이와 관련하여 스위스의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경찰은 誣告的 성격이 있다고 추정되는 고발 또한 접수해야 하며, 따라서 경찰은 고발의 결과를 스스로 예견하여 접수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환언하면 고발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귀속시킬지 여부를 경찰이 판단할 수는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Vgl. Aeschlimann, a.a.O., S.323).

154) Vgl. ZBJV 123/187, 585.

155) Vgl. 취리히(Zürich) 형사소송법 제24조; 베른(Bern) 형사소송법 제202조; 루체른(Luzern) 형사소송법 제51조 4항; 샤펜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207조; 아펜젤 인넨로덴(Appenzell IRh) 형사소송법 79조 3항.

156) Vgl. Aeschlimann, a.a.O., S.326.

② 告訴의 方式

- 가) 告訴의 意思表示의 方法: 告訴의 의사표시의 방식은 칸톤의 法에 의해 판단다.¹⁵⁷⁾ 따라서 칸톤의 법이 특별한 형식, 즉 文書 혹은 調書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¹⁵⁸⁾에는 그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의 방식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아무런 규정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는 書面으로도 또는 口頭로도 할 수 있다.¹⁵⁹⁾
- 나) 告訴의 意思表示의 內容: 고소의 의사표시는 어떤 내용을 가져야만 하는가? 환언하면 어떠한 내용을 가진 의사표시가 연방형법 제28조에 따를 때 고소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聯邦法에 의해 결정되는 바, 스위스의 聯邦法院은 告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내용상 고소된 행위에 대해 刑事訴追가 행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¹⁶⁰⁾
- 다) 告訴의 意思表示의 相對方: 고소의 의사표시가 어느 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는가는 칸톤의 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그에 대해 칸톤법이 특별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는 刑事訴追機關에 대하여 행하면 된다.¹⁶¹⁾

157) Vgl. BGE 98 IV 248; BGE 89 IV 58; BGE 80 IV 145 usw.

158) Vgl. 베른(Bern) 형사소송법 제199조 2항; 샤펜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208조 등.

159)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237조 1항은 告訴는 '書面 또는 口述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0) Vgl. BGE 115 IV 3, BGE 106 IV 245. 환언하면 告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告訴를 하기 위하여서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訴訟能力, 즉 告訴能力이 있어야 하는 바, 여기서의 告訴能力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민법상의 行爲能力과는 구별된다고 한다(배종대/이상돈, 전계서, 177면, 이재상, 전계서, 187면). 한편 우리나라의 판례는 13세의 여중생에 대하여 강간죄의 고소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大判 1987.9.22, 87 도 1707 참조).

161)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237조 2항은 告訴는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절 强制處分과 强制搜查

1. 序

(1) 强制處分の 必要性

전술한 告訴·告發 등을 단서로 하여 경찰은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바, 수사는 任意搜查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¹⁶²⁾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强制搜查의 필요성 내지 허용성도 긍정되어야 하는 바, 그 근거로 열거되고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증거의 蒐集·保全: 형사절차의 목적은 實體的 眞實의 발견에 있다고 할 것인 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證據(Beweis)¹⁶³⁾가 가능한한 완전히 蒐集保全되어야 한다.¹⁶⁴⁾ 그런데 被疑者(Beschuldigte)¹⁶⁵⁾ 혹은 제3자는 物的 證據方法

162) 任意搜查의 原則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배종대/이상돈, 전게서, 197면 이하.

163) 형사소송은 구체적 법률관계를 형성·확정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바, 그러한 구체적 법률관계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실관계의 확정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의 확정에 사용되는 자료를 證據라고 한다. 한편 증거란 ①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물건이나 사람자체(證人, 證據書類 등)를 말하는 證據方法(Beweismittel)과 ② 증거방법을 조사함으로써 알게된 내용(증인신문에 의하여 얻어진 證言 등)을 의미하는 證據資料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배종대·이상돈, 전게서, 480면; 이 재상, 형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1999, 447면).

164) 경찰이 증거방법 등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는 ① 혐의자 혹은 情報提供人에 대한 질문, ② 指紋 혹은 足跡의 확인·보존 ③ 알코올 테스트 등이 들어지며,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은 혐의자의 逮捕, 假押留, 신체검사를 포함한 搜索, 鑑識을 위한 조치(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vgl. Aeschlimann, a.a.O., S.329 ff.에 대한 독립한 권한을 가진다(BGE 91, 1965, I 36 ff)).

165)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받는 자를 被疑者라고 하면서, 이를 공소가 제기된 자를 뜻하는 被告人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스위스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없는 豫審이 행해지는 까닭에 용어례에 있어 약간의 특이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스위스의 경우 ① '豫審段階에서의 被疑者'에 대하여는 Angeschuldigter라는 용어를, ② 公訴가 제기된 자에 대하여는 Angeklagte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③ 형사절차의 단계와 상관없이 사용되는 上位概念으로서 Beschuldigt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비시키면 결국 Angeschuldigter는 被疑者, Angeklagte는 被告人, Beschuldigter는 피의자와 피고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을 湮滅하거나 證人·情報提供者·鑑定人 등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증거의 수집을 곤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서 強制處分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

- ② 判決의 執行保障: 예컨대 豫審拘束(Untersuchungshaft)은 被疑者의 도주를 곤란케 함으로써, 押收(Beschlagnahme)는 물건의 沒收나 還收를 보장해줌으로써, 향후 판결의 집행을 보장한다.

(2) 強制處分에 있어서의 市民保護

強制處分은 종종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¹⁶⁶⁾ 그런데 搜查機關이 전술한 것과 같은 강제처분의 필요성 내지 刑事訴追의 이익만을 내세워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강제처분을 행할 수 있다고 하면 자유의 合憲的 保障은 空洞化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強制處分의 가능성은 인정하되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스위스의 判例¹⁶⁷⁾ 내지 각 칸톤의 헌법¹⁶⁸⁾에 따르면 자유를 제한하는 強制處分을 행함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強制搜查法定主義: 전술한 바와 같이 強制處分에 의한 強制搜查는 任意 搜查에 비하여 개인의 基本權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強制搜查는 반드시 法律¹⁶⁹⁾에 근거하여야 하는 바, 이를 強制搜查法定主義라고 한다. 이 경우 그 법률들은 내용이 明白하여야 하고, 強制處分을 행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범위를 가능한

이하에서는 被疑者라는 용어를(특히 예심에 관한 경우가 아니면) Beschuldigter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166) 예컨대 拘束은 신체의 자유를, 押收는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書信檢閱은 意思의 자유를, 受刑者의 우편·전신·전화의 감청 등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게 된다.

167) Vgl. BGE 90, 1964, I 37 f.; EuGRZ 1994 S.493 E. 2b.

168) 예컨대 베른(Bern) 헌법 제28조; Uri 헌법 제14조; 니드발덴(Nidwalden) 헌법 제4조; 글라루스(Glarus) 헌법 제10조 5항; 아펜젤 아우서로덴(Appenzell ARh) 헌법 제9조·21조; 아르가우(Aargau) 헌법 제8조; 투르가우(Thurgau) 헌법 제8조 등 참조.

169) 여기서의 法律은 '實質的 意味의 法律'을 의미하며, 따라서 強制搜查가 委任命令에 근거하여 행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해석의 방법을 통한 유추는 불가능하다(Vgl. BGE 90, 1964, I 38 E 4).

한 확정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와 이른 바 特別勸力關係¹⁷⁰⁾에 있는 자 (예: 受刑者)의 地位는 그의 특별한 법적 상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법 규정에 의해 규율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¹⁷¹⁾

② 公益: 강제조치는 公益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③ 比例의 原則(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모든 強制處分은 比例의 原則을 준수하여야 한다.¹⁷²⁾ 강제수단에 있어서의 과잉은 부정된다. 한편 比例의 原則의 준수여부는 強制處分이 행해지는 시점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事後에 범죄의 혐의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도 동 強制處分이 부적당한 것으로서 다루어져서는 아니된다. 強制處分과 관련, 比例의 原則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준수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 自由의 제한이나 개인의 私的 領域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強制處分은 밝혀져야 될 범죄행위의 중대성, 예견되는 형벌 및 嫌疑의 強度와 相當한 關係에 있어야 한다.

나) 強制處分은 必要한 것(erforderlich)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多數의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경미한 수단이 선택되어야 한다. 예컨대 代替措置(Ersatzmassnahme)를 통하여 예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豫審拘束 대신에 그러한 대체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다) 重大한 침해는 다른 방법으로는 사안의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행해질 수 있다.

170)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성립되며, 일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방이 상대방을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바,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오늘날은 特別身分關係 또는 特別行政法關係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향에 있다(특별권력관계 전반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관하여는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1999, 120면 이하 참조).

171) 아르가우(Aargau) 헌법 제8조 2항 및 투르가우(Thurgau) 헌법 제8조 2항 참조.

172) 比例의 原則은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동 원칙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수사절차에서 관련당사자들의 기본권제한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수사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의 搜查比例原則은 헌법 제12조 1항의 適法節次條項에서 도출할 수 있다고 한다.

(3) 強制處分の種類

수사목적을 위하여 행해질 수 있는 強制處分으로는 人身拘束制度인 拘束이외에도 押收, 搜索, 檢證, 鑑定 등을 들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신구속제도인 拘束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2. 人身拘束制度

스위스의 형사소송법은 被疑者(혹은 被告人)의 人身을 구속하는 제도로서 拘束, 拘引, 假逮捕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들의 내용을 (拘束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1) 拘束의 意義

拘束이란 刑事節次의 관철을 위하여,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被疑者의 신명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¹⁷³⁾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이미 豫審의 단계에서 구속이 행해질 수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이른바 豫審拘束(Untersuchungshaft)이라고 한다. 한편 공소제기후에도 구속이 행해지는 바, 이를 豫審拘束과 구분하여 保安拘束(Sicherheitshaft)이라고 한다.¹⁷⁴⁾

拘束은 被拘束者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고, 더욱이 경우에 따라서는 죄없는 자에게도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被拘束者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모든 형사소송법들은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으며, 구속권한을 단지 특정한 기관에게만 귀속시키고 있다.¹⁷⁵⁾

173) Vgl. BGE 96, 1970, IV 46; 97, 1971, I 52.

174) 일단 독일어의 의미에 착안하여 Untersuchungshaft는 豫審拘束(審理拘禁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vgl. 이덕선·박한철, 전제논문, 249면 이하)으로, Sicherheitshaft는 保安拘束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그러나 내용을 보게되면 Untersuchungshaft는 被疑者拘束에, Sicherheitshaft는 被告人拘束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다만 이하에서는 설명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豫審拘束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2) 豫審拘束의 要件

스위스의 경우 豫審拘束의 요건은 칸톤에 따라 상이한 점이 있는 바, 일반적으로 ① 顯著한 犯罪嫌疑, ② 특별한 拘束事由 및 ③ 拘束의 比例性이 구속의 요건으로 들어진다.¹⁷⁶⁾

- ① 顯著한 犯罪嫌疑(Dringender Tatverdacht): 豫審拘束의 요건으로는 첫째로 被拘束者가 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즉 범죄행위의 존재와 범죄자에 대한 구체적 근거의 존재가 들어진다.¹⁷⁷⁾ 따라서 모호한 추정이나 소문만으로는 불충분하며, 有罪判決을 받을 고도의 蓋然性 (hohe Wahrscheinlichkeit)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범죄혐의, 즉 顯著한 犯罪嫌疑가 필요하다.

한편 현저한 범죄혐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관이 自由心證으로 판단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 ② 특별한 拘束事由: 拘束을 위하여서는 전술한 '顯著한 犯罪嫌疑' 이외에 특별한 구속사유가 요구되는 바, 이는 證據手段의 확보·被疑者의 身柄 確保 및 被疑者의 향후의 위험한 행위로부터의 社會保護라는 고전적인 구속목적에 연유한다.¹⁷⁸⁾ 현행법상 가장 중요한 구속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被拘束者로부터 自白을 받아내기 위하여 혹은 피구속자가 免責證明을 제출할 가능성을 박탈하기 위하여 구속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¹⁷⁹⁾

가) 逃走 또는 逃走할 憂慮: '逃走 또는 逃走할 憂慮'는 피의자가 비밀리에 거주장소를 이전¹⁸⁰⁾함으로써 형사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그러한 행위가

175) 이러한 사항은 범유럽적으로도 규율되고 있는 바,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人權과基本的의自由의保障을위한유럽協約」(Europäische Konvention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EMRK)이 있다.

176) 각 칸톤의 개별적인 것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vgl. Schubarth, Rechte des Beschuldigten im Untersuchungsverfahren, 1973, S.66 ff.

177) GVP 1981 Nr.34; SJZ 80, 1984, S.64.

178) Vgl. BGE 108, 98, I a 67 E 3; Amtsbericht des Obergerichts Schaffhausen 1987, S.107 lit a.

179) Vgl. BGE 101, 1975, I a 50 ff.

180)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것이 그 전형적 예가 된다.

행해질 개연성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전의 몇몇 법률은 칸톤이나 스위스 내에 住居가 없거나, 被拘束者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들을 갖고 있었으나, 오늘날 그와 같은 추정은 완전히 극복되었다.¹⁸¹⁾ 따라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한편 '逃走 또는 逃走할 憂慮'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¹⁸²⁾ 따라서 어느 하나의 사정만을 근거로 逃走危險의 존재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¹⁸³⁾

나) 證據湮滅(Verdunkelungsgesfahr) 혹은 通謀(Kollusion)의 憂慮: '通謀'란 被疑者가 증인, 감정인 혹은 공범자 등으로 하여금 虛偽陳述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證據湮滅'은 그를 넘어서서 被疑者가 物的 證據手段을 변조하거나 멸실시키는 것¹⁸⁴⁾을 말한다. 단순히 범죄행위를 부정하거나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것 혹은 被疑事實을 허위로 다투는 것 등은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¹⁸⁵⁾

한편 '證據湮滅 혹은 通謀의 憂慮'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被疑者의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음이 증명되거나, 적어도 전체 사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¹⁸⁶⁾

181) Vgl. LGVE 1983 Nr.62. 한편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역시 제70조 1항 1호에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것'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 독자적인 구속사유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182) Vgl. BGE 117, 1991, I a 70 E. 4a; GVP 1977 Nr.33, S.62; ZR 72, 1973, Nr.76, 77; RS 1991 Nr.70.

183) 同旨: 배종대/이상돈, 전게서, 222면; 한편 「도망의 위험은 '逃亡誘引要素'(심리적 상황, 범죄의 종류, 자수여부, 예상되는 형벌, 주거부정 등)와 '逃亡抑制要素'(사회적 환경, 가족관계 등 인간관계에 의한 구속)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설명 (신동운, 전게서, 108면) 역시 같은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184) 살인의 경우에 있어서 血痕을 제거하거나, 증거서류를 變造하거나 제거하는 것 혹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등이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185) Vgl. BGE 90, 1964, IV 69; GVP 1981, Nr.34.

186) Vgl. BGE 117, 1991, I a 260 E. 4b.

다) 범죄의 계속 혹은 再犯의 憂慮(Wiederholungsgefahr): 被疑者가 豫審의 개시를 가져온 가벌적 행위를 계속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 이른바 豫防拘束(sog. Präventivhaft)이 행해질 수 있다.¹⁸⁷⁾

豫防拘束과 관련하여서는 '再犯의 憂慮'가 있다는 것을 무엇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바, 일단 많은 죄를 범하였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된다. 그 밖에 ㉠ 풀려난 被拘束者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 석방되었을 때 被疑者가 공공의 안녕을 현저히 침해할 다른 범죄를 범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¹⁸⁸⁾

③ 拘束의 比例性: 전술한 顯著한 犯罪嫌疑가 있고, 또한 특별한 구속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구속의 目的과 구속이라는 手段간에 비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구속을 행할 수 없다.¹⁸⁹⁾ 이러한 比例의 原則에 어긋나기 때문에 구속이 정당화될 수 없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가) 단지 罰金만이 부과될 범죄의 경우

나) 구속을 통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생명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거나 중대한 질병을 초래하는 경우¹⁹⁰⁾

다) 豫審拘束 대신에 다른 代替措置로 충분한 경우(「테신」(Tessin) 형사소송법 제 40조 참조).

(3) 豫審拘束의 節次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豫審拘束의 명령은 형식적,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적 규율을 받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7) 다만 베른(Bern), 글라루스(Glarus), 취리히(Zürich) 등의 칸톤에서는 再犯의 憂慮를 이유로 하는 豫審拘束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188) Vgl. EuGRZ 1992 S.556 E.4; LGVE 1983 I Nr.63, 1988 I S.134.

189) 물론 스위스의 경우에는 拘束과 관련하여 독일의 형사소송법 제112조와 같이 比例의 原則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찾아 볼 수 없으나, 학설상 '拘束의 比例性'의 요구는 널리 인정되어 있다.

190) Vgl. BGE 116, 1990, I a 423 E 3.

① 拘束令狀(Haftbefehl)의 發付: 豫審拘束은 拘束令狀에 의하는 바, 구속영장을 발부할 권한은 종래 일반적으로 豫審機關에게 부여되어 왔으며, 단지 장기간에 걸친 구속을 행하는 경우에만 管轄法院의 同意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人權과基本的自由의保障을위한유럽協約」제5조 3호¹⁹¹⁾ 및 4호¹⁹²⁾는 이러한 제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는 바, 변화된 스위스의 구속영장발부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은 2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 令狀專擔法官(Haftungsrichter)이 拘束令狀을 발부하는 경우: 拘束令狀을 區檢察官이나 國家檢察 및 豫審判事의 청구에 의하여 刑事事件의 單獨判事나 裁判長 혹은 刑事法院長이 발부하는 유형으로,¹⁹³⁾ 이 경우 사전에 被疑者에 대한 審問을 거쳐야 한다.

한편 「취리히」(Zürich)의 경우 拘束令狀은 피의자가 區檢察官에 인치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3일안에 발부되어야 하며, 「바젤-슈타트(Basel-Stadt)에서는 被疑者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 혹은 석방에 관한 결정을 제출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豫審機關이 拘束令狀을 발부하는 경우: 「人權과基本的自由의保障을 위한유럽協約」에 따라 豫審機關에게 구속권한을 부여하면서, 被拘束者에게 판사 혹은 법원에 의한 再審査를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유형이다.¹⁹⁴⁾

② 拘束令狀의 方式: 拘束은 書面(拘束令狀)에 의하여야 하며,¹⁹⁵⁾ 구속의 이유가 附記

191) 「人權과基本的自由의保障을위한유럽協約」 제5조 3호는 “동조 제1호의 c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지체없이 판사 혹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인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2) 「人權과基本的自由의保障을위한유럽協約」 제5조 4호는 “逮捕 혹은 拘束으로 인하여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법원이 그의 適法性 여부에 대하여 가능한한 신속하게 결정하여, 만일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석방을 명하는 절차를 시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93) 취리히(Zürich, 형사소송법 제60조 내지 62조), 베른(Bern, 칸톤의 헌법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83조 내지 185조), 바젤-슈타트(Basel-Stadt, 형사소송법 제21조 a와 제62조), 아펜젤 아우서로덴(Appenzell ARh, 칸톤의 헌법 제21조 3항과 형사소송법 제107조 2항) 및 테신(Tessin, 형사소송법 제108조 2항) 칸톤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194) 루체른(Luzern, 형사소송법 제82조·83조),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157조·159조) 칸톤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되어야 한다. 구속영장에는 被疑者, 범죄행위와 결부된 拘束事由, 發付官廳과 發付日이 明記되어야 하며, 發付者 자신의 署名이 있어야 한다.¹⁹⁶⁾

한편 被疑者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재지파악을 위하여(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의 요구와 함께) 구속영장이 스위스 警察官報(Schweizerischer Polizeianzeiger)에 공고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찰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拘束令狀이 指名手配書(Steckbrief)가 된다.¹⁹⁷⁾ 특히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공조를 위하여 인상착의(Phantombild)나 신상명세서(Signalement) 등의 공개가 요구될 수도 있다.

③ 拘束令狀의 執行

가) 拘束令狀의 執行機關: 拘束令狀은 司法警察에 의하여 집행되며, 「제네바」(Genf)에서는 執行官이 집행하기도 한다(형사소송법 제102조). 나) 家族에의 通知: 구속을 행한 경우 지체없이 被拘束者의 가족에게 구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바, 通謀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족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도 좋다.¹⁹⁸⁾

(4) 拘束期間

比例의 原則에 따를 때 拘束期間은 예견되는 형벌을 초과할 수 없다.¹⁹⁹⁾ 또한 구속기간은 「人權과基本的自由의保障을위한유럽協約」 제5조 3호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195) 다만 이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글라루스(Glarus)에서는 긴급한 경우에는 '口頭'에 의한(형사소송법 제49조), 발리스(Wallis)에서는 '텔레кс 또는 전화'에 의한 拘束令狀으로 충분하다(형사소송법 제67조)고 한다(이덕선/박한철, 전제논문, 247면에서 재인용).

196)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에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거, 죄명, 피의사실(또는 公訴事實)의 要旨, 引致拘禁할 장소, 발부년월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75조 1항, 209조).

197) 군형사소송법 제58조; 취리히(Zürich) 형사소송법 제51조 참조.

198) 그라우뷘덴(Graubünden) 형사소송법 제85조 2항; 아르가우(Aargau) 형사소송법 제70조 4항;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96조 1항 참조.

199) 이에 관하여는 vgl. Rep. 1991 S.398 = RS 1995 Nr.688; Pr 86, 1997, Nr.165.

동 協約은 자유박탈, 즉 구속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절대적인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일부 칸톤에서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기도 한데,²⁰⁰⁾ 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令狀專擔法官이나 公訴部(Anklagekammer)의 결정으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²⁰¹⁾

(5) 豫審拘束에 대한 不服方法

① 拘束令狀發付에 관한 不服方法

가) 令狀專擔法官이 拘束令狀을 발부하는 경우: 令狀專擔法官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被疑者審問(Einvernahme des Beschuldigten)을 거쳐야 한다. 즉, 被疑者가 범죄행위의 책임과 구속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聽聞이 행하여져야 하는 바, 이러한 法的 聽聞權(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²⁰²⁾은 「人權과基本的自由的保障을위한유럽協約」 제5조 2항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나) 豫審機關이 拘束令狀을 발부하는 경우: 豫審機關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被拘束者는 판사 혹은 법원에 대하여 再審査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再審査請求의 구체적 유형은 연방 및 개개 칸톤의 경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 聯邦의 경우에는 公訴部에 대한 訴願을(형사소송법 제52조·214조 이하),²⁰³⁾ ㉡ 「루체른」(Luzern) 칸톤의 경우에는 上級法院에 대한 抗訴를(형사소송법 제82조 2항과 제83조), ㉢ 「샤프하우젠」(Schaffhausen) 칸톤의 경우에는 令狀專擔法官으로서의 칸톤법원장의 決定申請(형사소송법 제157조·159

200) 테신(Tessin, 형사소송법 제102조 2항과 제103조 1항), 노이엔부르크(Neuenburg, 형사소송법 제172조 2항) 칸톤의 경우가 그러하다.

201) 그러한 연기결정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4년간의 예심구속이 허용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Vgl..RS 1997, Nr.180).

202) 法的 聽聞權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범죄사실에 관한 심증형성에 論證的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바, 각종의 審問權, 증거신청권, 증인신문참여권 등이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이미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203) Vgl. BGE 120, 1994, IV 342 f.

조) 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豫審拘束中の 拘束適否審査(Haftprüfung)

가) 被拘束者의 申請에 기한 拘束適否審査: 被拘束者는 언제든지 석방해 줄 것을 예심기관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가 豫審機關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令狀專擔法官이 결정을 하여야 한다.²⁰⁴⁾

나) 職權에 의한 拘束適否審査: 被拘束者에 대한 중요한 보호수단으로(대부분의 경우 법원이 행하는) 정기적인 拘束適否審査가 있는 바, 이를 통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구속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형사절차의 신속한 수행을 가져올 수 있다.²⁰⁵⁾

(6) 豫審拘束의 代替措置(Ersatzmassnahme)

豫審拘束은 被拘束者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침해가 되므로 단지 최악의 경우에만 행해지거나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豫審拘束의 목적을 다른 경미한 조치로 달성할 수 있다면 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 豫審拘束의 代替措置로 논의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保釋(Sicherheitsleistung): 保釋이란 일정한 금액의 保釋金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逃走의 憂慮를 이유로 구속된 被疑者를 석방하는 제도이다.²⁰⁶⁾ 즉, 保釋은 형사절차에의 출석을 (만일 형사절차의 진행 중 도주하게 되면 예치된 보석금을 환부받을 수 없게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심리적으로 강제함으로써 豫審拘束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려는 제도이다.²⁰⁷⁾

204) 취리히(Zürich) 형사소송법 제64조; 루체른(Luzern) 형사소송법 제83조 2항;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159조; 테신(Tessin) 형사소송법 제45조·46조 참조.

205) 취리히(Zürich) 형사소송법 제65조; 루체른(Luzern) 형사소송법 제83조 1항; 바젤-슈타트(Basel-Stadt) 형사소송법 제54조;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160조; 마아트(Waadt) 형사소송법 제59조 3항 등 참조.

206) 취리히(Zürich) 형사소송법 제73조;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107조 내지 109조 등 참조.

207) 이런 점에서 保釋은 拘束의 比例性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保釋金額은 被疑者나 보호자의 資力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바,²⁰⁸⁾ 도주하려는 생각이 생기지 않도록 정하여져야 한다.²⁰⁹⁾

② 그 밖의 代替措置: 전술한 保釋 이외에 豫審拘束의 代替措置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²¹⁰⁾

가) 관청에의 정기적 申告義務의 부과

나) 여권 등 각종 신분증명서의 박탈

다) 居住地制限

(7) 豫審拘束외의 人身拘束制度

스위스의 경우 豫審拘束 이외에 拘引과 假逮捕가 被疑者의 人身을 구속하는 제도로 인정되어 있는 바, 이하에서 그들에 관해 알아 보기로 한다.

① 拘引(Vorführung): 拘引은 強制召喚(erzwungene Vorladung)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따라서 拘引은 被疑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않을 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²¹¹⁾

한편 拘引이 拘束의 前段階로서 활용될 수도 있는 바, 피의자가 逃走 하거나 通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區檢事가 訊問을 위하여 拘引狀(Vorführungsbefehl)을 발하여 被疑者를 검찰청(Amtslokal)으로 拘引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²¹²⁾ 이 경우

208) 따라서 被疑者 등의 資産程度로 납입하기 불가능한 過多한 保釋金額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 바, 이는 과도한 보석금은 사실상 保釋制度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한편 이 같은 내용은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98조 2항 및 미국 연방헌법수정 제8조 등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209) Vgl. BGE 105, 1979. I a 187 f.

210) 이하의 내용에 관하여는 Vgl. 취리히(Zürich) 형사소송법 제72조; Uri 형사소송법 제115조 1항 3호;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152조; 아펜젤 아우서로덴(Appenzell ARh) 형사소송법 제106조 1항 3호; 아르가우(Aargau) 형사소송법 제83조; 투르가우(Thurgau) 형사소송법 제116조.

211) 한편 召喚에 不應하는 경우 이외에 '召喚에 不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拘引을 인정하는 칸톤도 있는 바, 슈비츠(Schwyz, 형사소송법 제45조)나 세인트 갈렌(St. Gallen, 형사소송법 제91조) 칸톤이 대표적 예가 된다.

212) 이러한 예에 관하여는 vgl. 취리히(Zürich) 형사소송법 제49조 1항 2호·제50조 내지 52조.

검사는 被疑者訊問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하기도 하고, 구속을 준비하기도 한다.

- ② 假逮捕(Die vorläufige Festnahme)²¹³⁾: 급박한 경우에는 구속영장 없이도 容疑者(Verdächtiger)의 人身의 자유를 잠정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바, 이를 假逮捕라고 한다.

가) 警察에 의한 假逮捕: 우선 구속영장 없이도 容疑者를 假逮捕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이 가진다. 스위스의 대부분의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직접 범죄를 인지하거나 혹은 私人の 申告 등에 근거하여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假逮捕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假逮捕를 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요건, 예컨대 급박한 위험(Gefahr im Verzug)²¹⁴⁾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²¹⁵⁾

나) 私인에 의한 假逮捕: “現行犯(flagrante Täter)”²¹⁶⁾은 (경찰은 물론이고) 私인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私인은 자신이 체포한 자를 지체없이 경찰에 인도하여야 한다. 물론 私인은 逮捕權限을 가질 뿐이고, 체포의 의무는 없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私인에 의한 체포를 금지하고 있는 칸톤도 있는 바,²¹⁷⁾ 이는 비례의 원칙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現行犯의 개념은 칸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범죄의 실행중 이거나 혹은 실행직후에 있는 자”를 현행범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²¹⁸⁾ 다만 일부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153조 내지 158조.

213) 여기서의 假逮捕는 구속영장없이 행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緊急逮捕와 現行犯逮捕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214) 여기서 ‘急迫한 危險’이란 용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Vgl. BGE 107, 1981, I a 140 ff).

215) 취리히(Zürich) 형사소송법 제54조 참조.

216) “flagrant Täter”를 語義에 착안하면 “明白한 犯罪者”로 번역하여야 할 것이나, 이하의 내용을 보게되면 결국 現行犯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現行犯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217) 베른(Bern) 형사소송법 제73조; 취리히(Zürich) 형사소송법 제69조 등. 한편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역시 多額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현행범인의 체포를 제한하고 있다(동법 제214조).

218) 취리히(Zürich) 형사소송법 제55조 참조. 한편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역시 現行犯을 ‘범죄

칸톤의 경우 現行犯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데, 예컨대 범죄행위 후에 逃走中에 있는 자,²¹⁹⁾ 범인으로 呼喚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²²⁰⁾ 犯行對象物이나 범행 도구를 소지하고 범행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관계에 있는 자²²¹⁾ 등이 現行犯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現行犯을 ‘準現行犯’이라고 하면서, 전술한 ‘本來的 意味 의 現行犯’과 구분하기도 한다.²²²⁾

3. 그 밖의 強制處分

(1) 押收(Beschlagnahme)

- ① 概念: 押收란 물건에 대한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박탈하여 특정한 물건을 국가의 處分權下에 두는 強制處分(Zwangsmassnahme)을 말한다. 즉, 전술한 豫審拘束이 被疑者와 관계있는 것이라면 押收는 문서, 범행도구, 장물과 같은 物件의 保全에 관한 것이다.²²³⁾
- ② 種類: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押收를 押留, 領置 및 提出命令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스위스의 경우에는 압수를 그의 목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의 實行中이거나 실행의 卽後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11조 1항). 여기서 ‘實行中’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實行의 卽後’란 범죄행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자를 말한다.

219) 취리히(Zürich) 형사소송법 제55조.

220) 제네바(Genf) 형사소송법 제20조.

221) 테신(Tessin) 형사소송법 제49조; 우리 Uri) 형사소송법 제24조; 옵발덴(Obwalden) 형사소송법 제24조; 아르가우(Aargau) 형사소송법 제72조 등.

222)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또한 準現行犯의 개념을 도입하여 ① 범인으로 呼喚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② 贓物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證據이 있는 자, ④ 누구인지 묻는데 도망하려는 자를 現행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동법 제211조 2항).

223) AGVE 1973, S.107 lit.b; GVP 1991 Nr.52 등.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압수의 성격에 관하여 ① 對物的 強制處分으로 보는 견해(배종대/이상돈, 전개서, 270면)와 ② 對物的인 동시에 對人的 強制處分으로 보는 견해(정영석/이형국, 형사소송법, 1994, 183면)의 대립이 있는 바, 압수가 物件의 保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對物的 強制處分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같이 구분하고 있다.

가) 證據方法의 押收(Beweismittelbeschlagnahme): 證據方法으로 의미있는 물건의 수집·보전을 위한 押收를 말하는 바, 여기서 證據方法이란 어떠한 行爲나 그 狀態에 대하여 직접·간접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동산과 부동산, 즉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物件(證據書類 등)이나 사람 자체(證人 등)를 말한다.

나) 犯罪物의 押收(Die Beschlagnahme von Deliktsgegenstände): 沒收押收(Konfiskationsbeschlagnahme)라고도 불리우는 이것은 保全措置로서의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²²⁴⁾을 압수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법률이 범죄물의 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이러한 실정법상의 흠결은 證據方法의 押收到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으로 메꾸어야 한다.²²⁵⁾

다) 財産의 押收(Vermögensbeschlagnahme)

㉑ 의의: 被疑者 혹은 그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적 가치있는 물건을 압수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것은 장래에 발생하게 될 訴訟費用, 執行費用 및 벌금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財産押收는 단지 公法上的의 請求權 -공조(Abgabe)를 포함하여- 을 위하여서만 행해질 수 있다.²²⁶⁾

㉒ 沒收(Einziehung)와의 구별: 財産押收를 형법상의 몰수와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²²⁷⁾ 즉, 여기서의 財産押收는 형법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財政的 성격을 가진다.

③ 押收의 要件

가) 犯罪의 嫌疑: 押收도 搜查의 수단인 한, 압수가 행하여지기 위해서는 우선 犯罪嫌疑가 있어야 한다. 다만, 압수가 행해지는 시점에서는 범죄행위가 행

224) 예컨대 위조화폐제조장치나 그를 이용하여 제조한 위조화폐, 절도한 금전 및 그 代償物(Surrogate, 예: 절도한 금전으로 구입한 오토바이).

225) BGE 74, 1948, IV 215; RS 1978 Nr.643; ZBl 80, 1979, S.175 lit.b

226) BGE 101, 1975, IV 378 usw.

227) 양자의 구분에 관하여는 vgl. BGE 120, 1994, IV 366 E. 1.

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압수는 범죄행위의 단순한 嫌疑(Blosser Verdacht)가 있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²²⁸⁾

나) 押收의 比例性: 모든 압수는 比例의 原則에 따라야 한다. 즉, 압수는 행위의 重大性和 犯罪嫌疑의 强度和 상당한 관계에 있어야 하며,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서류의 압수는 그의 복사로는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다른 충분한 증거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押收의 禁止: 證言拒否權(Zeugnisverweigerungsrecht)을 가진 자의 서류 등은 (일정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하지 못한다. 이는 證言拒否의 의무를 가진 자(예컨대,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등)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며, 법률이 압수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²²⁹⁾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압수금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 ㉠ 秘密主體(Geheimnisträger)가 증언거부의무에서 벗어나거나 법률에 의하여 진술의무를 갖게 된 경우²³⁰⁾
- ㉡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申告義務를 갖게 된 경우²³¹⁾
- ㉢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자료 등을 국가가 압수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넘긴 경우²³²⁾

228) Amtsbericht des Obergerichts Schaffhausen: 1997, S.200 E.4. 우리나라의 경우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① 押收의 범죄혐의 역시 구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蓋然性(hohe Wahrscheinlichkeit)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신동운, 전게서, 137면)와 ② 압수의 경우에는 구속보다 낮은 '단순한 범죄혐의'로 충분하다는 견해(배종대/이상돈, 전게서, 270면 이하; 이재상, 전게서, 273면)의 대립이 있는 바, 구속에 수반되지 않는 압수의 경우라면 압수는 수사를 개시할 정도의 범죄혐의, 즉 단순한 범죄혐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229) Vgl. BGE 71, 1945, IV 175; 97, 1971, I 387 f.; 107, 1981, I a 50; 117, 1991, I a 348 lit. a.aa. 다만 犯罪物의 押收의 경우에는 압수금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압수금지를 인정하게 되면 국가가 범죄물을 압수하는 것을 파하기 위하여 피의자가범죄물을 증언거부권을 가진 자에게 넘겨 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230) 이에 관하여는 vgl. BGE 117, 1991, I a 348 lit a/aa; GVP 1982 Nr.57 S.112 lit b/bb; RS 1987 Nr.288

231) 예컨대 베른(Bern) 健康法 제22조. 이에 관하여는 ZBJV 124, 1988, S.31 f.

232) BGE 97, 1971, I 388; 117, 1991, I a 349 lit. cc.

④ 押收의 節次

가) 押收命令: 원칙적으로 豫審機關이나 法院이 압수를 명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실무상으로 제네바(Genf)에서는 검찰총장이,²³³⁾ 포르노그라피의 수입에 있어서는 연방관세청²³⁴⁾이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한편 證據方法이나 犯罪物의 押收를 즉시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私人 또한 押收를 행할 수 있다(연방형사소송법 제71조; 연방행정형법 제48조 4항).²³⁵⁾

나) 押收의 執行: 押收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任意로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임의로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押留處分을 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처분에는 압류의 이유가 부기되어야 하며, 압류대상물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한편 범죄혐의가 없는 제3자에게는 그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법 제292조상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계고하에 提出命令(Heraudverfügung)을 발할 수 있다.

押收는 통상적으로 물건의 점유를 박탈하여 행정청의 보관하에 두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나, 필요한 경우에는 物件의 處分禁止의 방식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⑤ 押收物의 處理: 늦어도 형사절차를 종료시키는 결정에서, 또는 독립한 절차로 豫審機關이나 法院은 압수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 바, 압수물의 처리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賣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건,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위험이 있는 물건 혹은 보관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물건은 소송중이라도 매각할 수 있다.²³⁶⁾

나) 押收物의 還付: 증거방법은 그것이 더 이상 필요없고, 그의 몰수도 문제되지 않을 때에는 제출자에게 환부되어야 한다.

233) BGE 117, 1991, I a 346 E. b.

234) BGE 100, 1974, I b 383 ff.

235) 그러나 경찰 또는私人에 의한 압수는 대상물을 압수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豫審機關 등에게 인도할 때까지만, 단지 잠정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236)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117조; 제네바(Genf) 형사소송법 제105조의 A, 105조의 B 2항.

- 다) 贓物 등의 被害者還付: 범죄를 통하여 얻어진 물건이나 그의 代償物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환부할 물건에 대한 物權者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民事法院의 判事가 그에 대하여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²³⁷⁾
- 라) 國庫에의 歸屬: 환부할 물건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기간의 경과후에 국고에 귀속된다.²³⁸⁾

(2) 搜索(Durchsuchung)²³⁹⁾

- ① 概念: 搜索이란 被疑者를 발견하고 押收할 물건을 찾을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물건 혹은 가택을 뒤져 찾는 강제처분을 말하는 바, 이는 任意提出이 행해지지 않거나 任意提出節次 도중에 증거물이나 물수물이 일실될 염려가 존재할 때 행해진다.
- ② 種類: 搜索은 그것이 행해지는 대상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가) 物件의 搜索(Sachendurchsuchung): 물건의 수색은 '個人的 物件'²⁴⁰⁾에 대해 행하여지는 바, 상점털이범의 주머니에서 贓物을 찾거나 詐欺犯의 서류가방에서 계약서를 찾는 경우가 그 예가 된다.²⁴¹⁾ 한편 家宅搜索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때, 압수할 물건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被疑者 아닌

237) 바젤-슈타트(Basel-Stadt) 형사소송법 제70조 2항 참조.

238) 세인트 갈렌(St. Gallen) 형사소송법 제109조 1항; 투르가우(Thurgau) 형사소송법 제105조의 A 2항; 제네바(Genf) 형사소송법 제3조.

239) 搜索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에 관하여는 서정범(譯), 독일경찰법론, 세창출판사, 1999, 82면 이하 참조.

240) 家宅내에 있는 물건은 家宅搜索의 일환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여기서의 물건은 그것이 가택 내에서 발견되어질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241) 物件의 搜索에 관하여 스위스의 각 칸톤들은 법률에 전혀 규정을 갖고 있지 않거나 단지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物件의 搜索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도 존재하는 바, 다음이 그 예이다: 베른(Bern) 형사소송법 제146조 이하, 우리(Uri) 형사소송법 제132조; 옵발덴(Obwalden) 형사소송법 제80조; 아펜젤 아우서로덴(Appenzell ARh) 형사소송법 제124조; 투르가우(Thurgau) 경찰법 제16조 이하.

자의 물건에 대해서도 수색이 행해질 수 있다.

나) 家宅搜索(Hausdurchsuchung): 家宅搜索은 수색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그것은 家宅·상점·공장 및 그 안에 있는 什器에까지 미친다. 가택수색을 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범죄의 흔적(예: 血痕, 指紋, 足跡 등), 證據方法(예: 교환한 書信,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 수색이 행해진다.

家宅搜索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犯罪의 嫌疑가 존재할 것이 필요한 바, 따라서 그 곳에 피의자 혹은 압수할 물건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하에서는 被疑者 아닌 자에 대해서도 수색이 행해질 수 있다.²⁴²⁾ 한편 가택의 소유자가 抗拒하는 경우에는 實力을 행사할 수도 있다.

다) 身體의 搜索(Personendurchsuchung): 身體의 搜索은 신체의 표면과 신체의 諸腔²⁴³⁾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바, 범죄행위자나 피해자의 신체에 나타난 상처나 血痕 혹은 입이나 항문 등에 숨겨진 물건을 찾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의복도 신체수색의 대상으로서 고려된다.²⁴⁴⁾ 한편 신체의 수색은 필요한 경우 實力으로 강제될 수 있으며, 위험한 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실행행사가 언제나 허용된다.²⁴⁵⁾

242) BGE 102, 1976, I a 531; 106, 1980, IV 418 E. 4a.

243) '身體의 諸腔'이란 결국 입(구강)이나 귀 등을 말하는 바, 이 밖에 항문이나 여성의 膣이 여자의 '身體의 諸腔'에 속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244) 스위스의 경우 종래 신체수색에 대한 법률규정은 매우 미흡하였으나, 근자의 법률들은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들을 갖고 있다: 예컨대 관세법 제80조 1항; 베른(Bern) 형사소송법 제146조·147조; 옵발덴(Obwalden) 형사소송법 제80조; 니드발덴(Nidwalden) 경찰법 제67조;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185조; 아펜젤 아우서로덴(Appenzell ARh) 형사소송법 제124조; 세인트 갈렌(St. Gallen) 형사소송법 제115조 및 경찰법 제30조·31조; 투르가우(Thurgau) 형사소송법 제130조 1항; 제네바(Genf) 경찰법 제17조 이하.

245) 베른(Bern) 형사소송법 제146조 2항과 제147조 3항 참조.

제4절 豫審(Untersuchung)

1. 意 義

(1) 概 念

豫審(Untersuchung)²⁴⁶⁾은 형사절차의 진행이란 측면에서 볼 때 통상적으로 搜查節次와 公判節次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형사절차의 개시 후 그 사건을 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인가 혹은 형사절차를 중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2) 搜查節次와의 區分

豫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搜查節次와 구별될 수 있다.

- ① 豫審의 경우에는 搜查의 단계에 있어서 보다 범죄행위의 法的, 主觀的 要素를 분명히 밝히는 것에 중점이 놓여진다.
- ② 豫審節次에 관여하는 자는 搜查節次의 경우와 달리 예심절차에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豫審機關(Untersuchungsbehörde)

豫審機關 및 그의 지위는 칸톤에 따라 상이한 바,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1) ① 「아펜젤 인넨로덴」(Appenzell IRh), 「바아트」(Waadt), 「노이엔부르크」(Neuenburg), 「제네바」(Genf), 「샤프하우젠」(Schaffhausen) 칸톤에서는 豫審判事(Untersuchungsrichter)가, ② 「옵발덴」(Obwalden), 「니드발덴」(Nidwalden), 「아펜젤

246) Voruntersuchung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아우쉴로덴)(Appenzell ARh), 「글라루스」(Glarus), 「주크」(Zug) 칸톤에서는 訊問判事(Verhör Richter)가 예심을 담당하는 바, 이들은 獨立한 豫審機關의 지위를 갖고 있다.

(2) 일부 칸톤(베른, 프라이부르크, 솔로투른, 발리스, 유라)에서는 裁判長이 豫審을 지휘하고, 법원에서의 辯論도 지휘했었다. 그러나 이처럼 豫審機關과 受訴法院의 判事を 겸임하는 것은 연방헌법 제58조 1항과 「人權과基本的自由의保障을위한유럽協約」 제6조 1호의 보장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判例²⁴⁷⁾가 축적되면서, 각 칸톤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즉,

- ① 「유라」(Jura) 칸톤에서는 3명의 豫審判事 가운데 2명은 裁判長으로(델스부르크와 프룬트루트에서) 근무하고, 제3의 豫審判事は 중요사건에 대한 칸톤의 豫審判事로 근무하도록 하였다(법원조직법 제47조).
- ② 「베른」(Bern, 법원조직법 제1조 4호와 37조 이하), 「프라이부르크」(Freiburg, 법원조직법 제155조 이하, 형사소송법 제11조), 「솔로투른」(Solothurn, 법원조직법 제75조)과 「발리스」(Wallis, 형사소송법11 조) 칸톤에서는 豫審의 진행을 위해 刑事豫審判事(Strafuntersuchungs- richter)를 만들었다.

(3) 「취리히」(Zürich) 칸톤에서는 區檢察(Bezirksanwaltschaft)이 豫審機關이 되는 바(법원조직법 제72조 이하), 이 경우 예심기관은 동시에 국가행정의 일부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예심권력과 집행권력의 결합은 현재 -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 다른 칸톤²⁴⁸⁾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4) 特別機關(Sonderabteilung)

- ① 生成背景: 오늘날 폭력범죄·경제범죄 및 조직범죄는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그 구

247) Vgl. BGE 112, 1986, I a 290; 113, 1987, I a 73; 115, 1989, I a 227; 121, 1995, II 53; EuGRZ 1986, S.670.

248) 예컨대 세인트 갈렌(St. Gallen, 형사소송법 제6조), 아르가우(Aargau, 형사소송법 제2조), 투르가우(Thurgau, 형사소송법 제3조) 칸톤 등.

성요건 또한 광범위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바, 따라서 그들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犯罪技術·法醫學·會計·情報 등에 대한 깊은 지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의 활동영역이 쁘 칸톤에 미치는 特別機關²⁴⁹⁾이 생성되기에 이르렀는데, 同 機關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와 經濟犯罪와 組織犯罪(범죄결사, 돈세탁, 마약 이나 무기거래, 국제적 매춘)의 豫審을 담당한다.

- ② 構成 등: 동 機關은 법학자, 회계·정보 등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그에 상응하는 司法警察部署와 함께 공동작업을 행한다.
- ③ 具體的 例: 이러한 특별기관으로는 「베른」(Bern, 법원조직법 제39조), 「루체른」(Luzern, 정부조직법 제64조), 「바젤-슈타트」(Basel-Stadt, 「檢察의一般職務規律에 관한規程」 제33조), 「바젤-란트샤프트」(Basel-Landschaft, 법원조직법 제16조·17조)의 그것을 들 수 있다. 끝으로 1996.8.24에 「우리」(Uri), 「옵발덴」(Obwalden) 및 「니드발덴」(Nidwalden) 칸톤간에 체결된 「경제범죄에 관한 共同豫審機關의 도입에 관한 協定」은 주목을 요한다.

3. 搜查節次와 豫審간의 關係

搜查와 豫審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스위스의 각 칸톤의 형사소송법들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식, 즉 ① 수사절차가 예심과 독립하여 행해지도록 하거나, ② 수사절차가 예심절차의 일부를 형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전자를 二元的 豫審, 후자를 一元的 豫審이라고 하는 바, 이하에서 詳論하기로 한다.

(1) 二元的 豫審(Die zweigliederige Untersuchung)

事前節次(Vorverfahren)가 二元的으로 행해지는 경우, 즉 豫審에 앞서 豫審機關(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후술참조) 외의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搜查가 행해지는 체계

249) 이러한 特別機關은 그 활동영역이 모든 칸톤에 미친다는 점에서, 전술한 豫審機關들이 원칙적으로 그의 관할구역(Amtsbezirk)내에서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만 權限을 행사하여 온 것과 대비된다.

를 말한다. 이러한 체계하에서는 節次的 主宰者로서 國家檢事의 지휘하에 사법경찰이 搜查를 행하고, 豫審機關은 國家檢事가 예심의 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만 비로소 활동을 행할 수 있다.

1808년의 治罪法에 기초하고 오스트리아에서도 통용되는 이러한 體系는 연방의 형사소송에서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연방형사소송법 제104조·108조), 「아르가우」(Aargau, 형사소송법 제1조·123조·126조), 「노이엔부르크」(Neuenburg, 1998.3.24의 형사소송법 제7조·9조·106조), 「제네바」(Genf, 형사소송법 제4조·106조·113조·115조·117조·120조) 칸톤 등에서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 一元的 豫審(Die eingliederige Untersuchung)

豫審機關이 스스로, 즉 國家檢察의 위탁없이도 수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심지어 수사절차를 포기할 수도 있는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체계하에서는 司法警察에 의하여 수사가 행해지는 경우 豫審判事는 언제라도 그의 활동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방법은 처음부터 수사의 統一的 指揮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節次的 集中뿐만 아니라 목적의식이 있는 절차수행이 보장된다.²⁵⁰⁾

「취리히」(Zürich, 형사소송법 제22조·23조·26조)와 「베른」(Bern, 형사소송법 제219조·220조) 칸톤이 일찍부터 一元的 豫審의 체계를 채택하여 왔다.

(3) 최근의 立法例

오늘날에도 이 문제에 관한 입법경향은 일정하지 않다. 다만,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210조 2항·제211조 2항과 3항)과 「테신」(Tessin, 형사소송법 제192조 내지 제194조) 칸톤이 각각 1986년과 1992/1994년에 二元的 豫審에서 一元的 豫審으로 구조를 변경하고,²⁵¹⁾ 「프라이부르크」(Freiburg, 형사소송법 제144조 이하) 칸

250)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일원적 예심체계하에서는 검사가 예심과정에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에 의해 수사가 행해지는 경우 경찰은 그 한도에서 예심판사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톤이 오랜 논의 끝에 1996년의 형사소송법을 통해 一元的 體系를 확립하는 등 오늘날 스위스의 대부분의 칸톤은 사전절차가 一元的으로 형성되어 있다.

4. 豫審의 職務

豫審은 무엇보다도 각종의 訴訟行爲(Prozesshandlung)²⁵²⁾를 통하여 사안을 법적, 사실적 관점에서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를 위하여 豫審에서 어떠한 범위의 활동이 행해지는지가 문제된다.

만일 法院이 독자적으로 증인을 신문하는 등 독립하여 證據調查를 행하게 되면 예심기관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豫審은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 예심절차를 중지할 것인가에 관한 검찰의 결정에 기여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公判節次에 이를 때까지 멸실될 우려가 있는 증거는 예심에서 수집하기도 한다.²⁵³⁾

한편 법원이 전적으로 豫審調書(Untersuchungsakten)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린다면, 그에 상응하여 豫審이 행하여져야 한다. 즉, 豫審은 量刑과 각종의 措置에 대한 근거도 제공하여야 한다. 많은 소송법규들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豫審을 규율하고 있다.²⁵⁴⁾

5. 豫審의 開始

豫審은 豫審判事가 스스로, 혹은 告訴나 告發에 기초하여 사실상 절차에 착수함으로써

251) 한편 유라(Jura) 칸톤의 경우에는 1990년에 一元的 豫審에서 二元的 豫審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일반적인 추세와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형사소송법 제100조 1항 참조).

252) 訴訟行爲란 소송절차를 형성하는 訴訟主體나 訴訟關係人의 행위로서 소송법상 일정한 효과가 계속되는 행위를 말한다.

253) 연방형사소송법 제113조; 취리히(Zürich) 형사소송법 제30조; 프라이부르크(Freiburg) 형사소송법 제152조 1항; 바젤-란트샤프트(Basel-Landschaft) 형사소송법 제42조 2항 등은 이러한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54) Vgl. 우리(Uri) 형사소송법 제148조 1항; 슈비츠(Schwyz) 형사소송법 제61조; 옴발덴(Obwalden) 형사소송법 제29조; 글라루스(Glarus) 형사소송법 제40조; 프라이부르크(Freiburg) 형사소송법 제152조 2항; 아펜젤 아우서로덴(Appenzell ARh) 형사소송법 제146조; 세인트 갈렌(St. Gallen) 형사소송법 제54조 1항; 투르가우(Thurgau) 형사소송법 제74조 1항; 발리스(Wallis) 형사소송법 제51조 2호 등.

개시되며, 예심의 개시를 위하여 어떤 形式的 處分(formelle Verfügung)은 필요하지 않다.²⁵⁵⁾ 따라서 區檢事(Bezirksanwalt)가 경찰과 함께 범행장소에 출동하거나²⁵⁶⁾ 拘引命 令이 발하여진 경우²⁵⁷⁾에는 예심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節次關與人(Verfahrensbeteiligten)²⁵⁸⁾의 權利

(1) 豫審調書閱覽權(Das Recht auf Einsicht in die Untersuchungsakten)과 證據申請權(Das Recht auf Stellung von Beweisanträge)

豫審調書閱覽權과 證據申請權은 法的 聽聞(rechtliches Gehör)의 원리에 의하여 인정 되는 것인 바, 효과적인 방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미 豫審의 단계에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²⁵⁹⁾ 다만 豫審調書를 공개하는 것이 향후 예심의 진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²⁶⁰⁾에는 그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255) Vgl. GVP 1985 Nr.63 S.135 E. 3a; 1988 Nr.72; 1990 Nr.77. 다만 예외적으로 軍刑事訴訟의 경우에는 형식적 처분으로서의 豫審命令(Befehl zur Voruntersuchung)이 요구된다(군형사소 송법 제101조와 제103조).

256) Vgl. ZR 54, 1955, Nr.117.

257) Vgl. GVP 1995 Nr.64.

258) 형사절차에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하게 되는 자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① 법 원·검사·피의자를 訴訟主體(Prozesssubjekte), ② 검사와 피의자를 訴訟當事者(Partei), ③ 변호인·대리인·司法警察官吏를 補助者(Beistand), ④ 소송당사자와 보조자를 합하여 訴訟關係人(Verfahrensbeteiligte), ⑤ 증인·감정인·고소인·고발인 등을 訴訟關與者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의 경우 'Verfahrensbeteiligte'라는 題下에서 豫審機關과 起訴機關, 被害者(Geschädigte), 被疑者(Beschuldigte) 및 辯護人(Verteidiger)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Verfahrensbeteiligte'는 우리나라의 용어례 중 어느 것보다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쓰게 되면 개념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造語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 바, 본 연구에서는 일단 'Verfahrensbeteiligte'을 節次關與人으로 번역하기로 하겠다.

259) 이러한 의미에서 연방형사소송법 제116조, 취리히(Zürich) 형사소송법 제10조 1항· 제17조 3항, 베른(Bern) 형사소송법 제244조 2항·3항, 솔로투른(Solothurn) 형사소송법 제95조 1항·96조,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218조, 아펜젤 아우서로덴(Appenzell ARh) 형사소송법 제149조, 아르가우(Aargau) 형사소송법 제132조·134조 등이 이러한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豫審이 종결된 후에는 무제한의 豫審調書閱覽權이 인정된다.

(2) 辯護人의 節次參與申請權(Das Recht auf Beizug eines Verteidigers)

豫審의 단계에서 辯護人의 참여를 인정하게 되면 변호인이 적절한 증거신청, 豫審節次(특히 豫審拘禁決定 등)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被疑者의 지위는 보다 강화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辯護人의 被疑者訊問參與'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의 참여는 연방헌법 제4조 혹은 「人權과基本的自由의保障을위한 유럽協約」 제6조로부터 도출되어질 수는 없다.²⁶¹⁾ 따라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의 참여 가능성은 법률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바, 몇몇 법률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의 참여로 인하여 豫審의 목적이 위협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를 인정하고 있다.²⁶²⁾

(3) 豫審節次에의 參與權(Das Recht auf Teilnahme an Untersuchungs-handlungen)

이와 관련하여서는 現場檢證, 證人 등의 訊問 및 鑑定人에 대한 質問에의 참여권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바, 예전에는 예심절차에 節次關與人의 참여가(자신에 대한 訊問이나 被疑者와 證人간의 對質訊問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배제되었었다.²⁶³⁾ 그러나 이러한 糾問主義的 모델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시의에 맞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근자의 법률들이 예심절차에 節次關與人의 참여를 인정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은

260) 예컨대 피의자가 예심절차를 알고 그를 통하여 절차의 진행을 곤란케 할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vgl. BGE 101, 1975 I a 17 f).

261) Vgl. BGE 104, 1978 I a 17, 19 E. 4.

262) 예컨대 연방형사소송법 제118조; 베른(Bern) 형사소송법 제245조; 니드발덴(Nidwalden) 형사소송법 제104조; 솔로투른(Solothurn) 형사소송법 제95조; 아펜젤 아우쉴로덴(Appenzell ARh) 형사소송법 제148조 1항; 세인트 갈렌(St. Gallen) 형사소송법 제65조; 그라우빈덴(Graubünden) 형사소송법 제76조의 c 3항 등.

263) 이러한 경우를 非公開 豫審(Geheime Untersuchung)이라고 부른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節次關與人이 證人의 진술에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고, 증인의 진술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처럼 節次關與人의 예심절차에의 참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2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 ① 대부분의 법률에 따르면 節次關與人의 예심절차에의 참여는 단지 '任意的' (fakultativ)이다. 즉, 절차관여인의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예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참여의 가능성은 칸톤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 가) 특별한 사정하에서만 節次關與人의 참여를 허용하는 칸톤과²⁶⁴⁾
 - 나) 원칙적으로 참여가 허용되고, 단지 節次關與人을 참여시키게 되면 豫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만 참여를 배제하는 칸톤²⁶⁵⁾이 있다.
- ② 한편 절차관여인의 참여를 '必要的'(obligatorisch)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칸톤도 있는 바, 「취리히」(Zürich) 칸톤이 대표적이다(형사소송법 제10조·14조·15조).²⁶⁶⁾ 따라서 節次關與人은 證人, 情報提供人, 鑑定人 등의 訊問節次에 召喚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그러한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절차관여인의 意思에 달려있다고 한다.²⁶⁷⁾

264) 세인트 갈렌(St. Gallen, 형사소송법 제71조·78조·122조 3항), 아르가우(Aargau, 형사소송법 제130조 1항), 투르가우(Thurgau, 형사소송법 제77조), 유라(Jura, 형사소송법 제113조) 칸톤이 그러하다.

265) 베른(Bern, 형사소송법 제245조), 루체른(Luzern, 형사소송법 제100조 1항), 슈비츠(Schwyz, 형사소송법 제66조 2항), 우리(Uri, 형사소송법 제150조), 옵발덴(Obwalden, 형사소송법 제34조), 니드발덴(Nidwalden, 형사소송법 제102조), 추크(Zug, 형사소송법 제30조), 프라이부르크(Freiburg, 형사소송법 제42-44조와 155조), 솔로투른(Solothurn, 형사소송법 제95조 2항), 바젤-슈타트(Basel-Stadt, 형사소송법 제106조 이하),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219조), 아펜젤 아우쎬로덴(Appenzell ARh, 형사소송법 제148조), 아펜젤 인넨로덴(Appenzell IRh, 형사소송법 제25조 2항), 그라우뷘덴(Graubünden, 형사소송법 제76조의 c 3-5항), 테신(Tessin, 형사소송법 제57조·60조·193조), 제네바(Genf, 형사소송법 제148조 이하) 등 대부분의 칸톤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266) 이는 被疑者의 완전한 防禦可能性과 被害者의 共助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예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67) Vgl. BGE 106, 1980, IV 91 E. b.

- ③ 節次關與人の豫審節次에의 參與에 대한 제한: 1991. 10. 4의 被害者救濟法(Opferhilfegesetz)은 절차관여인의 예심절차에의 참여(그것이 任意的이던, 必要的이던간)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왔다. 즉 동법 제5조 4항에 따르면 被害者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심절차에서 被害者와 被疑者가 遭遇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측 證人 訊問節次에 참여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절 中間節次(Zwischenverfahren)

1. 概 說

수사절차와 예심절차를 포함하는 의미로서의 事前節次(Vorverfahren)는 中間節次(Zwischenverfahren)로 귀결되는 바, 중간절차에서는 公判節次(Hauptverfahren)를 시행할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따라 ① 공판절차를 개시할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면 公訴(Anklage)를 제기하고,²⁶⁸⁾ ② 사전절차의 결과만으로도 被疑者에 대한 有罪判決을 기대할 수 없는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不起訴處分(Einstellungsverfügung)을 통해 형사절차를 종국적으로 중지시킨다. 취리히의 경우 1992년에 區檢察과 國家檢察에 의하여 7931건의 不起訴處分, 7873건의 科刑命令이 행해졌고 4979건의 公訴提起가 있었다고 한다.²⁶⁹⁾

268) 다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는 대신 科刑命令(Strafbefehl)이 발해될 수도 있다.

269)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 검찰이 처리한 인원은 총 2,328,077명인데,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하여는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po.go.kr>)의 관련부분 참조(한편 아래의 표에서 嫌疑없음, 罪가 안됨, 公訴權없음은 그를 이유로 不起訴處分을 행하였다는 의미이다).

求公判 195,523명(8.4%) 求略式命令 1,031,193명(44.3%)
 起訴猶豫 244,782명(10.5%) 嫌疑없음 243,146명(10.4%)
 罪가 안됨 1,292명(0.06%) 公訴權없음 248,121명(10.7%)
 起訴中止 235,606명(10.1%) 參考人中止 36,081명(1.5%)
 却下 등 22,355명(1.0%) 가정법원 移送 23,607명(1.0%)
 타관이송 46,370명(2.0%)

이 중에서 不起訴處分과 科刑命令이 형사절차의 종결을 가져오는 것에 반하여, 公訴提起는 訴訟係屬(Rechtshängigkeit)²⁷⁰⁾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바,²⁷¹⁾ 이하에서는 이들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2. 不起訴處分(Die Einstellungsverfügung)

(1) 意 義

不起訴處分이란 수사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말하는 바, 그것은 다음의 3가지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²⁷²⁾

(2) 種 類

① 豫審不開始處分(Nichtanhandnahmeverfügung)²⁷³⁾

가) 의의: 豫審不開始處分이란 수사결과(혹은 告發)에만 근거하여 豫審 조차 개시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나) 豫審不開始處分을 할 수 있는 경우: 豫審不開始處分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행할 수 있으며, 만일에 조금이라도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예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270) 訴訟係屬이란 公訴權者의 公訴제기에 의하여 被告事件이 受訴法院의 심리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71)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豫審節次와 公判節次사이의 중간단계로서 中間節次가 존재하게 된다.

272) 이하의 설명은 스위스에서 행해지는 不起訴處分의 종류에 관한 것인 바, 이 점에서 不起訴處分에는 ① 狹義의 不起訴處分과 ② 起訴猶豫가 있다고 설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273)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스위스에서와 같은 豫審節次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豫審不開始處分에 해당하는 용어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스위스에서 豫審不開始處分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피의사실이 전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嫌疑없음을 이유로, 公訴時效가 완성된 경우에는 公訴權없음을 이유로 狹義의 不起訴處分을 하고 있다.

- ㉠ 판단을 요하는 행위가 전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 ㉡ 刑事訴追를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예: 公訴時效가 완성된 경우)
 - ㉢ 誣告(querulatorische Anzeigen)가 있었던 경우²⁷⁴⁾
 - ㉣ 그밖에 의심의 여지없이 起訴便宜主義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豫審不開始處分을 할 수 있다.²⁷⁵⁾
- ② 狹義의 不起訴處分(Die Einstellungsverfügung i.e.S.)
- 가) 의의: 狹義의 不起訴處分은 豫審을 행한 후에 특정인에 대한 형사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 나) 狹義의 不起訴處分을 할 수 있는 경우²⁷⁶⁾
 - ㉠ 형사절차를 계속하기 위한 訴訟條件(Prozessvoraussetzungen)이 결여된 경우(예컨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경우)
 - ㉡ 被疑者가 死亡한 경우
 - ㉢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正當化事由(Rechtfertigungsgrund)²⁷⁷⁾가 있음이 증명되어 범죄를 구성 하지 않는 경우
 - ㉣ 예심결과 被疑者가 범죄의 행위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을 때
 - ㉤ 被疑者가 형법에 따른 責任能力이 없는 경우²⁷⁸⁾
 - ㉥ 被疑者의 책임을 묻기에 충분한 혐의가 없어서 公判節次에서 有罪 判決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²⁷⁹⁾

274) 아르가우(Aargau) 형사소송법 제119조 3항 참조.

275) 베른(Bern) 형사소송법 제227조 내지 229조 참조.

276) 이하의 내용들에 관하여는 베른(Bern) 형사소송법 제250조 2항; 프라이부르크(Freiburg) 형사소송법 제162조;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225조; 테신(Tessin) 형사소송법 제185조 참조.

277) 正當化事由란 어떤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유를 말하는 바, 그 대표적 예로는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을 들 수 있다(서정범(譯), 독일경찰법론, 1998; 세창출판사, 24면 참조).

278)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심기관은 그 사건을 판사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279) “유죄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판단은 不起訴處分을 행하는 기관의 義務適合的 裁量(pflichtgemässes Ermessen)에 맡겨져 있다. 한편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㉔ 實體法規定에 따를 때 형벌을 과할 수 없는 경우
 - ㉕ 起訴便宜主義가 고려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서 권한있는 기관이 계속해서 형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합목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 하였을 때
- ③ 事前節次中止處分(Die einstweilige Einstellungsverfügung)
- 가) 의의: 事前節次中止處分은 事前節次를 일시적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처분을 말하는 바, 사전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킬 사유가 없다면 즉시 예심절차를 續開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심의 결과에 따라서 확정적으로 不起訴處分을 하거나, 公訴提起 또는 科刑命令을 행하여야 한다. 이 같은 事前節次中止處分의 일시적 성격으로 인하여 事前節次中止處分은 피해자구조법 제8조 1항에 따른 법원에 의한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다.²⁸⁰⁾
- 나) 事前節次中止處分을 할 수 있는 경우
- ㉖ 事前節次를 종결하는 것에 대한 일시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 혹은 범인인도에 관한 법의 특별성으로 인하여 被引導者에 대한 소추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경우(「刑事事件에 관한國際的共助에 관한法律」 제38조 참조) 등이 그 예가 된다.
 - ㉗ 형법적 판단이 先決問題로서의 民事事件 혹은 行政事件의 결과에 달려 있는 경우: 예컨대 特許權 혹은 商標權侵害를 이유로 하는 형사소송의 경우,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발명 혹은 상표등록이 권리로서 존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사전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
 - ㉘ 다른 刑事節次가 진행되고 있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예컨대 형법에 따라 外國의 法院에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외국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스위스에서의 형사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수 있다.
 - ㉙ 향후의 事態推移가 형사절차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예컨대 親告罪 (Antragsdelikt) 혹은 公共犯罪(Offizialdelikt)²⁸¹⁾ 중 어느 것이 존재하는

(In dubio pro reo)라는 원칙은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맡겨야 한다.

280) Vgl. ZR 96, 1997, Nr.107.

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身體侵害가 있었는지 여부가 결정적 기준이 되는 바, 그것이 사후에야 비로소 확인될 수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3) 不起訴處分權者

不起訴處分權者가 누구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 ① 不起訴處分은 豫審機關 혹은 公訴提起權者가 행하는 것이 가장 간결하고 합목적적이라고 할 것인 바, 「취리히」(Zürich)²⁸²와 「베른」(Bern)²⁸³ 칸톤이 이러한 예에 따르고 있다.
- ② 不起訴處分이 國家檢事의 신청에 근거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는 바, 「글라루스」(Glarus) 칸톤이 이러한 예에 따르고 있다.²⁸⁴
- ③ 不起訴處分이 刑罰委員會(Strafkommission) 혹은 刑事委員會(Kriminal-kommission)와 같은 행정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도 있는 바, 「옵발 덴」(Obwalden)이나 「아펜젤 인넨로덴」(Appenzell IRh) 칸톤이 이러한 예에 따르고 있다.²⁸⁵
이처럼 合議制 行政機關이 불기소처분을 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不起訴處分을 통하여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포기하는 것의 상당성을 고도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刑罰委員會 등이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檢事에게 그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할 것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이 동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81) 여기서 公共犯罪란 親告罪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282) 취리히에서는 區檢事 혹은 國家檢事が 불기소처분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8조·39조).

283) 베른의 경우에는 豫審判事와 國家檢事が 함께 不起訴決定을 한다. 다만 양 형사소추기관이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公訴部(Ankagekammer)가 불기소결정을 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0조 2항, 제251조 1항·2항).

284) 글라루스(Glarus) 형사소송법 제89조 이하 참조.

285) 옵발덴(Obwalden)에서는 法源組織法 제48조에 따라 刑罰委員會가, 아펜젤 인넨로덴(Appenzell IRh)에서는 형사소송법 제85조 刑事委員會가 불기소처분을 행한다.

(4) 不起訴處分の 節次 등

- ① 理由附記: 不起訴處分을 하는 경우에는 文書로(적어도 概괄적으로라도) 이유가 부기되어야 한다.²⁸⁶⁾
- ② 被疑者 等에의 通知: 不起訴決定은 피의자, 피해자 및 다른 관계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5) 不起訴處분에 대한 不服

不起訴處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칸톤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不服할 수 있고,²⁸⁷⁾ 최종적으로 國法訴願(staatrechtliche Beschwerde) 혹은 聯邦法院의 抗訴審議部(Kassationshof)에의 抗告를 제기할 수 있다.²⁸⁸⁾

3. 公訴의 提起(Klageerhebung)

(1) 의 의

公訴란 公訴權者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바, 공소는 彈劾主義(Akkusationsprinzip)²⁸⁹⁾에 따를 때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한 기초

286) 이에 관하여는 니드발덴(Nidwalden) 형사소송법 제111조,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 아펜젤 아우서로덴(Appenzell ARh) 형사소송법 제156조; 아펜젤 인넨로덴(Appenzell IRh) 형사소송법 제85조 참조.

287) 예컨대 취리히의 경우에는 ① 事前節次中止處분에 대하여는 검찰에 대한 抗告를, ② 狹義의 不起訴處분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의 單獨判事에 대한 抗告가 허용된다(ZR 96, 1997, Nr.107).

288)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① 형법 제123조 내지 125조의 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검사 소속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裁定申請(형사소송법 제260조 1항), ② 그 검사가 속하는 관할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抗告 및 검찰총장에 대한 再抗告(검찰청법 제10조), ③ 憲法訴願(헌법재판소법 제68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89) 彈劾主義란 訴追機關과 裁判機關이 분리된 형사절차로서, 糾問官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행해져야 한다. 한편 公訴提起權을 가진 機關(이하 起訴機關이라고 한다)은 被告人이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질 때에 공소를 제기하는 바, 이 경우 이른 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은 의미를 잃는다.²⁹⁰⁾ 또한 被疑者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起訴機關의 결정에 대하여는 다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공소가 제기되게 되면 被告人은 법원에서 자신의 防禦權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⁹¹⁾

공소에 의해 中間節次는 종결되고 사건은 공판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公訴의 提起²⁹²⁾는 법원의 판결절차(公判節次)에 대한 전제조건을 이룬다.

(2) 公訴提起의 基本原則

① 國家訴追主義(Offizialprinzip)²⁹³⁾

가) 의미: 國家訴追主義란 공소제기의 주체가 個人이 아니라 국가라는 것, 즉 국가

심리하고 재판하는 전근대적 형사절차인 糾問主義(Inquisitionsprinzip)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스위스의 형사소송은 183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糾問主義의 잔재로부터 벗어났으며(취리히의 1831.6.10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 동법의 기초는 1808년 나폴레옹 1세하에서 제정된 治罪法(Code d'instruction criminelle)이 제공하였다고 한다.

290) Pr 86, 1997, Nr.59 S.317E. b.

291) JdT 1993 III 31 = RS 1994 Nr.650. 이 같은 사정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현행 법상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특별한 규제제도는 없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이상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무죄가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결론에 대하여는 “현행법규정을 넘어서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나 실질적으로는 하자가 있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形式裁判으로 통제하자”는 이론이 등장하고 있는 바 이것이 바로 公訴權濫用理論이다.

292) 公訴가 형사절차의 목적인 實體的 眞實發見의 주도적 역할을 公訴權者로부터 법원으로 이행시키는 法律行爲의 訴訟行爲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소 대신에 移行處分(Überweisungverfügung, ordonnance de renvoi)이란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293) Offizialprinzip는 통상적으로 國家訴追主義라고 번역되고 있으며, 이것은 Offizialprinzip를 ‘Der Grundsatz des Strafverfolgung durch den Staat’(국가에 의한 형사소추의 원칙)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스위스의 형사소송법교재(Hauser/Schweri, a.a.O., S.189)를 고려할 때 일견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親告罪제도를 동 원칙에 대한 제한으로, 私人訴追를 동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Offizialprinzip는 職權搜查의 원칙과 國家訴追主義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Offizialprinzip를 國家處罰主義라고 번역하는 입장(배종대/이상돈, 전게서, 23면·322면)도 있음은 주목을 요한다.

가 刑事訴追를 독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고발 등이 없이도 수사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²⁹⁴⁾ 이러한 國家訴追主義는 法的 安定性을 위하 여서는 어떠한 범죄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기초로 한다. 즉 刑事訴追를 피해자 등 개인에게 맡겨 놓는 경우, 개인이 刑事訴追를 행할 수 없거나 행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범죄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이다.

나) 國家訴追主義의 制限과 例外: 國家訴追主義가 언제나 적용될 수는 없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 親告罪(Antragdelikt): 親告罪(聯邦刑法 제28조 이하)는 피해자가 告訴(Strafantrag)를 하는 경우에만 訴追될 수 있는 바, 이 점에서 친고죄는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신체상 해를 수반한 교통사고의 경우(聯邦刑法 제125조)처럼 친고죄의 경우에도 고소에 앞서 경찰이 수사를 행할 수도 있다.

㉡ 私인에 의한 訴追節次(Das Privatstrafklageverfahren): 私人訴追는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를 이룬다. 私人訴追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 소추기관의 관여가 배제되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한다.²⁹⁵⁾

② 起訴法定主義(Legalitätsprinzip),²⁹⁶⁾ 起訴便宜主義(Opportunitätsprinzip)

294) BGE 114, 1988, IV 78.

295) 國家訴追主義에 대한 예외로서는 ① 大陪審(Grand Jury)을 두어 正式起訴를 담당케 하는 미국의 公衆訴追制度和 ② 특정범죄(주거침입 등)에 대해 범죄피해자가 직접 소추하게 하는 독일의 私人訴追制度(독일 형사소송법 제377조 참조)를 들 수 있다. 한편 스위스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私人訴追가 인정되는 바, 동 제도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vgl. Hauser/Schweri, a.a.O., S.377 ff. 이처럼 세계 각국이 예외적으로나마 私人訴追를 허용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國家訴追主義만을 규정하고 있다.

296) Legalitätsprinzip는 종래 起訴法定主義라고 번역되어 왔다. 그러나 동 원리는 다음의 2가지, 즉 ①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경찰 등)은 그에 대한 수사를 하여야 의무가 있다는 것과 ② 수사를 통하여 충분한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Ranft, Strafprozeßrecht, 2. Aufl., 1995, S.57) 엄밀히 말하면 起訴法定主義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일찍부터 Legalität-

- 가) 問題의 所在: 豫審의 결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필요한 소송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起訴機關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시되는 바, 이는 결국 起訴法定主義와 起訴便宜主義 중 어느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귀착되게 된다.²⁹⁷⁾
- 나) 起訴法定主義: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필요한 소송조건이 구비되면 起訴機關은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
- ㉠ 一般豫防의 效果: 起訴法定主義를 취하게 되면 실제로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刑罰이 부과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모든 범죄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一般豫防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 ㉡ 法앞의 平等: 기소법정주의는 형법의 영역에서 연방헌법 제4조상의 法앞의 平等의 원칙을 실현한다.²⁹⁸⁾
 - ㉢ 끝으로 모든 범법자에 대하여 동일한 정도의 처벌이 행하여진다는 생각은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증대한 근거가 된다.
- 다) 起訴便宜主義: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起訴機關에게 기소 여부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무제한적으로 起訴法定主義에 따르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 환언하면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형사소추를 포기 하는 것이 合目的性의 관점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²⁹⁹⁾

sprinzip를 合法主義라고 번역하여 왔으며(서정범, 경찰권발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130면), 이러한 用語例의 정확성은 다른 학자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배종대/이상돈, 전계서, 325면). 다만 동 用語가 公訴提起와 관련하여, 그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起訴法定主義라고 번역하는 것이 의미전달에 있어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하에서는 일단 起訴法定主義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한편 독일에서의 合法性의 原則에 관한 일반적 논의에 관하여는 vgl. Bottke, Grundlagen des polizeilichen Legalitätsprinzip, JuS 1990, 81ff.

297) 起訴法定主義와 起訴便宜主義의 장·단점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관하여는 배종대/이상돈, 전계서 325면 참조.

298) 이에 관하여는 vgl. BGE 115, 1989, I a 82ff.

또한 起訴法定主義에 따르게 되면 모든(그리고 사소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수사를 하여야 하는 바, 이것은 ㉠ 수사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및 ㉡ 범죄자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형사사법기관의 직무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도 起訴便宜主義의 논거로 들어지고 있다.

라) 스위스에 있어서 起訴法定主義와 起訴便宜主義: 起訴法定主義와 起訴便宜主義가 각각 전술한 것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양자 중 어느 것을 공소제기의 원칙으로 채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立法策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³⁰⁰⁾ 다만 스위스의 경우는 칸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크게 다음과 같은 3類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 明示的 혹은 法文의 의미상 起訴法定主義를 선언하고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起訴便宜主義를 부정하는 유형으로 「글라루스」(Glarus), 「솔로투른」(Solothurn), 「아펜젤 인넨로덴」(Appenzell IRh), 「그라우뷘덴」(Graubünden), 「발리스」(Wallis) 칸톤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起訴法定主義에 기초하고 있으면서, 제한된 범위에서 起訴便宜主義를 인정하는 유형으로, 대부분의 칸톤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³⁰¹⁾

299) Vgl. BGE 119, 1993, IV95 E. 2

300) 예컨대 우리나라가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고 하여 起訴便宜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법률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검사는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하는 모든 형사소추 가능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52조 2항)고 하여 起訴法定主義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편 독일연방법원은 “범죄에 대한 刑事訴追는 起訴法定主義에 따른 관할기관의 법률적 의무이다. 이 소추의무가 없으면 검사의 공소권독점은 정당화될 수 없다”(BGHSt 15, 159)고 하여 起訴法定主義를 기소독점주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도 기소편의주의의 장점을 고려하여 그리 중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起訴便宜主義가 인정되어 있다.

301) 예컨대, 취리히(Zürich, 형사소송법 제39조 a), 베른(Bern, 형사소송법 제4조), 루체른(Luzern, 형사소송법 제1조 이하), Uri, 형사소송법 제9조), 슈비츠(Schwyz, 형사소송법 제76조), 옘발덴(Obwalden, 형사소송법 제2조 3항), 니드발덴(Nidwalden, 형사소송법 제9조), 추크(Zug, 형사소송법 제1조 이하), 프라이부르크(Freiburg, 형사소송법 제162조), 바젤-

- ㉔ 무제한적으로 起訴便宜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유형으로, 「바아트」(Waadt, 형사소송법 제53조), 「노이엔부르크」(Neuenburg, 형사소송법 제8조), 「제네바」(Genf, 형사소송법 제116조·198조), 「유라」(Jura, 형사소송법 제98조) 칸톤이 이러한 예에 따르고 있다.

(3) 公訴提起의 方式

公訴는 書面, 즉 公訴狀으로 行하여야 한다.

(4) 公訴狀의 記載事項

彈劾主義의 원칙에 따를 때 公소장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 즉 ① 피고인의 성명과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罪名과 그의 중요한 徵表³⁰²⁾ 및 ③ 適用法條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처럼 범죄혐의의 근거나 量刑根據를 상세히 열거하지 않고 간단히 표현토록 하는 것은³⁰³⁾ 被告人이나 法院으로 하여금 무엇이 公소의 대상인가를 신속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모든 칸톤의 형사소송법이 이러한 불충분한 내용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公소장에 證據方法, 豫審結果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및 예심결과의 법적 성격 등을 기재할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³⁰⁴⁾³⁰⁵⁾

슈타트(Basel-Stadt, 형사소송법 제21조), 바젤-란트샤프트(Basel-Landschaft, 형사소송법 제210조 1항),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58조), 아펜젤 아우쉴로덴(Appenzell ARh, 형사소송법 제20조), 세인트갈렌(St. Gallen, 형사소송법 제44조와 296조), 아르가우(Aargau, 형사소송법 제24조 2항·제119조 3항), 투르가우(Thurgau, 형사소송법 제20조) 등의 칸톤이 그러하다.

302) 이를 통하여 公소가 제기된 과정과 構成要件의 徵表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이에 관하여는 vgl. BGE 120, 1994, IV 348ff.).

303) 스위스의 연방형사소송법이 이러한 입장에 따르고 있는 바, 동법 제126조는 公소장에 ① 被告人, ② 被告人이 행한 범죄, ③ 적용법조, ④ 公판절차를 위한 증거방법 및 ⑤ 管轄法院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취리히(Zürich, 형사소송법 제162조), 베른(Bern, 형사소송법 제257조),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231조), 투르가우(Thurgau, 형사소송법 제142조), 테신(Tessin, 형사소송법 제200조) 칸톤의 경우도 그러하다.

304) 아펜젤 아우쉴로덴(Appenzell ARh, 형사소송법 제158조 내지 160조), 아펜젤 인넨로덴

한편, 명백하게 사실확인 불가능하지만 被告人이 어쨌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경우(예컨대 被告人의 행위에 의하여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는 바, 이 경우 殺人罪와 過失致死罪의 성립에 관하여 검사의 심증형성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起訴機關은 本位的 申請(Hauptantrag)과 豫備的 申請(Eventualantrag)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를 제기하거나,³⁰⁶⁾ 혹은 擇一的 公訴(Alternativanklage)를 제기할 수도 있다.

(5) 起訴機關

스위스에 있어서의 공소제기의 방식은 각 칸톤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 ① 프랑스식 體系: 프랑스의 법전통에 따라서 國家檢事는 단지 公訴의 '申請'만을 할 수 있으며, 公訴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法院, 대부분의 경우 公訴部(Anklagekammer)가 결정하는 유형이다. 「글라루스」(Glarus, 형사소송법 제100조), 「바아트」(Waadt, 형사소송법 제283조·290조), 「노이 엔부르크」(Neuenburg, 형사소송법 제179조 이하), 「제네바」(Genf, 형사소송법 제179조 이하) 칸톤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아펜젤 인넨로덴(Appenzell IRh, 형사소송법 제37조)에서는 행정청으로서의 刑事委員會(Kriminalkommission)가 공소신청을 한다.
- ② 英國式 體系: 國家檢察이 독립하여 公訴를 제기하고, 그 이후에 이른바 公訴許容與否決定節次(sog. Anklagezulassungsverfahren)에서 심사가 행해지는 유형으로, 聯邦³⁰⁷⁾과 「취리히」(Zürich, 형사소송법 제165조)가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

(Appenzell IRh, 형사소송법 제88조), 세인트 갈렌(St. Gallen, 형사소송법 제132조) 칸톤 등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305)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公訴狀에는 ①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罪名, ③ 公訴事實, ④ 適用法條, ⑤ 피고인의 구속여부를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3항, 형사소송규칙 제117조 1항 2호).
- 306) 한편, 이 경우 법원은 本位的 公訴事實을 豫備的 公訴事實보다 먼저 심판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대판 1975.12.23, 75도 3238).
- 307) 연방형사소송법 제128조는 「公訴部는 예심의 결과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公訴狀(Anklageschrift)에 표시된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지 여부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³⁰⁸⁾이다. 전술한 심사결과에 따라서 공소제기가 허용되기도 하고, 잠정적 혹은 종국적으로 허용되지 않기도 한다.

- ③ 오스트리아式 體系: 國家檢察이 公訴를 법원에 제기하고, 被告人이 공소 제기에 대하여 異議申請(Einspruch)이나 訴願(Beschwerde)을 제기하지 않는 한 법원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행해지는 유형으로, 「프라이부르크」(Freiburg, 형사소송법 제166조), 「세인트 갈렌」(St. Gallen, 형사소송법 제135조), 「바젤-란트샤프트」(Basel-Landschaft, 형사소송법 제108조) 칸톤이 이에 따르고 있다. 한편 異議申請 등이 있게 되면 受訴法院과는 독립한 심급의 법원이 심사를 행한다.
- ④ 스위스式 體系: 검찰이 직접 受訴法院에 공소를 제기하고, 직권 혹은 被告人의 신청에 의하여 공소제기의 전제조건인 존재여부에 대한 심사가 행해지는 유형으로, 1889년의 軍刑法施行令과 1909년의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스위스의 많은 칸톤들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³⁰⁹⁾

(6) 公訴(申請)에 대한 審査

- ① 審査의 의미: 公訴의 妥當性 내지 公訴許容與否에 대한 결정 혹은 再審査는 가) 부당한 공소로부터 被告人을 보호하고, 나) 무죄판결을 가져올 高度의 개연성이 있는 공소를 차단함으로써 法院의 負擔輕減에 기여한다.
- ② 審査의 範圍: 공소의 타당성 등에 심사에 있어서는 공소의 形式과 內容에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 가) 形式的 要件의 審査: 형식적 관점에서는 공소가 법률의 요청을 충족 하고 있

308) 이에 관하여는 vgl. BGE 114, 1988, I a 50 ff.; 122, 1996, IV 110 E. b.

309) 예컨대 軍刑事訴訟法 제136조 및 베른(Bern, 형사소송법 제282조), 루체른(Luzern, 형사소송법 제174조), 슈비츠(Schwyz, 형사소송법 제88조 2항과 3항), 솔로투른(Solothurn, 형사소송법 제111조 2항), 바젤-슈타트(Basel-Stadt, 형사소송법 제117조, 제123조 2항),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264조), 아펜젤 아우서로덴(Appenzell A. Rh., 형사소송법 제167조), 아르가우(Aargau, 형사소송법 제146조), 투르가우(Thurgau, 형사소송법 제164조) 칸톤 등.

는지 여부, 소송조건(Prozessvoraussetzungen)이 존재하는지 여부, 고소와 수사권한은 있는지 여부, 事物管轄과 土地管轄이 존재 하는지 등을 심사한다.

나) 實質的 要件의 審査: 실질적 관점에서는 公訴狀에 기재된 사안이 범죄의 構成要件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被告人에게 충분한 범죄의 혐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심사된다.

(7) 公訴許容(決定)의 效力

- ① 訴訟係屬(Rechtshängigkeit): 公訴許容(決定)에 의하여 節次의 主宰權(Verfahrensherrschaft)이 법원으로 넘어간다. 즉 법원이 향후의 절차의 진행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고, 公訴와 被告人을 다루게 된다. 이리하여 법원에 訴訟係屬(Rechtshängigkeit)이 발생한다.
- ② 公訴提起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劃定: 公訴는 公判節次의 對상을 人的, 物的 측면에서 제한한다.³¹⁰⁾

(8) 公訴許容(決定)에 대한 不服手段

公訴를 허용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聯邦法院에 대한 國法訴願 또는 聯邦法上的 無效訴願(eidgenössische Nichtigkeit beschwerde)으로 다룰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공소를 거부하는 결정은 不起訴處分으로 간주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연방의 형사소송법 제268조 이하에 따라 연방법원에 聯邦法上的 無效訴願을 제기할 수 있다.³¹¹⁾

310) 즉,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被告人 그리고 公訴事實과 單一性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대해서 미치며(公訴不可分의 原則), 공소사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탄핵주의가 지배하는 소송구조의 당연한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311)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vgl. Schwenk, Eidgenössische Nichtigkeitbeschwerde in Strafsachen. N. 156f.

4. 科刑命令(Strafbefehl, ordonnance de condamnation)

(1) 意 義

- ① 概念: 科刑命令節次(Das Verfahren mit Strafbefehl)³¹²⁾란 豫審機關, 起訴機關 혹은 科刑命令判事(Strafbefehlrichter)³¹³⁾가 범죄를 이유로 公判 節次를 행함이 없이 科刑命令으로 스스로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刑을 선고하는 것을 科刑命令이라고 한다.³¹⁴⁾
- ② 機能: 科刑命令節次가 갖는 기능(내지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열거되고 있다.
- 가) 訴訟經濟의 確保: 신속한 절차를 통하여 일련의 형사소송으로부터 오는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특히 다툼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 被疑者가 科刑命令을 받아들임으로써 후속절차를 절약할 수 있다.
- 나) 被疑者의 負擔輕減: 公開裁判에 대한 피의자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 ③ 問題點: 과형명령절차가 口頭辯論主義, 直接審理主義 및 公開裁判의 원칙³¹⁵⁾ 등을 침해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과형명령절차

312) 대부분의 칸톤에서 科刑命令節次가 中間節次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베른(Bern)의 경우에는 科刑命令節次를 公判節次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베른의 형사소송법 교과서(Aeschlimann, a.a.O., S.385)는 “과형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는 경우 과형명령이 確定判決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타당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의 科刑命令節次 일반에 관하여는 vgl. Dubs, Strafbefehl, in: Strafrecht und Öffentlichkeit, FS für Rehberg, Zürich, 1996, S.139 ff.

313) 대부분의 칸톤의 경우와 달리 바젤-슈타트(Basel-Stadt) 칸톤에서는 科刑命令을 判事가 부과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7조, 134조 내지 140조 참조).

314) 이러한 科刑命令의 제도는 결국 우리나라의 略式命令制度(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15) 「人權과基本的自由의保障을위한유럽協約」(EMRK) 제6조 1호에 따른 公衆에의 公開原則은 科刑命令에도 적용된다. 단지 이 경우 ‘공개한다’는 것은 권한있는 기관이 科刑命令의 열람을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해되고 있으므로(Vgl. BGE 124, 1998, IV 237 E3), 그 한도에서 엄격한 공개재판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을 뿐이다.

가 法的 聽聞의 요구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被疑者가 과형명령에 대하여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正式裁 判節次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과형명령절차가 法的 聽聞의 요구와 충돌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 科刑命令을 할 수 있는 사건

科刑命令은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경미한 형벌이 과해질 輕微한 事件에서만 행해질 수 있는데 스위스의 구체적 입법례는 다음과 같다;

- ① 연방행정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는 過料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연방행정형법 제21조 1항 참조).
- ② 「취리히」(Zürich) 칸톤의 경우에는 자백이 존재하고, 科料 혹은 과료와 선택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3개월 이내의 自由刑 혹은 형법 제104조 2항에 열거되지 않은 附加刑(Nebenstrafe)을 처할 수 있는 사건(형사소송법 제317조).
- ③ 「아펜젤 아우쉴로덴」(Appenzell ARh) 칸톤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自由刑에 처할 수 있는 사건(형사소송법 제178조).
- ④ 「우리」(Uri, 형사소송법 제161조), 「테신」(Tessin, 형사소송법 제207조 2항) 칸톤의 경우에는 3개월의 自由刑 혹은 科料에 처할 수 있는 사건.
- ⑤ 「제네바」(Genf, 형사소송법 제218조),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241조 1항), 「발리스」(Wallis, 형사소송법 제143조 1호) 칸톤의 경우에는 6개월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³¹⁶⁾

316) 한편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을 과할 수 있는 사건을 地方法院의 管轄에 속하는 사건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국한시키고 있다(제448조 1항 참조).

(3) 事件審査

科刑命令判事の 사건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2유형이 존재한다. 즉,

- ① 「바젤-슈타트」(Basel-Stadt, 형사소송법 제226조 1항과 2항, 227조 3항, 328조 이하)와 「제네바」(Genf, 형사소송법 제218조) 칸톤처럼 警察書類에 의거한 심사(즉, 書面審査)만으로 충분하며, 異義가 있는 경우에 證據調査節次를 인정하는 유형과
- ② 「취리히」(Zürich)나 「바아트」(Waadt, 형사소송법 제265조) 칸톤처럼 과형명령 절차도 刑事節次의 일종이므로 眞實發見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事전에 被疑者를 訊問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인정하는 유형이 그것이다.³¹⁷⁾

(4) 科刑命令

科刑命令은 被疑者와 그의 犯罪行爲를 적시하여야 한다. 또한 科刑命令을 통하여 刑罰, 피해자의 民事債權, (訴訟)費用이나 損失補償에 관한 결정이 행하여져야 한다.

(5) 科刑命令의 確定과 效力

科刑명령은 被疑者, 檢事 혹은 被害者가 일정한 기간내에 법원에의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 確定力(Rechtskraft)을 갖게 된다.

(6) 科刑命令에 대한 不服 - 正式裁判의 請求

科刑命令에 불복하는 경우 節次의 關與人은 判事の 判決을 구할 권리가 인정된다.³¹⁸⁾

317)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와 증거물을 기초로 하여 書面審査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형사소송규칙 제170조 참조), 예외적으로 약식절차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실조사가 허용된다고 설명되고 있다(이재상, 전게서, 732면; 신동운, 전게서, 924면).

318) 취리히(Zürich) 형사소송법 제321조,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네바

이처럼 判事에 의한 權利救濟가 사후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科刑命令은 「人權과基本的自由의保障을위한유럽協約」 제5조 1호 및 제6조 1호와도 부합한다. 이것은 법원에 최초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해 上級法院에 재판의 시정을 구하는 제도인 上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처럼 科刑命令에 불복하여 正式裁判을 청구하는 것은 上訴의 성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判事は 科刑命令보다 더 중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不利益變更禁止의 원칙(Das Verbot der reformatio in peius)은 적용되지 않는다.³¹⁹⁾

한편 科刑命令判事は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후에는 그 사건을 더 이상 다룰 수 없으며,³²⁰⁾ 동일한 범죄에 관여한 다수인 중 단지 한 사람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은 다른 피의자를 위하여서도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다.³²¹⁾

(Genf) 형사소송법 제218조 c) 참조.

319) Schwitter, Der Strafbefehl im aargauischen Strafprozess, Diss. Zürich, 1996, S.276 ff; SOG 1995 Nr.19. 이러한 스위스의 법원 및 학계의 입장은 우리나라의 略式命令에 대한 설명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대한 正式裁判의 請求와 上訴가 이질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식재판의 청구가 약식명령에 대한 不服方法이라는 점에서 양자간의 유사성을 긍정하여 上訴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정식재판의 청구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58조), 不利益變更禁止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57조의 2).

320) 왜냐하면 科刑命令判事は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Vgl. BGE 114, 1988 151. I a lit.b; EuGRZ 1992 S.351 lit. c).

321) ZR 45, 1946, Nr.167 S.304f.

제5장 結 論

근자에 들어 警察改革의 요구가 경찰 내외에서 심도있게 주장되고 있는 바, 경찰 개혁의 완수는 크게 다음의 2가지 방향, 즉 (1)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의 제도운용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결하는 방법과, (2)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심각하여 (1)과 같은 방법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점을 인식하고 현행제도 자체의 변화를 도모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런데 특히 후자의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선진 외국의 경찰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그간 많은 연구가 행하여져 왔다. 다만 그간의 연구는 주로 英美法係 國家 중 미국과 영국, 大陸法係 國家 중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이웃나라인 일본에 국한되었던 감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전술한 국가 이외의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나름대로의 경찰제도를 갖고 있으므로 개략적으로나마 그에 대한 연구 또한 요망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선 스위스의 경찰제도(형사절차 포함)를 연구하게 되었다. 많은 국가 중에서 스위스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스위스가 정부형태 등에 있어 여타 국가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경찰제도 역시 특이성을 띠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연구는 크게 3영역(즉, 스위스 概觀, 스위스의 警察制度, 스위스의 搜查構造)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본문 제2, 3, 4장에 반영되어 있다.

한편 스위스의 경찰제도에 대한 본 연구는 개략적인 수준에 그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1) 무엇보다도 스위스가 거의 독립한 主權을 갖고 있는 26개 칸톤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警察制度, 搜查構造 및 그를 포함하는 刑事節次에 있어서도 각 칸톤간에 세부적인 면에서는 커다란 相異性이 존재한다는 점, 따라서 스위스의 경찰제도를 각 칸톤별로 상세히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2) 더욱이 4개 언어가 공용어로 통용되고 있는 결과 각 칸톤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 언어 모두에 대한 이해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연구자가 독일어 이외에는 이해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 또한 중대한 이유가 된다.³²²⁾ 끝으로 (3)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가 충분하지 못했었던 점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2)(3)의 문제해결이 스위스의 경찰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된다.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스위스의 경찰제도를 全方位적으로는 다루었다. 모쪼록 연구자의 스위스의 경찰제도에 관한 본 연구가 그에 관한 다른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연구의 축적을 통하여 스위스의 경찰제도의 전모가 올바르게 우리나라에 소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향후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의 완비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다면 연구자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322) 그리하여 이태리어가 공용어인 테신(Tessin)칸톤과 프랑스어권인 제네바(Genf) 칸톤 등의 경우는 독일문헌이 소개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또는 번역을 의뢰한 범위내에서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부 록

1. 스위스의 聯邦刑事訴訟法(보고서 관련조문 발췌)

제1편 聯邦刑事法院의 組織

III. 豫審判事

- 제13조: ① 연방법원은 비밀투표로 독일어권, 프랑스어권, 이탈리아어권별로 각각 임기 6년의 豫審判事(Untersuchungsrichter) 1명과 대리인(Ersatzmänner) 2명을 선출한다.
- ② 연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非常任 豫審判事(ausserordentliche Untersuchungsrichter)를 지명한다.
- ③ 예심판사는 예심에 있어서 書記(Schriftführer)라고 표현된다.

IV. 聯邦檢事

- 제14조: ① 聯邦檢事(Bundseanwalt)는 聯邦內閣(Bundserat)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 ② 공소의 제기는 연방검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다.
- 제15조: 연방검사는 司法警察(gerichtliche Polizei)의 수사를 지휘한다. 연방검사는 聯邦刑事法院에 공소를 제기한다. 연방검사는 行政刑法(Verwaltungsstrafgesetz)에 따라 소추되어야 할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칸톤의 형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V. 司法警察

- 제17조: ① 사법경찰은 연방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聯邦法務警察部(Justizund Polizeidepartement)의 감독을 받는다.

- ② 사법경찰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한다.
- 칸톤의 국가검사(Staatsanwalt);
 - 연방과 칸톤의 경찰공무원;
 -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연방과 칸톤의 그밖의 공무원.
- ③ 연방의 대내외적 안전보장을 위한 수배 및 정보임무의 통일적 시행에 필요한 인원이 연방검찰에 배치된다. 연방검찰은 일반적으로 권한있는 칸톤의 경찰행정청과 협력한다. 절차의 목적과 상황이 허락하는 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연방검찰은 그의 수사에 관하여 칸톤의 경찰행정청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편 聯邦의 刑事節次

제1절 總 則

VIII. 豫審拘束(Untersuchungshaft)과 保安拘束(Sicherheitshaft)

제44조: 拘束令狀(Haftbefehl)은 被疑者에 대하여 그가 重罪(Verbrechens) 혹은 輕罪(Vergehens)를 범했다는 현저한 嫌疑가 있고, 다음의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때에 한하여 발부할 수 있다:

1. 逃走의 우려가 있을 것; 이는 특히 피의자가 징역에 처할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없거나 혹은 스위스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2. 피의자가 범죄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 또는 공범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혹은 豫審의 목적을 위태롭게 할 혐의가 있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제4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구속영장을 발할 권한을 갖는다:

1. 예심의 開始전에는 聯邦檢事(Bundesanwalt)와 칸톤의 법에 따를 때 그에 대하여 권한있는 司法警察官; 이들은 本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예심에 있어서는 豫審判事
3. 그 후의 절차에 있어서는 사건이 繫屬되어 있는 법원 혹은 재판장

- 제46조: ① 拘束令狀(Haftbefehl)은 書面에 依하여야 한다.
 ② 拘束令狀에는 被疑者가 明確히 기재되어야 한다. 被疑事實, 형벌규정과 구속 사유도 明記되어야 한다.
 ③ 구속영장은 구속의 시기에, 혹은 구속후에 지체없이 피의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 제47조: ① 체포된 피의자는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발한 행정청, 사법경찰에 의한 수사절차에 있어서는 구속적부심사권을 가진 칸톤의 판사 혹은 연방의 예심판사에게 지체없이 引致되어야 하고, 늦어도 인치된 날의 다음 근무일(Werktag)에 구속사유에 대한 신문이 행하여져야 한다. 구속이 계속되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구속을 계속한다는 결정은 조서에 서면으로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 제51조: ① 豫審중에 拘束 혹은 釋放(Haftentlassung)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公訴部(Anklagekammer)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44조 2호에 따라 행하여진 豫審拘束은 公訴部の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4日보다 더 장기간 계속될 수 있다.
- 제52조: ① 피의자는 언제든지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豫審判事 혹은 연방검사에 의하여 석방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公訴部에 訴願(Beschwerde)을 제기할 수 있다.
- 제53조: 도주의 우려때문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자는 保釋金의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다.
- 제54조: ① 保釋은 聯邦法院受納係(Bundesgerichtskasse)에 현금 혹은 귀중품을 공탁하거나 보석금의 납부를 통하여 행해진다.
 ② 보석금의 액수와 종류는 범죄의 정도나 피의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판사가 결정한다. 보석금의 납부를 통한 보석을 하기 위하여서는 公訴部の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2조: ① 司法警察官吏는 급박한 위험(Gefahr im Verzug)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容疑者를 假逮捕할 수 있다.
 ② 가체포당한 자는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권한을 가진 판사 혹은 공무

원에게 인치되어야 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권한을 가진 판사 혹은 공무원
은 즉시 容疑者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여 가체포당한 자를 구속할 것인가 아
니면 석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제63조: ① 다음의 자들 또한 체포권을 가진다.

체포된 자 혹은 가체포된 자가 저항을 하는 경우에 있어 사법경찰관리로
부터 助力을 요청받은 자,
重罪 혹은 輕罪의 證人인 자,
범행직후에 현장에 있는 자

② ①항에 열거한 자가 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에 범인을 인도하
여야 한다.

제64조: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手配(Fahndung)가 행해져야 한다. 구속영장
은 공개될 수 있다. 被疑者는 가능한한 정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체포한 자를
누구에게 인도하여야 하는지도 알려져야 한다.

IX. 押收(Beschlagnahme), 搜索(Durchsuchung), 沒收(Einziehung)과 監視(Überwachung)

제65조: 證據方法(Beweismittel)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은 압수하여 영치하거나 혹은 특
별한 방법으로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물건의 소지자는 권한있는 행정청
의 요구에 응하여 그를 교부할 의무를 진다.

제67조: ① 判事는 被疑者가 그 안에 있거나, 범죄의 증거물 또는 흔적이 그 안에 존재
한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家屋이나 그밖의 공간에 대해 수색을 행할
권한이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해서도 수색을 행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칸톤법에 따를 때 권한을 가진 司法警察官에게 수색을 위임할 수도
있다.

③ 야간에는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을 행할 수 있다.

제68조: 수색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가옥의 소유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그가 부재중인 경
우에는 인척, 同居人 혹은 隣人이 입회하여야 한다. 그밖에 게마인데 행정청의
구성원이나 공무원이 이에 관여할 수 있다.

X. 신체의 搜索, 檢診, 鑑識措置

제73조: ① 사법경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체에 대한 수색을 할 수 있다.

- a. 체포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경우
 - b. 압수되어야 할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가 존재하는 경우
 - c.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d.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그의 보호를 위하여 수색이 필요한 경우
- ② 제반사정상 경찰공무원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은 무기, 흉기와 폭발물의 소지여부를 수색할 수 있다.
- ③ 신체수색은 同性 혹은 醫師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수색이 지체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제2절: 節 次

I. 司法警察에 의한 搜查

제100조: ① 연방이 訴追하는 범죄에 대하여 모든 자는 告發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고발((Strafanzeige)은 연방검찰 혹은 사법경찰관리에게 書面으로 하며, 口述로 하는 경우에는 조서(Protokoll)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1조: ① 사법경찰관리는 연방이 소추할 범죄를 수사한다.

- ② 소추에 피해자의 告訴(Antrag)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를 기다려야만 한다. 급박한 경우에는 고소가 있기 전에 保全措置를 취할 수 있다.

제102조: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한다. 사법경찰관리는 그를 지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審理를 한다.

제103조: ① 사법경찰의 조치, 특히 구속, 체포와 수색은 그것이 칸톤의 경찰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이 法에 따른다.

- ② 수사를 행하는 司法警察官은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의 接見을 자유로운 裁量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104조: ① 연방검사는 수사를 지휘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業務系統(Dienstweg)에 따라서 자신의 수사행위에 관하여 연방검사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른다.

제105조: 정치적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는 聯邦內閣(Bundesrat)이 결정한다. 연방내각의 결정이 있기까지 연방검사는 사법경찰관리와 함께 필요한 保全措置를 취한다.

제106조: ① 豫審(Voruntersuchung)을 개시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연방검사는 수사를 중지한다. 중지는 피의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통지가 생략될 수 있다.

- a. 형사소추 혹은 그밖의 중대한 공익이 그를 요구할 때
- b. 그렇지 않으면 제3자가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될 때

② 수사절차를 위하여 소요된 특별한 비용은 연방이 부담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聯邦의 法務警察部가 결정한다.

제107조: 칸톤法院의 管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聯邦內閣이 聯邦刑事法院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칸톤의 행정청에게 위임한 때에는 연방검사는 사건서류를 권한있는 칸톤의 행정청에 송부한다.

II. 豫審(Voruntersuchung)

제108조: ① 연방검사는 권한있는 연방의 豫審判事(Untersuchungsrichter)에게 예심을 신청한다. 연방검사는 신청서에 被疑者의 인적 사항과 의심받는 행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연방검사는 예심판사에게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연방검사는 未知의 범죄자에 대한 예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제109조: 예심판사가 예심개시를 결정하면, 公訴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0조: ① 예심판사가 예심의 허용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公訴部의 결정에 따른다. 공소부는 연방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결정을 행한다.

② 정치적 범죄에 있어서 연방내각의 豫審開始決定은 구속력을 가진다.

제113조: ① 예심판사는 연방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혹은 예심을 중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안을 확정한다.

② 예심판사는 본안심리를 위한 證據方法을 수집한다.

2. 칸톤 베른의 경찰법(Polizeigesetz, PolG)

제1절 職務

제 1 조(경찰의 일반적 직무): ① 경찰은 다음 각호를 그의 직무로 한다.

- a.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및 환경에 대한 구체적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와 이미 발생한 장해제거를 위한 조치를 행한다.
- b. 경찰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받고 있는 자를 구조한다.
- c. 경찰은 자연재해나 사고시에 「자연재해와총력방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緊急措置(Sofortmaßnahme)를 행한다
- d. 경찰은 사법경찰(gerichtliche Polizei)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 e. 경찰은 경찰의 共助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청과 사법관청에 대한 직무원조(Amtshilfe)와 집행원조(Vollzugshilfe)를 행한다.
- f. 경찰은 법률에 의하여 그에게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② 그의 존속이 분명하고, 법원에 의한 보호가 적시에 행해질 수 없고, 경찰의 개입없이 그의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권의 보호도 경찰의 직무이다.

제 2 조(사법경찰): 사법경찰은 범죄행위의 수사를 위한 조치와 「형사소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형사소추를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행한다.

제 3 조(보안경찰): 보안경찰(Sicherheitspolizei)은 제1조 1항 a, b, c 및 제1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행한다. 특히 범죄행위가 행해지려는 경우와 이미 시작된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교통경찰): 교통경찰(Verkehrspolizei)은 도로교통에 대한 감시, 규율, 그리고 일시적 신호와 관련된 직무를 행한다.

제 5 조(권한의 보충성): 경찰은 다른 행정청이 그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거나 적시에 활동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2절 칸톤의 경찰

제 6 조(직무): ① 칸톤의 경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른 모든 직무를 행한다.

② 칸톤의 경찰은 칸톤의 전 영역에서 그의 직무를 행한다.

③ 칸톤의 경찰은 칸톤의 전 영역에서 손해신고와 警報신고의 접수와 전달을 보장한다.

제 7 조(베른 市警察에 대한 직무의 위임): 칸톤내각(Regierungsrat)³²³은 베른市에서의 특별한 경찰업무의 수행을 계약을 통하여 베른의 市警察에게 위임할 수 있고, 통상의 지출권한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행할 수 있다.

제 8 조(사법경찰직무의 다른 게마인데에의 위임): ①칸톤의 경찰-군사부(Polizeiund Militärdirektion)³²⁴는 게마인데가 그에 필요한 조직과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게마인데와 협정을 체결한다.

제3절 게마인데(Gemeinde)의 경찰

제 9 조(직무): ① 게마인데경찰은 게마인데구역내에서의 보안경찰과 교통경찰의 직무를 담당하며, 그 밖에 게마인데의 행정청, 칸톤의 지사, 강제집행관청과 파산관청 및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법관청에 대한 직무- 집행원조를 행한다.

② 게마인데경찰은 법률 혹은 약정에 의해 자신에게 위임된 직무를 행한다.

제10조(조직): ① 게마인데rat가 게마인데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게마인데의 조례로 개별적 혹은 모든 직무를 다른 게마인데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게마인데rat가 게마인데경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적당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23) 베른의 칸톤내각은 연방과 마찬가지로 7인의 각료로 구성되며, 각료는 4년마다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베른의 칸톤내각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베른칸톤의 홈페이지(<http://www.be.ch>) 참조.

324) 스위스의 경우 연방의 경우에는 '부'에 해당하는 용어로 Department를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칸톤의 경우에는 '부'에 해당하는 용어로 Direktion을 사용하고 있다.

- ④ 게마인테들은 그들의 경찰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권한): ① 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게마인테의 경찰기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과 강제수단을 행사한다.

- ② 이에는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제12조(게마인테경찰직무의 Kanton경찰에 대한 위임): ① 게마인테의 경찰기관이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적시에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Kanton의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國內文獻

- 경찰청, 경찰백서, 1997.
- 경찰청, 경찰백서, 1999.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998.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 김석범, 자치경찰제 도입의 타당성과 합리적 시행방안, 서울대학교행정대 학원 석사논문, 1996.
- 김남진, 행정법 I, 제 6판, 법문사, 1999.
- 김남진, 행정법 II, 제 5판, 법문사, 1997.
- 김남진·서정범, 경찰법, 화학사, 1999.
- 김중확 外, 자치경찰제의 이해 -자치경찰제의 이념, 조직, 운영, 수사권-, 경찰개혁위원 회실무연구팀, 1999.
-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제 3판, 홍문사, 1999.
- 백형조, 피의자구속기간 단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in: 제 8회 치안정책학 술세미나 자 료, 치안연구소·한국경찰학회, 1999.
- 서정범, 경찰권발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서정범(역), 독일경찰법론, 세창출판사, 1999.
- 시민을 위한 경찰발전연구회, 자치경찰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 1회 시민을 위한 경 찰발전연구회 요지, 1999.
- 신동운, 형사소송법 I, 제 2판, 법문사, 1997.
- 유규창·남궁구, 경찰의 야간대응력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in: 치안논총 제 15집, 1999, 1면 이하.

- 이관희/임준태, 독일 경찰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경찰교육제도 개선방안 모색-, 한국경찰학회보 제1호, 1999, 107면 이하.
- 이덕선·박한철, 스위스의 사법경찰제도, in: 법무부,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II), 법무자료 제 139집, 179면 이하.
- 이원복/하흐트캠퍼, 이원복교수의 진짜유럽이야기, 두산동아, 1999.
-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 5판, 박영사, 1999.
- 정균환, 자치경찰, 신유영사, 1996.
-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학문사, 1996.
- 최성호, 가는 곳을 정하면 길이 있다, 도서출판 여백, 1998.
- 현대리서치연구소, 경찰개혁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보고서 -여론선도층 대상 -, 1999.
- 홍성방, 헌법요론, 신영사, 1999.
- 스위스의 경찰제도에 대해(上), 경찰고시, 1991년 5월호, 113면 이하.
- 스위스의 경찰제도에 대해(下), 경찰고시, 1991년 6월호, 117면 이하.

2. 外國文獻

- Aeschlimann, Einführung in das Strafprozessrecht, Verlag Paul Haupt, 1997.
- Bottke, Grundlagen des polizeilichen Legalitätsprinzip, JuS 1990, 81 ff.
- Hauser/Schweri, Schweizerisches Strafprozessrecht, Helbing & Lichtenhahn, 1999.
- Jellinek, Verwaltungsrecht, 3. Aufl., 1931; Neudruck, 1966.
- Knemeyer, Polizei- und Ordnungsrecht, 7. Aufl., 1998.
- Roth, Die Schweizer Polizei, PTV 1994, 161 ff.
- Rupprecht(Hrsg.), Polizei Lexikon, 2. Aufl., 1995.
- Schenke, Polizei-und Ordnungsrecht, in: Steiner(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5. Aufl., 1995.
- Switzerland(1998/99), Kümmerly+Frey, Geographical Publishers, 1998.
- Wolff, Die Gestaltung des Polizei- und Ordnungsrechts in der britischen

Besatzungszone, VVDStRL 9, 134 ff.

Württemberg/Heckmann/Riggeret, Polizeirecht in Baden-württemberg, 3 Aufl.,
1997.

山田 晟, ドイツ法律用語辭典, 昭和 57년.

3. 인터넷검색문헌

(1) 스위스 전반

스위스연방 홈페이지(<http://www.admin.ch>)

<http://www.elim.net/~swissemb/culture/varunity.htm>

<http://www.elim.net/~swissemb/culture/statpol.htm>

<http://www.elim.net/~swissemb/culture/economy.htm>

<http://www.about.ch/administration/index.html>

<http://www.travel21.co.kr/data/17-1.htm>

<http://web.hanyang.ac.kr/21cyuhak/swiss/sw1.htm>

(2) 스위스의 聯邦警察

연방경찰-법무부 홈페이지(<http://www.ejpd.admin.ch>)

연방경찰청 홈페이지(<http://www.admin.ch/bap>)

연방경찰총국 홈페이지(<http://www.bupo.admin.ch>)

연방관세청 홈페이지(<http://www.zoll.admin.ch>)

(3) 칸톤의 警察

칸톤 베른경찰의 홈페이지(<http://www.police.be.ch>.)

칸톤 제네바경찰의 홈페이지(<http://www.geneve.ch/police>)

칸톤 테신경찰의 홈페이지(<http://www.ti.ch/DI/POL>)

(4) 都市警察

취리히 도시경찰 홈페이지(<http://www.stadt-zuerich.ch/kap05/stadtpolizei>)

(5) 기타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po.go.kr>)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npa.go.kr>)

「시민을 위한 경찰발전연구회」 홈페이지(<http://www.kopsa.org>)

인터폴 홈페이지(<http://193.123.144.14/interpol.com>)

칸톤 베른의 홈페이지(<http://www.be.ch>)

略語表

a.a.O., am angeführten Ort

AGVE Aargauische Gerichts- und Verwaltungsentscheide

Aufl. Auflage

BAP Bundesamt für Polizeiwesen

BGE Entscheidungen des Schweizerischen Bundesgerichts

BGHSt

BUPO Hauptabteilung Bundespolizei

E. Erwägung

EMRK Europäische Konvention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EuGRZ Europäische Grundrecht Zeitschrift

f./ff. folgend/folgende

GVP St. Gallische Gerichts- und Verwaltungspraxis

Hrsg. Herausgeber

i.e.S. im engeren Sinne

JdT Journal des Tribunaux

JuS Juristische Schulung

LGVE Luzerner Gerichts- und Verwaltungsgerichtsentscheide

lit. litera

Nr. Nummer

Pr Praxis des Bundesgerichts

ReP Repertorio di Giurisprudenza patria

RS Rechtsprechung in Strafsachen

RVOG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S. Seite

SGPO Schweizerische Gesellschaft der Poizeioffiziere

SJZ Schweizerische Juristen Zeitung

SOG Solothurnische Gerichtspraxis

SPIN Scheweizerisches Polizei-Institut Neuenburg

SPTK Schweizerische Polizeitechnische Kommission

StrV Strafprozess-Verordnung

usw. und so weiter

vgl. vergleiche

VSPB Verband schweizerischer Polizeibeamter

VVDStRL Veröffentlichungen der Vereinigung der Deutschen Staatsrechtslehrer

WFD wissenschaftlicher Forschungsdienst

ZBJV Zeitschrift des Bernischen Juristenvereins

ZBI Schweizerisches Zentralblatt für Staatsund

Gemeindeverwaltung

ZR Blätter für Zürcherische Rechtsprechung

ZStrR Schweizerische Zeitschrift für Strafrecht